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행정안전위원회 】

2019. 8.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이 보고서는「국회법」제22조의2 및「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9. 8. 7.)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465.3조원, 총지출 434.1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1.2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0.6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각각 7.1조원, 7.9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경기조정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절한 운용 방향 및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9건의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4대 공적연금, 일자리사업, 미세먼지 대응사업 등 34건의 주요 재정 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부처 소관 개별 사업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결과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수록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결산서를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의 실효성과 제도개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종 후

차 례

CONTENTS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Ⅰ. 결산 개요 / 3

1. 현 황 ····· 3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9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1

Ⅱ. 주요 현안 분석 / 13

1. 지방교부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13
   1-1. 보통교부세 수요자체노력 산정 지표의 문제점 ····· 15
   1-2. 교부세 교부시기 관련 문제점 ····· 20
   1-3.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기준의 문제점 ····· 23
2. 정부혁신변화관리 지원 사업의 문제점 ····· 29
   2-1. 정부혁신변화관리 지원 사업의 일부 내역사업 분리편성 필요 ····· 30
   2-2.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의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 34
3.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의 문제점 ····· 39
   3-1.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 ····· 41
   3-2. 장비적합성 검증 사업의 전용을 통한 출연사업 전환 ····· 45
   3-3. 이월액 산정오류로 인한 불필요한 전용 발생 ····· 48

CONTENTS

Ⅲ. 개별 사업 분석 / 50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실집행 부진 등 ····· 50
2.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세부과제 취소 및 변경으로 인한 집행부진 ····· 57
3.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의 성과제고 필요 ····· 61
4. 사회혁신추진단 사업의 민관협의회 개최 실적 저조 등 ····· 65
5.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 예비비를 통해 시급성이 적은 신규 내역사업 추진 ···· 71
6. 보조사업 이월이 확정적인 시점에 예비비를 통한 희망근로 지원 사업 확대 추진 부적정 등 ····· 75
7.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 81
8. 풍수해보험의 적정 가입률 확보 필요 ····· 84
9. 안전신문고 관련 정보화 예산의 집행 방식 개선 필요 ····· 89
1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과다결원 문제의 적극적 해결 필요 등 ····· 92
11.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 신축 사업의 조달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 ····· 97
12. 정책기획위원회 및 소관 특별위원회 사업의 문제점 ····· 101
    - 12-1.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사업의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필요 ····· 103
    - 12-2. 예비비를 배정해 운영한 특별위원회 운영 사업들의 집행률 저조 ····· 106

[인사혁신처]

Ⅰ. 결산 개요 / 111

1. 현 황 ····· 111
2.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18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20

CONTENTS

Ⅱ. 주요 현안 분석 / 121

1.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21

Ⅲ. 개별 사업 분석 / 128

1. 공무원인재개발 사업의 연례적인 초과집행 ····· 128
2.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규모 최소화 필요 ····· 131
3. 공무원연금대부 사업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필요 ····· 134
4. 임대주택건립 사업의 사업지연 최소화 필요 ····· 137

※. 인사혁신처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 141

[경찰청]

Ⅰ. 결산 개요 / 145

1. 현 황 ····· 145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51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52

Ⅱ. 주요 현안 분석 / 153

1. 경찰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문제점 ····· 153
   1-1. 경찰인재교육 개발원의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153
   1-2. 부정확한 신임순경 교육인원 산정에 따른 집행부진 개선 필요 ····· 156
2. 경찰청 본청 내 직제 외 인력 운용 최소화 필요 ····· 159

CONTENTS

3. 경찰청 세입 사업의 문제점 ····· 161
3-1. 벌금 및 과료 사업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161
3-2. 가산금의 연례적 수납실적 저조 개선 필요 ····· 164

Ⅲ. 개별 사업 분석 / 167

1. 경찰인력 구조 및 수요를 고려한 장비구매 계획 수립 필요 ····· 167
2.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에 따른 인건비 전용 부적절 ····· 170
3. 낙찰차액을 활용한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구매 부적절 ····· 172
4. '디지털 증거분석실 시설개선'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17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Ⅰ. 결산 개요 / 181

1. 현 황 ····· 181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85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86

Ⅱ. 주요 현안 분석 / 187

1.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의 문제점 ····· 187
1-1.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사업의 면밀한 보조사업 관리 필요 ····· 189
1-2.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국제기구로서 정체성 확립 필요 ····· 194

CONTENTS

Ⅲ. 개별 사업 분석 / 198

1.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의 법적근거가 미비한 세입세출 외 예산 운용 등 ···· 198
2. 재보궐선거관리 사업의 예비비 집행관리 개선 등 ····· 205
3.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법적근거가 미비한 세입세출 외 예산 운용 ····· 208

[소방청]

Ⅰ. 결산 개요 / 215

1. 현 황 ····· 215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219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220

Ⅱ. 주요 현안 분석 / 221

1. 소방청 소관 R&D 사업 활용성 제고방안 필요 등 ····· 221
   1-1. 연구과제 활용성 제고방안 필요 ····· 223
   1-2. 리빙랩 연구 사업 별도 편성 필요 등 ····· 228
2.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사업의 문제점 ····· 231
   2-1. 소방안전특별조사 결과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 등 ····· 232
   2-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 236
3.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의 문제점 ····· 239
   3-1. 보조사업 관리 강화 필요 ····· 240
   3-2. 적정 비목 예산편성을 통한 행사 추진 필요 ····· 244

CONTENTS

Ⅲ. 개별 사업 분석 / 247

1.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사업 긴급공고 지양 필요 등 ····· 247

행정안전부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72억 8,100만원이며, 582억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7.1%인 506억 7,600만원을 수납하고 75억 2,6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4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5,013	55,013	55,013	55,627	48,830	6,794	4	87.8
균형발전특별회계	210	210	210	2,579	1,847	732	0	71.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058	2,058	2,058	0	0	0	0	0.0
합계	57,281	57,281	57,281	58,206	50,676	7,526	4	87.1

자료: 행정안전부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8조 9,526억 7,700만원이며, 이 중 99.6%인 48조 7,736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1,184억 3,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05억 8,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8,110,634	48,211,855	48,405,443	48,226,444	118,434	60,565	99.6
균형발전특별회계	546,034	546,034	547,234	547,216	0	18	99.9
합계	48,656,668	48,757,889	48,952,677	48,773,661	118,434	60,583	99.6

자료: 행정안전부

나.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6억 500만원(11.5%)이 감소한 506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9억 1,700만원(5.4%)이 감소하였다.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수입	53,593	57,281	57,281	50,676	△6,605	△2,917

자료: 행정안전부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45억 7,200만원(0.1%)이 증가한 48조 7,724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조 6,337억 9,700만원(8.1%)이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지출	45,138,664	48,656,668	48,757,889	48,772,461	14,572	3,633,797

자료: 행정안전부

다.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행정안전부의 자산은 9조 3,314억 7,300만원, 부채는 483억 4,400만원으로 순자산은 9조 2,831억 2,9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55억 6,000만원, 투자자산 18억 1,600만원, 일반유형자산 9조 1,955억 6,100만원, 무형자산 1,109억 5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76억 3,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881억 1,600만원(2.1%) 증가하였다. 이는 소방교육연구단지 및 지방합동청사 신축 등 공사로 건설중인자산 등 일반유형자산 1,650억 6,0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64억 3,600만원, 장기차입부채 304억 600만원, 장기충당부채 7억 7,4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7억 2,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11억 9,600만원(78.1%) 증가하였다. 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신규 리스에 따른 금융리스부채 증가로 장기차입부채가 207억 100만원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9,331,473	9,143,357	188,116	2.1
Ⅰ. 유동자산	15,560	11,384	4,176	36.7
Ⅱ. 투자자산	1,816	0	1,816	0.0
Ⅲ. 일반유형자산	9,195,561	9,030,501	165,060	1.8
Ⅳ. 무형자산	110,905	95,404	15,501	16.2
Ⅴ. 기타비유동자산	7,631	6,068	1,563	25.8
부 채	48,344	27,148	21,196	78.1
Ⅰ. 유동부채	16,436	14,013	2,423	17.3
Ⅱ. 장기차입부채	30,406	9,705	20,701	213.3
Ⅲ. 장기충당부채	774	1,949	△1,175	△60.3
Ⅳ. 기타비유동부채	728	1,481	△753	△50.8
순 자 산	9,283,129	9,116,209	166,920	1.8
Ⅰ. 기본순자산	4,043,692	4,043,692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2,161,507	2,031,668	129,839	6.4
Ⅲ. 순자산 조정	3,077,930	3,040,849	37,081	1.2

자료: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017회계연도는 조직개편일(7. 26)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51조 8,664억 4,5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51조 5,632억 8,700만원, 관리운영비 3,522억 5,400만원, 비배분비용 57억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06억 7,300만원, 비배분수익 441억 2,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32조 4,868억 1,300만원(167.6%) 증가한 51조 8,664억 4,500만원이다.

총 24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지방교부세프로그램(49조 445억 8,100만원)과 재난관리프로그램(6,414억 9,9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482억 1,900만원과 경비 1,040억 3,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1,500만원, 기타비용 56억 8,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51,552,614	19,239,866	32,312,748	167.9
가. 프로그램 총원가	51,563,287	19,242,926	32,320,361	168.0
나. 프로그램 수익	10,673	3,060	7,613	248.8
Ⅱ. 관리운영비	352,254	149,967	202,287	134.9
Ⅲ. 비배분비용	5,700	5,250	450	8.6
Ⅳ. 비배분수익	44,123	15,450	28,673	185.6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51,866,445	19,379,632	32,486,813	167.6
Ⅵ.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51,866,445	19,379,632	32,486,813	167.6

자료: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017회계연도는 조직개편일(7. 26)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9조 1,162억 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9조 2,831억 2,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669억 2,000만원(1.8%)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51조 8,664억 4,500만원이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370억 8,100만원이 발생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51조 9,962억 8,400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등 재원의 조달 52조 482억 8,0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519억 9,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370억 8,1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9,116,209	9,105,455	10,754	0.1
Ⅱ. 재정운영결과	51,866,445	19,379,632	32,486,813	167.6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51,996,284	19,390,136	32,606,148	168.2
Ⅳ. 조정항목	37,081	250	36,831	14,732.4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9,283,129	9,116,209	166,920	1.8

자료: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017회계연도는 조직개편일(7. 26)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라. 재정 구조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으로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12억원 전출되었다.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 결산 기준(세입은 수납액, 세출은 지출액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프로젝트, ②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 등이 있다.

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프로젝트사업은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90억원이 감액(140억원 → 50억원)되었다.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 사업은 지역거점별 소통 협력공간 조성·운영 인건비 과다 편성 등 74억원이 감액(144억 3,300만원→70억 3,300만원)되었다[1].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 ②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은 사업추진 완료한 사업장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30억원이 증액(123억 8,500만원→253억 8,500만원)되었고,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사업은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12억 2,500만원이 증액(832억원→944억 2,500만원)되었다.[2]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이 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는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된 단체에게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3]

---

1)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1.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2)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1.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다. 세부사업계획 수립, 대상 청년 및 기업 선정, 지방비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면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4)]

3)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4)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18.5.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행정안전부는 ① **국민주도 사회적 문제해결 확산과 지능형 정부 구현을 통해 열린혁신 선도**, ② **지자체 경쟁력 제고 및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 증진**, ③ **지역특화 발전을 통한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 ④ **정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과학수사의 신뢰 제고**, ⑤ **국민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 ⑥ **재난대응·안전역량 강화로 재난피해 최소화**를 2018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수요자체노력 지표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지표 및 인건비 절감 지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영 세부지표는 지출감소 유도라는 수요자체노력 지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1년을 4기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방교부세법」제10조[5]와 달리 보통교부세는 월별로 부동산교부세는 연초라는 특정시기에 교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경우에는 배분 지표 중 적정사용률 지표는 소방안전분야의 일반재원이라는 소방안전교부세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게 중점사업으로 지정된 특정한 분야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으며, 지방하천 위험도는 지방하천 길이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인 인구수로 측정되고 있어 지방하천의 위험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혁신변화관리 지원 사업은 내역사업의 사업 목적, 사업 수행방식 등이 상이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세부사업 단위의 성과측정 등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 2018년 신규내역사업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49.6%(예산현액 40억원 중 19억 8,300만원 집행)로 낮았고, 동 사업을 통해 소통협력 공간을 기반으로 추진된 리빙랩[6] 프로젝트 중 일부는 주

---

5) 「지방교부세법」
제10조(교부 시기) 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생활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법론

민참여 요소가 적거나 전문연구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이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조정을 사유로 2018년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집행률이 10.2%(예산현액 1,266억 9,500만원 중 128억 8,700만원 집행)로 낮았으며, 내역사업 중 장비적합성 검증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 면밀하지 못하여 당초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된 예산 18억 1,200만원을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전용하여 출연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사업지연에 따라 출연사업의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평창올림픽 기간(2018년 2월 9일 ~ 2월 25일) 동안 평창·강릉·정선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운용하기 위한 사업비를 낙찰률에 맞추어 자산취득비(430-01목)와 공사비(420-03목)로 구분하여 2017회계연도에서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않아 2018회계연도에 자산취득비 13억 4,800만원을 공사비로 전용하여 지출하였다.

넷째,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 신규 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 목표 인원 대비 지원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해당 지원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되어 실집행률이 41.7%로 낮았다. 또한 효과성이 높고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인구감소 지역 및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등에 추가 보조를 목적으로 편성된 23억 6,300만원의 예산을 당초 예산서에 제시한 추가보조율인 10 ~ 20%를 상회하여 30 ~ 35% 또는 정액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보조하였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지방교부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된다. 지방교부세의 주요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과 재원보장이다. 2018년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지연현안, 국가지방협력, 재난안전관리),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된다.[1)]

현행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경우 내국세[2)]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원이며, 해당 재원의 97%는 보통교부세, 3%는 특별교부세의 재원이다.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특별교부세에 총액의 40%,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에 총액의 10%,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에 총액의 50%가 배분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교부하며,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7.5%[3)]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원이다.

지방교부세의 2018년 집행액은 총 45조 9,805억원이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2018년 집행액은 42조 4,696억원이다. 특별교부세 중 ① 지역현안특별교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2018년부터 특별교부세 중 국가시책특별교부세는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부과되는 조세로 관세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세부내역은 소득세(종합, 양도, 근로),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이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에는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목적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소방안전교부세율은 2018년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될 계획이나, 2019년도의 경우 소방직 국가직화 시기(2019.7.1.예정)를 고려하여 인상분 15%p(담배 개별소비세의 20%→35%) 중 절반만을 계상한 27.5%(기존 20% + 7.5%)가 적용될 예정이다.

부세는 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서 2018년 집행액은 5,254억원이고, ②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는 국가적 장려사업 등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2018년 집행액은 1,313억원이며, ③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 재난복구 등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2018년 집행액이 6,567억원이다. 그밖에 부동산교부세의 2018년 집행액은 1조 7,801억원이며, 소방안전교부세의 2018년 집행액은 4,173억원이다.

[2018년 지방교부세 예산 및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예산
	본예산	추경	집행액	
보통교부세	42,469,616	42,469,616	42,469,616	47,602,635
특별교부세	1,313,493	1,313,493	1,313,493	1,472,247
- 지역현안	525,397	525,397	525,397	588,899
- 국가지방협력	131,349	131,349	131,349	147,225
- 재난안전관리	656,747	656,747	656,747	736,123
부동산교부세	1,780,100	1,780,100	1,780,100	2,849,400
소방안전교부세	417,260	417,260	417,260	537,502
총계	45,980,469	45,980,469	45,980,469	52,461,784

자료: 행정안전부

1-1. 보통교부세 수요자체노력 산정 지표의 문제점

가. 현황

보통교부세는 각 자치단체별 기초수요액과 보정수요액에 수요자체노력을 합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초수입액과 보정수입액에 수입자체노력을 합한 기준재정수입의 차이 즉 재정부족액에 비례하여 교부액이 결정된다. 그런데 기초수요액과 보정수요액은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 수, 면적, 인구구조(고령층 비율 등)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감소에 대한 유인이 없고, 기초수입액과 보정수입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과거 세수에 기반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세수를 확충하면 기초수입액 또는 보정수입액이 증가하여 재정부족액이 감소함에 따라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배분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감소를 위한 유인은 없고, 세수를 확충하면 보통교부세 배분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확보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8조의3[1]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수요 자체노력 및 수입 자체노력 분야를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요 자체노력 분야는 지출 절감을 장려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며, 수입 자체노력 분야는 세수확충을 장려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8조의3(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때 항목 및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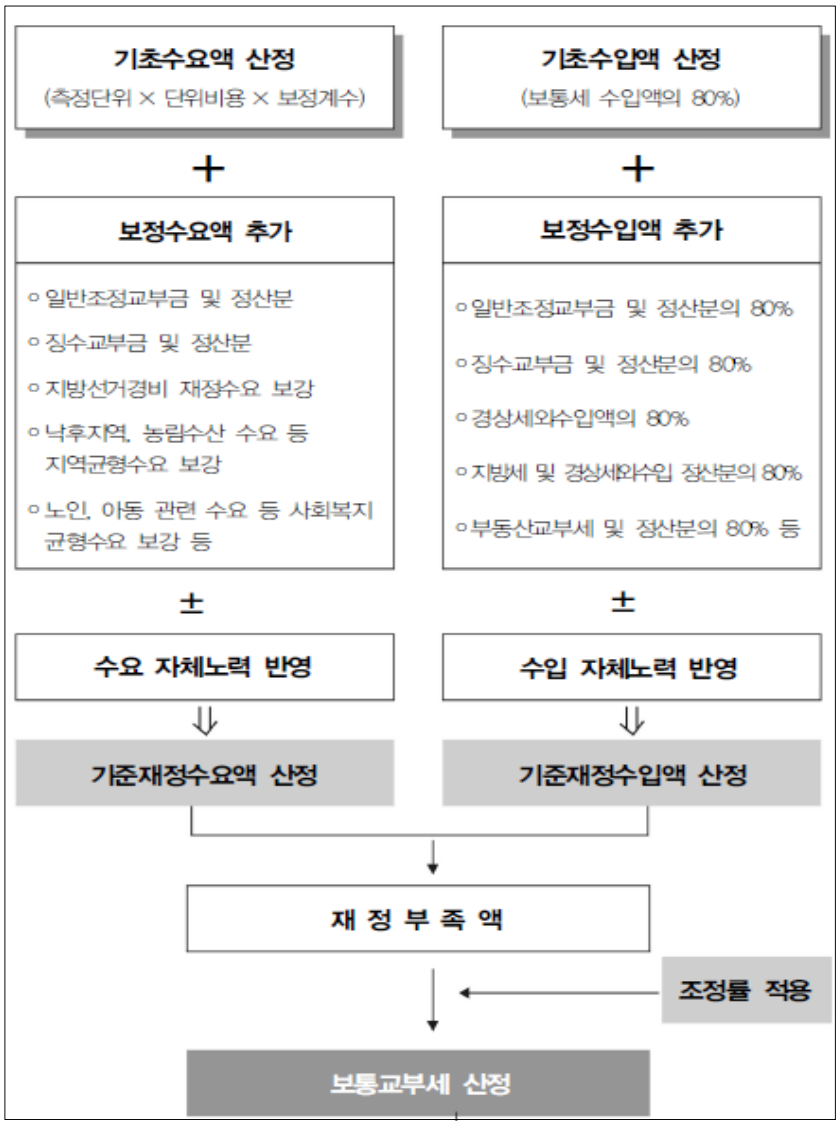
기초수요액 산정
(측정단위 × 단위비용 × 보정계수)
기초수입액 산정
(보통세 수입액의 80%)
+
+
보정수요액 추가
보정수입액 추가
○ 일반조정교부금 및 정산분
○ 징수교부금 및 정산분
○ 지방선거경비 재정수요 보강
○ 낙후지역, 농림수산 수요 등 지역균형수요 보강
○ 노인, 아동 관련 수요 등 사회복지 균형수요 보강 등
○ 일반조정교부금 및 정산분의 80%
○ 징수교부금 및 정산분의 80%
○ 경상세외수입액의 80%
○ 지방세 및 경상세외수입 정산분의 80%
○ 부동산교부세 및 정산분의 80% 등
±
±
수요 자체노력 반영
수입 자체노력 반영
⇩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재 정 부 족 액
조정률 적용
보통교부세 산정

2018년 교부세 산정시에는 수입 자체노력의 경우 7개 항목에 인센티브 8,201억원, 페널티 1조 9,089억원이 부여되어 1조 1,068억원의 기준재정수입액 순증가효과가 발생하였고, 수요 자체노력의 경우 8개 항목에 인센티브 6,670억원, 페널티 2,953억원이 부여되어 3,717억원의 기준재정수요액 순증가효과가 발행하였다.

[최근 3년간 수입자체노력 항목별 자치단체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분포]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인센티브 (A)	페널티 (B)	순효과 (A-B)	인센티브 (A)	페널티 (B)	순효과 (A-B)	인센티브 (A)	페널티 (B)	순효과 (A-B)
지방세 징수율 제고	2,308	1,596	712	2,700	832	1,868	4,904	449	4,455
지방세 체납액 축소	32	19,130	△19,098	285	13,788	△13,503	394	11,710	△11,316
경상세외수입 확충	3,335	180	3,155	3,604	95	3,509	4,558	59	4,49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345	4,504	△4,159	1,410	3,260	△1,850	1,040	3,051	△2,011
탄력세율 적용	16	1,494	△1,478	22	610	△588	31	483	△452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619	△619	0	504	△504	0	221	△221
적극적세원 발굴 및 관리	0	0	0	0	0	0	0	0	0
수입자체노력 총액	6,036	27,523	△21,487	8,021	19,089	△11,068	10,927	15,973	△5,046

자료: 행정안전부

[최근 3년간 수요자체노력 항목별 자치단체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분포]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인센티브 (A)	페널티 (B)	순효과 (A-B)	인센티브 (A)	페널티 (B)	순효과 (A-B)	인센티브 (A)	페널티 (B)	순효과 (A-B)
인건비 절감	692	44	648	938	30	908	947	88	859
지방의회경비 절감	45	3	42	43	2	41	45	2	43
업무추진비 절감	394	0	394	423	0	423	409	0	409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454	1,693	△1,239	522	1,202	△680	1,057	586	471
지방보조금 절감 (민간이전경비)	3,972	1,059	2,913	2,557	2,774	△217	8,929	136	8,793
지방청사관리 운영	2,331	10	2,321	2,142	8	2,134	0	7	△7
민간위탁금 절감	0	144	△144	0	156	△156	0	231	△231
읍면동 통합 운영	73	0	73	45	0	45	42	0	42
수요자체노력 총액	7,961	2,953	5,008	6,670	2,953	3,717	11,429	2,953	8,476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지출감소 유도 및 효율적인 지출을 위한 수요 자체노력 분야에 신설된 일자리 창출 지원 지표는 동 분야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영 지표는 인건비 절감 지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수요 자체노력 분야가 아닌 다른 정책 수단(특별교부세 활용 등)으로 해당 지표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성이 있다.

2018년 수요 자체노력 분야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기존 수요 자체노력 분야는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지방청사 관리·운영', '민간위탁금 절감'의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일자리 창출 항목(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시 2018년 결산분 적용)이 신설되어 8개 항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인건비 건전 운영 항목에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세부지표로 추가(2020년 보통교부세 산정시 2018년 결산분 적용)되었다.

[2018년 신설된 수요 자체노력항목 세부지표 산정방식]

○ 일자리 창출 항목 산정방식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연평균 고용률 증가분 × 70%) + (전전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연평균 업체수 증가율 × 30%)}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고용분야 결산액의 10% ※ 연평균 고용률 증가분 또는 연평균 업체수 증가율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2018년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 인건비 건전 운영 항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부지표 산정방식
[2018년 결산분] {해당 지방자치단체 당해연도 전환비용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전환비용} × 20% ※ 2018년도 전환비용에 2017년 9월~12월 실적을 포함하되, 2017년도 전환비용에서는 동 기간의 전환비용을 제외한다. **[2019년 이후 결산분]** [1 - 1/2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전환비용 ÷ 해당 지방자치단체 당해연도 전환비용} + 2018년 이후 당해연도 전환비용 대비 전년도 전환비용 비율의 평균}} × 당해연도 전환비용 × 20% ※ 동종 지방자치단체의 전환비율(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전환인원) 평균을 상회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전환비용 = 정규직 전환인원 × 1인당 전환비용(전국 공통기준 적용)

자료:「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별표 6]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수요 자체노력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감소 노력을 장려하여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분야로 지출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일자리 창출 항목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인건비 건전 운영 항목에 추가된 세부지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정규직 전환비용의 전년대비 증가분을 기초로 산정되고, 지출증가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 인건비 건전 운영 항목의 다른 항목이 인건비 절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건비 건전 운영 항목 및 수요 자체노력 분야의 세부 지표로 적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수요 자체노력의 신규 항목에서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협력 유도는 수요 자체노력 분야가 아닌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1-2. 교부세 교부시기 관련 문제점

가. 현 황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재정운용 수입인 교부세가 해당 연도 중 이른 시기에 교부되어야 재정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법적으로 교부세의 교부시기를「지방교부세법」제10조[1]에 따라 분기마다 교부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교부세의 교부시기를 법률로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예측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분석의견

교부세의 교부시기가 법률에서 정해진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의 교부시기를 분기마다 교부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분기별로 교부하고 있지 않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교부시기를 분기별로 하면 분기의 초에 교부하는 것은 세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에 연동되어 확정되는 보통교부세를 지급하는 것이 되고, 분기의 말에 교부하게 되면 교부시기가 지체되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월별로 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하고 있다.

부동산교부세의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을 두고 있어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세수가 확보되면 12월에 교부세를 교부하고, 전전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과 500만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의 분할납부액[2]을 연초에 교부하고 있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지방교부세법」
제10조(교부 시기) 교부세는 1년을 4기(期)로 나누어 교부한다. 다만, 특별교부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시행(2018.12.31.)에 따라 2019년부터는 250만원 이상으로 변경됨.

따라서 법률의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교부시기를 월별 또는 특정시기로 하기 보다는 현행 교부시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보통교부세 교부시기 및 금액]

(단위: 억원)

구 분	교부 일자	교부 금액	구 분	교부 일자	교부 금액
1월	1. 29.	47,000	6월	6. 22.	50,000
2월	2. 12.	45,000	7월	7. 27.	45,000
3월	3. 26.	36,000	8월	8. 27.	40,000
4월	4. 27.	49,000	9월	9. 19.	40,000
5월	5. 25.	50,000	10월	10. 29.	22,696
합 계	424,696				

자료: 행정안전부

[2018년 부동산교부세 교부시기 및 금액]

(단위: 억원)

구 분		교 부 일 자	교 부 금 액
4월	2018 회계연도 분납징수분, 2017 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4. 17.	4,389
12월	당초	12. 28.	13,412
합 계			17,801

자료: 행정안전부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시기 및 금액]

(단위: 억원)

구 분		교 부 일 자	교 부 금 액
1분기	당초	1월 10일	104,315
2분기	당초	4월 10일	104,315
3분기	당초	7월 9일	104,315
4분기	당초	10월 11일	104,315
합 계			417,260

자료: 행정안전부

1-3.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기준의 문제점

가. 현황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2018년 집행액은 예산안은 4,172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5억 5,500만원(△9.1%) 감소하였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사무가 광역사무임을 고려하여 시·도에만 교부하고 있으며, 시·도별 교부액은 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도 40%, 재정여건 20%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시·도별 교부액 = 교부총액 ×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40%) +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40%) + (재정여건×20%)]

자료: 행정안전부

최근 3개년(2017년~2019년) 소방안전교부세의 시·도별 교부액을 살펴보면, 경기도에 1,324억 1,400만원이 교부되어 가장 많은 금액이 교부되었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에 952억 8,900만원, 강원도에 838억 2,300만원, 경상남도에 837억 4,000만원, 전라남도에 824억 1,800만원, 부산광역시에 814억 5,800만원 등의 순으로 교부금이 교부되었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연도별 소방안전교부세 시·도별 배분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계	비율
서 울	29,277	38,957	27,055	95,289	7.6
부 산	24,934	34,426	22,098	81,458	6.5
대 구	27,823	21,732	28,100	77,655	6.2
인 천	20,647	21,178	24,575	66,400	5.3
광 주	24,868	19,690	22,259	66,817	5.3
대 전	23,835	15,349	17,439	56,623	4.5
울 산	22,568	27,371	16,507	66,446	5.3
세 종	8,259	6,368	5,342	19,969	1.6
경 기	43,789	42,564	46,061	132,414	10.5
강 원	36,543	25,820	21,460	83,823	6.7
충 북	25,332	20,100	20,598	66,030	5.2
충 남	26,337	21,529	20,065	67,931	5.4
전 북	25,220	21,157	18,837	65,214	5.2
전 남	29,858	25,184	27,376	82,418	6.5
경 북	28,201	24,451	22,939	75,591	6.0
경 남	29,348	29,403	24,989	83,740	6.6
제 주	31,976	21,981	18,134	72,091	5.7
총 액	458,815	417,260	383,834	1,259,909	100.0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기준이 되는 지표 중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의 경우 특정 지출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가중치를 완화하거나 다른 적절한 지표로 개선이 필요하다.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기준은 소방분야 기준과 안전분야 기준으로 구분되며 총 14개 세부지표가 적용된다.

소방분야 기준에는 노후·부족 소방장비의 교체·보강 소요 금액, 소방출동비율, 특정소방대상물 수, 소방시설 확충노력률, 소방예산확대 노력률 등 총 5개 지표가 적용되고 안전분야 기준에는 지방도로 위험도, 지방하천 위험도, 안전지수 소요비율, 안전신고 비율,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안전지수 개선비율, 안전신고 개선율 등 총 7개 지표가 적용된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적정 사용률과 재정자주도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 배분기준]

구분	소방분야 기준	비율	안전분야 기준	비율
소방·안전시설 현황과 투자 소요 (40%)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소요 금액	18%	지방도로 위험도	5%
			지방하천 위험도	4%
	소방출동비율	4%	안전지수 소요비율	3%
	소방공무원 수	4%	안전신고 비율	2%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40%)	소방시설 확충노력률	16%	안전시설 확충노력률	6%
			안전지수 개선비율	2%
	소방예산 확대노력률	5%	안전신고 개선율	1%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			10%
재정여건 (20%)	재정자주도			20%

자료: 행정안전부

배분기준 지표 중 10% 반영비율을 가진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의 경우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액 중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중점사업[1]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을 가중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책정되고 있다.

1) 중점사업의 예로는 소방분야는 기동장비(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보호장비(방화복, 안전화 장갑 등), 소방안전교육 등이 있고, 안전분야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정비, 공유림 안전정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이 있다.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 산정기준]

○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 산정기준

가. 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소방안전교부세 적정사용률} = \frac{(\text{전전년도 중점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 \times 5) + \text{전전년도 재량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text{전전년도 소방안전교부세}}$$

나. 가목의 전전년도 중점 및 재량사업에 사용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은 2015년도에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액 중 전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한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다. 가목의 소방안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은 특수수요 소요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산정된 비율의 1/4로 산정한다.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이는 일반재원인 교부세를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배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표 산정방식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안전분야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성격의 교부세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낙후 소방장비 및 안전소요 개선과 관련하여 중점투자소요를 지정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투자의 효과성 측면에서 필요하고,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점사업을 보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처럼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액 가운데 중점사업에 대한 가중치가 재량사업보다 5배 높게 설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시급하게 투자가 필요한 재량사업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지출을 위축시킬 수 있고,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동 지표는 여전히 일반재원 성격인 교부세를 특정사업에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장기적으로는 동 지표를 폐지하거나 다른 지표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5배로 되어있는 중요사업에 대한 가중치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지방하천 위험도의 경우 지방하천 범람 횟수 등 지방하천 위험도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지방하천 위험도의 세부 산정 방식을 살펴보면 지방하천의 길이와 시·도 총 인구수 대비 해당 시·도의 비율이 지방하천 위험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지표가 지방하천 위험도를 실질적으로 측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유사 지표인 지방도로 위험도가 지방도로 위험률(해당 시도의 단위 도로당 사상자 비율)을 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지표 설정이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지방하천 위험도 및 지방도로 위험도 세부 산정지표]

○ 지방하천 위험도의 산정기준

가. 지방하천 위험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방하천 위험도 = 지방하천 길이(km)의 비율 + (인구 수의 비율 × 1/2)

나. 지방하천은「하천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을 말한다.

다. 지방하천 길이의 비율은 시·도 총 지방하천 길이 대비 해당 시·도의 지방하천의 길이의 비율을 말하며, 인구 수의 비율은 시·도 총 인구 수 대비 해당 시·도의 인구 수의 비율을 말한다.

○ 지방도로 위험도의 산정기준

가. 지방도로 위험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방도로 위험도 = 지방도로 위험률 × 0.7 + 지방도로 비율 × 0.3

나. 지방도로 위험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지방도로 위험률} = \frac{\text{(해당 시·도의 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사망자} \times 0.7 + \text{해당 시·도의 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부상자} \times 0.3)}{\Sigma\ \text{시도별(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사망자} \times 0.7 + \text{지방도로 1km당 발생한 부상자} \times 0.3)}$$

다. 지방도로는「도로법」제10조에 따른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를 말하고, 사망자 및 부상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를 말한다.

라. 지방도로 비율은 시·도 총 지방도로 길이 대비 해당 시·도의 지방도로 길이의 비율을 말하며,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지방하천 위험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하천과 관련한 사상자에 대한 사고 발생빈도 등 객관적인 기초 통계가 없어 실질적인 위험도 반영이 현재로서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기초 통계를 누적하여 적절한 지표로 교체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교부금 중 9~10% 수준을 지방하천 시설확충에 투자하고 있고, 2020년부터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포괄보조사업에서 제외[2]되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무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지방하천 위험도와 연관성이 높은 지표를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현행 지표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2)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정비 사업, 행정안전부 소하천정비 등

2 정부혁신변화관리 지원 사업의 문제점

정부혁신변화관리 지원 사업[1]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 71억 8,300만원 중 98.1%에 해당하는 70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정부혁신변화관리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부혁신변화관리 지원	7,033	7,033	205	△55	7,183	7,045	0	138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	4,200	4,200	0	0	4,200	4,194	0	6
정부혁신 추진 기반 구축	578	578	0	△35	543	543	0	0
정부혁신 확산·교육	990	990	205	0	1,195	1,128	0	67
정부혁신 컨설팅 및 평가단 운영	544	544	0	0	544	479	0	65
민관협업·일하는 방식 개선	63	63	0	0	63	63	0	0
국민참여형 정책 운영	658	658	0	△20	638	638	0	0

자료: 행정안전부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933-307

2-1. 정부혁신변화관리 지원 사업의 일부 내역사업 분리편성 필요[2)]

가. 현 황

정부혁신변화관리 지원 사업의 연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의 경우 당시 정부혁신의 추진방향인 정부 3.0과 관련된 성과공유, 확산·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의 홍보 및 운영비성 경비 6억 3,300만원이 집행되었지만, 매년 사업 규모 및 내역사업 수가 증가하여 2018년의 경우에는 70억 4,5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19년에는 133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정부혁신변화관리 지원 사업의 연도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실집행률]	집행률 (C/B) [실집행률]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4	500	500	0	158	658	633	126.6	96.2	0	25
2015	1,771	1,771	0	0	1,771	1,72	97.5	97.5	0	45
2016	4,005	4,005	0	0	4,005	3,973	99.2	99.2	0	32
2017	4,605	4,605	0	0	4,605	2,790	60.5	60.5	205	1,610
2018	7,033	7,033	205	△55	7,183	7,045 [5,028]	100.2 [71.5]	98.1 [70]	0	138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정부혁신변화관리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은 사업 목적, 사업 수행방식 등이 상이한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일부 내역사업의 경우 별도 편성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2018년 정부혁신변화관리 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 현황을 보면 지자체 보조사업 형태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정부혁신 박람회 등 행사 개최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혁신 추진기반 구축, 정부혁신 관련 대국민 홍보 사업인 정부혁신 확산·교육,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혁신 평가관련 사업인 정부혁신 컨설팅·평가단 운영, 정부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사업인 민관협업·일하는 방식 개선,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을 국민이 디자인 직접 디자인하는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는 사업인 국민참여형 정책운영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정부혁신변화관리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사업 추진방식	주요 사업내용	2018년 예산현액	2018년 집행액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지자체 보조사업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거점공간 조성	4,200	4,194
정부혁신 추진기반 구축	직접수행	정부혁신 박람회 개최, 열린 소통포럼	543	543
정부혁신 확산·교육	직접수행	정부혁신 관련 대국민 홍보 등	1,195	1,128
정부혁신 컨설팅·평가단 운영	직접수행	정부혁신 평가지표 개발, 관련 담당자 및 기관대상 컨설팅·평가	544	479
민관협업·일하는 방식 개선	직접수행	4차산업시대 정부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63	63
국민참여형 정책운영	직접수행 (한국디자인진흥원[1])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을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국민디자인단 운영 및 지원	638	638

주: 1) 국민참여형 정책운영 내역사업의 경우 일반연구비로 편성되어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수의계약 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위탁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각 내역사업이 거시적으로 정부혁신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각각 사업의 수행방식과 사업내용이 상이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내역사업의 경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소통협력공간의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고, 정부혁신 추진기반 구축사업의 내역사업은 정부혁신 홍보를 위한 정부혁신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사성 사업이며, 국민참여형 정책운영 사업

은 국민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형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 중인 사업이다.

내역사업의 수행방식과 내용이 상이하다 보니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정부혁신 평가 및 홍보와 관련된 정부혁신 추진기반 강화와 민원행정제도 개선과 관련된 성과만 성과지표로 측정되고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국민참여형 정책운영 등은 성과지표로 사업성과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혁신변화관리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	구분	'16	'17	'18	'19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정부혁신 추진기반 강화 (점)	목표	94	100	100	100	① 정부혁신 추진계획 및 부처별 실행계획 평가 - 정부혁신 평가 실시율 (평가 실시기관 수/ 평가대상 기관수)*100 ② 정부혁신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실적 (매체별 보도 및 업로드 건수)
	실적	95.8	100	100	-	
	달성도	102	100	100	-	
민원행정제도 개선 건수(건)	목표	신규	신규	50	65	국민생활 밀접 민원·행정제도 발굴·개선 건수
	실적	신규	신규	61	-	
	달성도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 예산은 프로그램 예산체계[1]에 따라 편성되고 있고, 국회의 예산심의는 세부사업 단위로 심사되고 있으며, 세부사업은 성격이 같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결산 및 사업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1)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2007년 도입된 제도이고, 예산편성은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목, 세목 등의 체계로 편성되며 성과중심의 예산제도임.

따라서 정부혁신변화지원 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이 사업 내용과 사업 수행방식에 통일성이 없는 내역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세부사업 국회 심사 및 사업평가의 체계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정부혁신과 직접 연관이 있는 홍보 및 평가 등 정부혁신과 직접 연관이 있는 내역사업이 아닌 사업 특히, 지자체 보조사업이며 중앙정부의 정부혁신과 연관성이 적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은 별도의 세부사업 또는 사업 목적 및 추진방식이 유사한 세부사업에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 구조를 개편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2-2.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의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가. 현 황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은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거점 공간 기반 소통협력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 사업[1]의 내역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2019년 예산현액 42억원 중 99.9%에 해당하는 41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부혁신변화관리 지원	7,033	7,033	205	△55	7,183	7,045	0	138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및 조성	4,200	4,200	0	0	4,200	4,194	0	6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은 2018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① 지역주민 누구나 활용하는 공유·협업 공간 조성, ② 지역프로젝트팀 입주 및 분야별 전문지원, ③ 지역밀착형 리빙랩(생활실험), ④ 사회적가치 저변확대(교육·홍보·컨퍼런스 등), ⑤ 혁신사례 연구 및 아카이브 등을 통해 주민 주도 문제해결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역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인 리빙랩이란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지역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생활현장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법론을 말한다. 리빙랩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와 다양한 분야(공공, 민간, 이해관계장 등)의 협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933-307

력이 핵심적인 요소이며, 골목쓰레기·주차난부터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피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회의 문제가 그 해결 대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가, 아파트, 전통시장, 학교, 회사 등 모든 생활세계를 실험장으로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리빙랩의 수범사례로 '에너지자립 성대골리빙랩'을 들고 있다. 해당 리빙랩은 에너지 자립률이 4.2%로 낮은 서울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작구 상도3·4동 주민과 기업가·공무원·전문가·시민단체의 협력으로 에너지축제 / 미니태양광 DIY제품 개발·설치 / 에너지절약 주민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매년 전기사용량을 약 5% 이상 절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강원도 춘천시와 전라북도 전주시를 보조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여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330-01목)으로 20억원(국비보조율 50%)을 각각 지원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대응지방비를 통하여 자본보조 성격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의 리모델링 등의 경비를 부담했다.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2018년의 경우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의 각 지자체별 실집행률이 사업일정 지연, 리빙랩 관련 예산 집행 부진 등의 사유로 낮은 수준이었는 바 향후에는 보조사업 일정 관리 및 소통협력공간 관련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실집행률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2018년 신규 조성지인 강원도 춘천시와 전라북도 전주시의 경우 기존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각각 청년·지역문제 해결, 성매매 업소 집결지 혁신을 통한 인권·지역혁신 상징 거점 조성을 목표로 지역밀착형 리빙랩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고,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은 지자체 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2018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 현황]

구분	광역 + 기초 강원도 춘천시	기초 전라북도 전주시	
개요	舊 강원지방조달청에 인근 대학(52천여명, 춘천 인구 18.6%)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 주도 청년·지역 문제 해결 거점 조성	원도심(전주시청 뒷편) 내 50여년 된 성매매 업소 집결지 '선미촌' 문제 해결을 통한 인권·지역혁신 상징 거점 조성	
주요 사업	《강원권역 지역혁신 & 청춘 거점》 ◦ 지역밀착형 리빙랩* * 청년먹거리, 발달장애 등 13개 의제 수행 ◦ 저변확대 사업 : 강원혁신포럼·비전선포식 및 사회혁신 주간(11.13~16) ◦ 혁신도서관 : 지역문제 해결 과정 및 성과 DB 구축, 열람·활용·확산 ◦ 공유협업공간 운영 : 프로젝트팀 입주	《인권침해 ⇒ 지역혁신 & 인권상징 거점》 ◦ 지역밀착형 리빙랩* * 성평등, 범죄예방골목 등 18개 의제 수행 ◦ 저변확대 사업 : 전주시 사회혁신 한마당 및 비전선포식(11.29.~12.1.) ◦ 여성인권 활동 및 경력단절여성 자활 ◦ 인근 주민 공동체프로그램, 공유공간 개방 ◦ 공유협업공간 운영 : 프로젝트팀 입주	
운영 주체	(사)더슬기로운생활	(주)우깨컴퍼니, (사)전북여성인권센터 * 컨소시엄 구성 공동수탁	
조성지	舊 강원지방조달청 / 춘천도시공사 * '79 강원지방조달청 → '99 춘천도시공사 → '18 소통협력공간	① 선미촌 거점건물	② 원도심 거점건물
조성지 규모	1,963㎡ (지상3층, 지하1층)	561㎡ (지상2층)	2,265㎡ (지상5층, 지하1층)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2018년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보면 전주시 50.1%, 춘천시 49.1%로 실집행률이 낮은 수준이어서 보조사업의 집행관리가 면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2018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목	세목	사업시행주체(기관명)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전주시	2,000	0	2,000	1,002	998	0	50.1
		춘천시	2,000	0	2,000	981	1,019	0	49.1
		합계	4,000	0	4,000	1,983	2,017	0	49.6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18년의 경우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사업준비를 위한 조례 제정 및 대응 지방비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이 진행되어 전체적인 실집행률이 낮았고, 2019년에는 3개월 가량 빠른 3월 12일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대전광역시, 제주시)를 공고하였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준비를 진행하고 있어 실집행률이 개선될 전망이며 2019년에는 보조사업비의 이월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예산편성 당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14억원으로 편성되었던 리빙랩 사업의 2018년 공모 완료된 리빙랩 예산 총액을 보면 춘천시 3억 1,000만원, 전주시 4억 6,000만원이고, 2019년의 경우에도 리빙랩 관련 예산배정액이 동일하게 14억원임을 고려하면 실집행률 개선이 용이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리빙랩 이외에 전체적인 사업방향과 일치하면서도 실집행 개선이 가능한 소통협력 공간과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보조사업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8년 수행된 일부 리빙랩의 경우 주민참여 요소가 적거나 정부 및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프로젝트가 있으므로 향후에 리빙랩 선정시에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지양하여 선정하도록 보조사업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리빙랩이란 사업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지역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생활 현

장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법론을 말한다. 또한 동 사업의 사업 목적은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이 리빙랩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보인다.

그런데 2018년 수행된 리빙랩 프로젝트 내역을 보면 일부 리빙랩의 경우 주민참여 요소가 적거나 정부 및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의 '빅데이터 기반의 교통체계 구축 방안 모색' 및 '쓰레기 수거방식(스마트쓰레기통)의 효율성 조사' 프로젝트, 전주시의 '텀블러가 불편한 당신에게' 프로젝트의 경우 시민 의견 취합 등 일부 주민참여 요소가 있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연구개발 및 조사 업무의 성격을 가진 프로젝트로 리빙랩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인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의 일부 리빙랩 프로젝트 내역]

(단위: 천원)

지자체	분야	프로젝트/활동내용	예산액
춘천시	교통	**빅데이터 기반의 춘천의 교통체계 구축 방안 모색** · 한림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쏘카, 카카오 모빌리티 등 전문기관이 연계 · 춘천시민 1,105명 의견 취합(설문조사), 춘천 시내버스 빅데이터 4,500만여건 분석	29,000
	쓰레기	**쓰레기 수거방식(스마트쓰레기통)의 효율성 조사** · 스마트 쓰레기통 제작 및 설치 · 쓰레기 수거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조사	14,200
전주시	환경	**텀블러가 불편한 당신에게** · 대안 텀블러 시제품 개발 및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 영상 배포 · 전북대 생명공학부 등 12곳 협업	20,000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에 리빙랩 선정시에는 주민참여 요소가 적고, 연구개발 및 조사 사업으로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프로젝트는 선정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3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의 문제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1] 사업은 경찰, 소방 군 등 재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망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예산현액 1,266억 9,500만원 중 10.2%에 해당하는 128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917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0억 7,200만원을 불용하였다. 전년도 이월액 52억 6,700만원은 평창올림픽 보강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약 등 사업지연으로 인한 것이며, 이용액 3억 6,700만원은 태풍 콩레이 관련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18회계연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121,794	121,794	5,267	△367	126,695	12,887	91,736	22,07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117,146	117,146	5,267	△15	122,399	9,107	91,736	21,556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4,648	4,648	0	△352	4,296	3,780	0	516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목적은 기존에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구축·운용되고, 서비스 지역이 제한되며, 단방향의 음성 중심 서비스만을 제공하던 주요 재난안전 분야의 통신망을 통합적으로 구축·운용하여, 전국을 서비스 지역으로 하며, 기관 간 통합적인 의사소통이 양방향으로 다양한 매체(문자·음성·영상)를 통해 송·수신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뿐만 아니라 평시 예방목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고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통합적인 대처와 정보공유가 가능할 전망이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3033-500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시 주요 변화 비교]

비고	구축 이전	구축 이후
구축·운용	기관별 구축·운용	통합 구축·운용
통신망	협대역/서비스 지역 제한	광대역/서비스 지역 제한 없음
의사소통	단방향/단일기관 의사소통	양방향/협력적 의사소통
제공서비스	음성 중심	문자·음성·영상 등 멀티미디어
재난망 활용	재난 발생 시 활용	재난 발생 및 평시(예방) 활용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1.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동 사업의 총 사업비(2015~2025년)는 1조 4,776억원[1]이다. 시범사업으로 강릉·평창·정선 지역에 구축(2016년 구축, 2017년 보강 구축)하여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2018. 2. 9. ~ 25.)에 시범운영을 하였다. 당초 본 사업은 1단계 사업이 2018년 중부권 5개 시·도(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를 대상으로, 2019년 2단계 사업이 남부권 9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를 대상으로, 2020년 3단계 사업이 수도권 3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를 대상으로 구축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이 지연추진되어 1단계 사업이 2019년에 완료될 예정이고, 1단계 사업 구축 완료 이후에 2단계와 3단계 사업의 경우 병행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병행추진하여 전체 사업은 지연 없이 2020년에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연도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계획]

2015 ~2016년	2017년	2019년 (당초 2018년)	2019년	2020년
〈시범사업〉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보강 사업〉	〈본 사업 1단계〉 (중부권)	〈본 사업 2단계〉 (남부권)	〈본 사업 3단계〉 (수도권)
강릉, 평창, 정선	강릉, 평창, 정선 등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서울, 경기, 인천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본 사업 1단계 구축 및 제2운영센터 구축 등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시범사업, 구축 및 운영예산을 포함한 총소요예산이며,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는 구축 및 유지보수, 단말기 구매 비용은 2018년말 기준으로 9,395억원이다.

동 사업의 추진연혁 및 사용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안전통신망은 PS-LTE[2] 기술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 당초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에 따르면 국토면적의 89.5%를 기지국을 활용한 통신망 커버리지로 설정하였으나 2015~2016년 이루어진 시범사업의 검증 결과, 산악지역 등 지형에 따른 전파도달 거리 축소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016.11~2018.1)」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토면적의 40.5%를 통신망 커버리지로, 기타 면적은 상용망, 이동기지국, 기타망(철도망, 해상망) 등을 활용하는 "All-4-one" 전략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2018년 4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9,595억원)를 확정하였다.

[All-4-one 전략에 따른 커버리지 구현계획]

구분	국가 기반 시설	도로	인구 밀집 지역	산 지	농어업 지역	실내/ 지하	해 상	철 도
고정 기지국	◎	◎	◎	○ (도로 주변)	○ (도로 주변)	○ (주요 시설)	-	-
상용망	-	○	-	○	◎	◎	-	-
이동 기지국	-	-	-	◎	○	○	◎	-
기타망	-	-	-	○ 철도망	○ 철도망	○ UHF, 철도망	○ 해상망	◎ 철도망, TRS

주: ◎는 주력, ○는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통신인프라를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따라 당초 2018년 완료 예정이었던 본 사업 1단계 구축은 사업비가 확정된 4월 이후 추진되어 5월에 변경된 사업비에 따른 본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6월부터 12월 조달청 계약의뢰 등 사업자 선정(본 사업 2단계 및 3단계 사업자는 장기

2) PS-LTE(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는 음성, 문자,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서비스가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을 말하며 일반적인 LTE에 무전통신기능이 추가된다. 2014년 12월 舊 국무총리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대역으로 700MHz대 중 20MHz(718~728, 773~783)를 배분하였다.

계속계약으로 동시 선정)을 마쳤다.[3] 2018년 12월부터 본 사업 1단계를 추진하기 시작하여 2019년 4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19년 9월까지 준공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본 사업 1단계 추진 일정]

조달청 계약의뢰 (6월)	⇨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7~10월)	⇨	제안서 평가 및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후 협상 및 사업자 선정·계약 (10월~12월)	⇨	본 사업 구축 및 완료 (12월~2019년 9월)
행안부 → 조달청		행안부, 조달청		조달청		행안부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행정안전부는 주제어장치(코어망장비 및 응용시스템)를 통해 관할범위 내 단말기의 통신을 관제·운영하는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제1센터와 제2센터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인데 제1센터는 2016년 6월에 기존 건물인 정부서울청사 19층을 활용하여 구축을 완료하였다. 제2운영센터의 경우 당초에는 2018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동 사업의 총사업비가 2018년 4월에 확정되고 본 사업계획이 5월에 확정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5월 사업계획 확정 후 관련 내부절차를 거쳐 7월에 조달청에 설계용역 조달계약을 의뢰하여 10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2월까지 건축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2019년 7월까지 제2운영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건축물 건립 완료 후에는 장비 도입 및 구축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0년 상반기 내에 제2운영센터가 정상 운영될 계획이다.

3) 사업자는 본 사업 단계와는 별도로 지역별 구역을 나누어 선정하였으며 A구역(대전, 세종, 충남, 대구, 경북, 제주, 서울) 및 B구역(강원, 광주, 전북, 전남, 경기)은 KT가 C구역(충북, 부산, 울산, 경남, 인천)은 SKT가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현황]

구분		제1운영센터	제2운영센터
소재지		정부서울청사 19층	대구시 수성의료지구
구축방법		기존 건물에 구축	신규 건물 건축
구축시기		2016년 6월 구축 완료	2019년 7월 건축물 건립 완료 2020년 1월 장비 도입 등 운영준비 완료
관할범위	중부	5개 시·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세종)	1센터 백업
	서부	2센터 백업	7개 시·도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동부	2센터 백업	5개 시·도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2운영센터 건축이 지연됨에 따라 본 사업 1단계 구축 예정 지역 중 제2운영센터의 관할 범위(대전, 충북, 충남)의 경우 제1운영센터에서 제2운영센터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관할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본 사업 2단계와 3단계는 병행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전체적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당초 예정인 2020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사업지연에 따라 동 사업은 2018년 예산현액 1,266억 9,500만원 중 10.2%에 해당하는 128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917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0억 7,200만원을 불용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동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해 본 사업 1단계 구축 및 제2운영센터 건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는 재해·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 2019년 및 향후 예산집행과정에서는 더 이상 지연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3-2. 장비적합성 검증 사업의 전용을 통한 출연사업 전환

가. 현 황

장비인증 및 정책연구 사업은 재난안전통신망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축 이전에 시험적으로 운용하여 재난안전통신망에 운용하기 적합한 수준의 장비를 인증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의 표준운영절차 등을 마련하여 기술·정책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의 내내역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동 사업의 예산현액 18억 1,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121,794	121,794	5,267	△367	126,695	12,887	91,736	22,07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117,146	117,146	5,267	△15	122,399	9,107	91,736	21,556
장비인증 및 정책연구	1,812	1,812	0	0	1,812	1,812	0	0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인해 장비인증 및 정책연구 내역사업을 전용을 통해 출연사업으로 전환하였고, 해당 출연사업의 경우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예산편성 시에는 동 내역사업의 예산을 인증 관련 협회, 연구원 등을 통해 장비 적합성 검증을 수행하고 정책연구는 대학, 민간연구소 간 공개경쟁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일반연구비(260-01목)로 전액 편성하였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그런데, 2018년도 예산 편성 이후 총사업비 확정(2018년 4월)에 따른 본 사업 계획 수립과정(2018년 5월)에서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재난안전통신망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기술지원 사업[1]을 수행한 경험이 있던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장비 적합성 검증 내역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동 내역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전환을 결정하고 일반연구비(260-01목)를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전용하여 출연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2]에 전액 교부하였다.

[장비 적합성 검증 내역사업의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전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3033-500)	260-01 (일반 연구비)	1,81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3033-500)	350-02 (사업 출연금)	전문적·효율적인 장비적합성 검증, 정책연구용역을 위한 출연사업 추진

자료: 행정안전부

이와 같은 전용은 장비인증이 통신망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업무임에도 당초 2018년 예산편성 시 면밀하지 못한 장비인증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나타난 전용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2018년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장비 적합성 검증 업무의 소요가 없었고, 연도 말인 12월 17일 출연금이 교부됨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실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교부받은 출연금의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재난안전통신망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비: 36억원, 기간: 2016-2017년 사업내용: PS-LTE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R&D 과제인 '차세대 네트워크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3년간 총36억원 R&D 예산투입, PS-LTE 등 47건의 공공안전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재난안전통신망 환경과 동일한 PS-LTE 시험환경(판교, 대전, 구미) 구성, 시스템, 단말 등 시험검증 수행

2)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경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제3항제12호에서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과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정보화진흥원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서 국가기관 등은 정보화진흥원에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국가재정법」 제12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출연을 위한 법적근거는 있다고 보인다.

[장비 적합성 검증 내역사업의 한국정보화진흥원 출연금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1,812	1,812	1,812	1,812	0	1,812	0	1,812	0	0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출연사업은 그 편성에 법적 근거[3]를 요구할 만큼 최초 편성시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예산의 조정 등을 통한 연도 내 출연사업 전환을 자제하고, 신규 출연사업은 예산안에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3)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3-3. 이월액 산정오류로 인한 불필요한 전용 발생

가. 현 황

행정안전부는 2018년 평창올림픽 기간(2018년 2월 9일 ~ 2월 25일)동안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강릉·정선의 재난안전통신망 운용을 위한 보강사업을 위해 2017회계연도 목적예비비로 공사비(420-03목) 22억 6,000만원, 자산취득비(430-01목) 63억 7,300만원, 감리비(420-04목) 1억원 총 87억 3,300만원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당해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보강사업 계약액 등 52억 6,700만원을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다.

[2017년 및 2018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7년	1,760	1,760	0	0	8,733	10,493	1,565	5,267	3,661
2018년	121,794	121,794	5,267	△367	0	126,695	12,887	91,736	22,072

자료: 행정안전부

가.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비목별 배분을 고려하지 않은 면밀하지 못한 전년도 이월 때문에 불필요하게 2018회계연도 사업비를 전용한 측면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7회계연도에서 이월된 평창올릭픽 관련 재난안전통신망 보강사업비 중 자산취득비 13억 4,800만원을 공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이월된 재난안전통신망 보강사업비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전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3033-500)	430-01 (자산취득비)	1,348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3033-500)	420-03 (공사비)	보강사업 계약금을 비목별로 나누어 집행

자료: 행정안전부

자산취득비를 전용한 사유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당초 동 사업은 낙찰률에 맞추어 공사비로 13억 7,800만원을 지출하여야 하고, 자산취득비로는 38억 300만원을 지출[1]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월액 대부분을 자산취득비로만 이월(51억 5,100만원)하여 사업 완료 후 보강사업 계약금을 적정 비목별로 나누어 집행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전용하였다는 설명이다.

[2017회계연도 비목별 실제이월액 및 적정이월액 비교]

(단위: 백만원)

비목	예산현액	구분	이월액	불용액
공사비 (420-03목)	2,260	실제이월액	30	2,230
		적정이월액	1,378	882
자산취득비 (430-01목)	6,373	실제이월액	5,151	1,222
		적정이월액	3,803	2,570

자료: 행정안전부

전용은 예산 집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허용되는 제도이지만 면밀하지 못한 (전년도)이월을 사유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이·전용 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1) 공사비는 대부분 철탑 설치 비용이며, 자산취득비는 대부분 서버 및 기지국 장비도입비용임

Ⅲ 개별 사업 분석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실집행 부진 등

가. 현 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1]은 청년실업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2018년 7월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역청년일자리를 직·간접고용 포함 7만개 이상[2] 창출하기 위해 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신규편성되어 추진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 830억 7,200만원 중 99.9%에 해당하는 830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4,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0	83,072	0	0	83,072	83,026	0	46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0	82,892	0	0	82,892	82,892	0	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운영	0	180	0	0	180	134	0	46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은 청년[3]의 호응도가 높고 지역현실에 부합하는 지역의 선도적 수범사례를 상향식으로 발굴하여 국가시책화한 사업으로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며 사업운영비를 제외하면 전액 자치단체경상보조금(330-01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3131-301

2) 2018년은 지자체선도사업 중심으로 1.4만명, 2019~2021년은 연 2만명 목표

3) 동 사업에서는 만 39세 이하를 청년의 기준연령으로 설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청년일자리 기본유형으로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정착지원형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인건비(연 2,4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유형이고,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은 지역의 청년 예비창업자 등에게 임대료 등 간접비(연 1,5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유형이며, 민간취업연계형은 지방공공기관·사회적경제조직·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인건비(전일제 기준 연 2,250만원) 등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지역정착지원형 사업에 3,750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50억 4,200만원을,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사업에 창업공간 50개소 조성 및 2,500명 취·창업을 위해 415억 1,200만원을, 민간취업연계형 사업에 4,000명 취업(풀타임 1,500명, 파트타임 2,500명)을 지원하기 위해 13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 효과성,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보조율 상향(10~20%p) 등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지역추가보조 비용 23억 6,300만원을 별도 편성하였다.

[청년일자리 기본유형별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
1 사업 내용			
지원 내용	인건비, 직무교육비 등 지원 3년차 추가 재정지원: 취업시 인건비, 창업시 창업자금 등	유휴시설 공간조성비, 임대료 등 간접비 및 교육·컨설팅 비용 창업(공간조성)의 경우 2018년 한정 지원	다양한 근무방식별 인건비 및 직무교육비, 자격증 취득 등 구직활동 지원 파트타임 근무형태 적극 활용
지원 금액 (1년 기준)	인건비 2,400만원 기타 지원비 300만원 (국비보조율: 전국 50%, 서울 30%) 3년차 추가지원 1,000만원 (국비보조율: 15%)	임대료 등 간접지원 1,500만원 기타 지원비 150만원 유휴시설 공간조성비 1개소 당 9억원 (국비보조율: 전국 50%, 서울 30%)	인건비 국비지원 기준 전일제 900만원, 시간제 450만원 한도[4], 기타 지원비 200만원 (국비보조율: 전국 40%)
2 지원대상 및 소요예산			
2018년 사업목표	목표: 3,750명	상권 50개소 / 취·창업 등 2,500명	4,000명 (전일제 1,500명 / 시간제 2,500명)
	총 10,250명(+상권조성 50개소)		
2018년 소요예산 (국비)	250억 4,200만원	415억 1,200만원	139억 7,500만원
	830억 7,200만원 (지역추가보조 23억 6,300만원, 사업 운영비 1억 8,000만원 포함)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4) 국비지원금의 한도 기준으로 지역별 생활임금수준, 직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차등 결정

첫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준비 지연 등에 따라 실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다.

당초 2018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행정안전부는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제출(4월 16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가수요를 제출받아 4월 중 지방자치단체 사업 계획의 유형적합성, 국비지원 중복여부, 실행가능성 등을 검증하고 수정·보완하는 사전 컨설팅과 담당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5월 21일)되는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모 사업의 타당성 심사를 통해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5~6월에 청년 및 기업의 공모·선발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정하여 6월중 청년근로자의 직무교육 등을 완료하고 7월부터 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인건비 등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에 6개월분이 편성되었다.

하지만 실제 월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7월의 경우 지원 목표 인원의 2%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을 지원하였고, 8월의 경우에도 목표 인원의 40%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을 지원하였으며 11월이 지나서야 목표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을 지원하였다.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인원(누적) 현황]

(단위: 명, %)

구분	목표 인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0,250	128 (1.2)	3,854 (37.6)	7,496 (73.1)	8,903 (86.9)	10,468 (102.1)	10,973 (107.1)
지역정착 지원형	3,750	42 (1.1)	1,871 (49.9)	3,165 (84.4)	4,004 (106.8)	4,549 (121.3)	4,686 (125.0)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	2,500	6 (0.2)	515 (20.6)	841 (33.6)	1,175 (47.0)	1,553 (62.1)	1,831 (73.2)
민간취업 연계형	4,000	80 (2.0)	1,468 (36.7)	3,490 (87.3)	3,724 (93.1)	4,366 (109.2)	4,456 (111.4)

주: ( )는 목표인원 대비 지원인원의 비율(백분율)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실집행률이 41.7%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사업의 경우 연도말인 12월에도 목표인원보다 지원인원도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실집행률도 29.8%로 매우 낮아 2018년 사업 추진 성과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5)]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유형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합계	82,892	0	82,892	34,601	45,196	3,095	41.7
지역정착 지원형	30,429	0	30,429	14,147	14,527	1,755	46.5
창업투자 생태계조성형	37,036	0	37,036	11,026	25,615	395	29.8
민간취업 연계형	15,427	0	15,427	9,428	5,054	945	61.1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18년의 경우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3일)가 있는 연도로 지방자치단체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교체에 따라 동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대응지방비 편성 등의 사업준비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계획되어 있는 일정으로 사업 계획 수립 시 이와 같은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동 사업을 123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신규로 약 3,150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므로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증액분이 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동 사업을 통해 보조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지역추가보조비는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시한 보조율의 범위를 위반하여 교부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측면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 중 동사업의 효과성이 높고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인구감소 지역 및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등에 추가 보조를 목적으로 지역추가비용을 23억 6,300만원 편성하였다.

---

5) 동 사업의 경우 6개월분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어 목표인원 대비 지원인원이 적었던 7월 ~ 10월의 인건비가 불용 또는 이월되어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추가비용의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행정안전부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대한 지원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중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에 국비보조율을 지역정착지원형 및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의 경우 50%에서 80%로 30%p, 민간취업연계형의 경우 40%에서 75%로 35%p 상향하여 총 12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비보조율 상향 지급 현황]

(단위: 천원, %)

지원 지자체	유형	당초 지원 예정 금액 (A)	상향 지원 금액 (B)	추가 지원액 (C=B-A)	보조율 상향 현황
거제시	지역정착지원형	202,500	324,000	121,500	50→80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118,100	188,960	70,860	50→80
고성군 (경상남도)	지역정착지원형	202,500	324,000	121,500	50→80
통영시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78,750	126,000	47,250	50→80
	민간취업연계형	241,000	451,875	210,875	40→75
창원시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262,500	420,000	157,500	50→80
울산광역시 동구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70,800	113,280	42,480	50→80
	민간취업연계형	4,500	8,437	3,937	40→75
	민간취업연계형	49,000	91,875	42,875	40→75
목포시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157,500	252,000	94,500	50→80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150,000	240,000	90,000	50→80
	민간취업연계형	175,600	329,250	153,650	40→75
영암군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78,750	126,000	47,250	50→80
해남군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60,000	96,000	36,000	50→80
합계		1,851,500	3,091,677	1,240,177	-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인구감소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율, 노령인구비율, 생산가능인구비율 등을 고려하여 11개[6] 선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정액으로 총 10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다.

6) 전라남도 고흥군, 보성군, 함평군, 곡성군 / 경상북도 의성군, 군위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 경상남도 합천군, 남해군

한편,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7]에 따라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동 별표에 사업의 기준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별표의 122호[8]에 따라 예산으로 기준보조율을 정하여야 한다.[9]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당초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시에는 추가보조율을 10~20%p로 하는 것으로 국회 심의를 받아 예산을 확정하였는 바 고용위기지역 등에 30~35%p의 추가보조율을 지급하는 것과 인구감소 지역에 정액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측면이 있으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예산안의 경우에도 국회 심의 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10~20%p로 상향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적시하였는 바 해당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여 지자체보조금을 교부할 필요성이 있다.

---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9)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세부지침」에 기준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세부과제 취소 및 변경으로 인한 집행부진

가. 현 황

전자정부지원 사업[1]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다수부처 간 연계 및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869억 4,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자정부지원	86,947	86,947	0	0	86,947	86,947	0	0

자료: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지원 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인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조[2]에 따라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사업, 첨단기술을 시범도입하거나 적용을 확산하는 사업,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사업의 추진 절차에 따라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031-500

2)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전자정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화사업 중에서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다수 부처가 활용하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사업
나. 첨단기술을 시범도입하거나 적용을 확산하는 사업
다.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정보화에 대한 투자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라. 범정부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수 시스템에 일시 지원을 하는 사업
마.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바. 정보보호에 관한 사업
사. 가목부터 바목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사회 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다만,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총 예산은 지원사업 예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6개 분야, 28개 과제(2개 과제는 집행잔액 추진사업)를 지원하였다. ① 범정부 공통인프라 구축 분야는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 허브 구축 등 4개 사업에 65억 9,300만원, ② 정보보호 분야는 인공지능기반 차세대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 등 2개 사업에 82억 200만원, ③ 첨단기술 시범도입 분야는 정부지식 공유활용기반 고도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123억 5,600만원, ④ 다수시스템 융복합 분야는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5차) 등 7개 사업에 374억 3,200만원, ⑤ 범정부적 정책적용 분야는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등 2개 사업에 56억 8,200만원, ⑥ 국정사업 및 사회현안 분야는 국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등 7개 사업에 87억 5,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추진사업으로 전자정부 웹사이트 보안성 강화 등 2개 사업에 40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다.

나. 분석의견

일부 전자정부지원 사업이 사업변경 또는 사업취소로 인하여 집행률이 낮거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 바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 사업 선정 및 편성 시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과제별 예산 세부내역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부진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전자정부지원 사업 중 국가 수문기상[3] 재난안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5차) 사업은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집행률이 55.5%로 낮았고, 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 구축 ISP 사업의 경우 관련 법·제도의 도입 미비로 인하여 사업을 취소하였다.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 구축 사업은 5차(5년)에 걸쳐 추진된 다년도 사업으로 수문기상 관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상청, 국토지리원 등 각 기관별 재난안전 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8년은 동 사업이 완료되는 해로서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전국 기반 수문기상 예측정보 시스템 기능개선, 전국 기반 풍수해 피해예측 시스템 기능개선 등이 수행될 예정이었다.

3) 지표에서 일어나는 물순환(수문학)과 대기 중에 일어나는 물순환(기상학)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및 관찰과 예측의 방법론

그런데 일부 활용성이 낮은 기능을 구축제외하고, 일부 모니터링 기능의 경우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에 개발될 필요가 있어 향후에 개발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기능 삭제 및 조정에 따라 사업내용이 축소 변경되어 집행률이 낮았다.

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 구축 ISP[4] 사업은 고향사랑 기부금[5] 제도 도입 시 이를 운용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발의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6]」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 구축 ISP 사업 역시 취소사업으로 지정되어 2018년에 추진되지 못했다.

---

4)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식별하고, 업무 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 영역을 기술하며,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그 구현을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 접근방법

5)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의안번호: 2009626,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6) 의안번호: 2009626,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2018년 전자정부지원 사업 중 변경 또는 취소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5차)	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 구축 ISP
구분	변경사업	취소사업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예산액	2,160	500
집행액	1,199	0
사업 내용	수문기상 관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상청, 국토지리원 등 각 기관별 재난 안전 정보를 공동활용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도입 시 이를 운용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실시
변경 또는 취소 사유	- 구축효과가 미흡한 개발기능 삭감 - 스토리지 도입비용 삭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전제가 되는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취소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 수문기상 재난안전 공동활용 구축 사업은 5차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입하는 기능의 활용성 평가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2018년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이 면밀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시스템 구축 ISP 사업은 사업 추진의 선제조건인 근거법률의 국회 확정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사업 추진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 선정 및 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 심의 및 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불용 또는 사업의 취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3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의 성과제고 필요

가. 현 황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1] 사업은 농·산·어촌 정보이용환경 조성 및 주민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IT를 통한 상거래 지원 및 지역주민 역량 제고로 주민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직·간접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 19억 4,600만원 중 99.7%에 해당하는 19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1,946	1,946	0	0	1,946	1,940	0	6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1,442	1,442	0	0	1,442	1,437	0	5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504	504	0	0	504	503	0	1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의 주요 성과라고 볼 수 있는 인빌[2]쇼핑 및 인빌체험의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최근 감소하고 있어 매출감소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처방 및 장기적인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037-507

2) 인빌(InVil)은 Information Village의 약어로 정보화마을 관련 쇼핑몰의 브랜드명이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정보화마을을 조성하였고, 2008년 이후에는 정보화 마을의 내실화를 위한 우수마을 발굴·육성 및 관리강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320개의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온라인 상거래 시스템을 통해 해당 마을의 특산물의 판매와 관련된 인빌쇼핑, 마을 관련 체험 등 관광과 관련된 인빌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화 마을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우수정보화마을 및 지도자 포상 등 사업관리 및 홍보 사업을 직접수행하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는 지자체경상보조금(330-01목)으로 편성하여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

[정보화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세부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부내역	예산액	집행액	비고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정보화마을 운영위탁	1,195	1,195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리용역 계약
	정보화마을 중앙시스템 유지보수	221	221	
	우수 정보화마을 및 지도자 포상, 홍보비 등	26	21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504	503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국비 보조율 2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정보화마을의 주요 성과라고 볼 수 있는 인빌쇼핑 및 인빌체험의 전체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15년까지는 매출액이 증가추세로 약 387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나, 2016년부터 꾸준히 매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감소폭이 커 50억원 이상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이는 통계청에 따른 2018년 온라인 쇼핑 매출액[3]이 전년 대비 20.8%[4] 증가하였고, 농축수산물 부분의 증가율이 21.6%,[5] 여행 및 교통서비스 분야의 증가율이 10.8%[6]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3년간 인빌쇼핑 및 인빌체험의 매출액 기준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고 보인다.

[연도별 인빌쇼핑 및 인빌체험 매출액 및 방문자 수]

(단위: 백만원, 방문자 수)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자상거래 매출	인빌쇼핑	27,401	29,700	29,807	29,344	24,824
	인빌체험	8,376	9,097	7,882	6,643	5,697
	합계	35,777	38,797	37,690	35,987	30,522
홈페이지 방문자 수	인빌쇼핑	1,006,845	357,286	647,856	701,697	688,623
	인빌체험	223,211	348,399	257,323	211,619	175,861
	합계	1,042,622	396,083	685,546	737,684	719,145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전년 대비 정보화 마을 수 감소(334→324개)[7], 쇼핑몰 노후화로 인한 사용자 불편, 정보화 마을 주민 고령화, 정보화마을 관련 예산 감액[8]으로 인한 홍보 담당자 인력 축소(2명→1명) 등으로 인해 인빌쇼핑 및 인빌체험의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보화 마을 수 감소는 비율로 보면 약 3%로 정보화 마을 수 감소가 상거래 매출액 감소(15.2%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쇼핑몰의 편의개선은 행정안전부가 동 사업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정보화 마을 주민

3) 각 월별 및 연간 온라인 쇼핑 동향

4) 2017년 94.2조 → 2018년 113.7조

5) 2017년 2.4조 → 2018년 2.9조

6) 2017년 14.6조 → 2018년 16.2조

7) 최근 5년 간 정보화 마을 수: 2014년: 358개 → 2015년: 358개 → 2016년: 348개 → 2017년: 334개 → 2018년: 324개

8) 최근 5년 간 동 사업의 예산액 추이: 2014년: 47억 9,700만원 → 2015년: 41억 6,000만원 → 2016년: 32억 3,600만원 → 2017년: 23억 8,400만원 → 2018년: 19억 4,600만원

고령화는 구조적 요인이긴 하나 2018년에 마을주민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인빌쇼핑 및 체험의 매출액 감소 요인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에 따른 매출액 증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민간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인빌쇼핑 및 체험의 장기적인 운영 방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4 사회혁신추진단 사업의 민관협의회 개최 실적 저조 등

가. 현 황

사회혁신추진단[1] 사업은 사회혁신추진단 운영,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등을 위한 기관운영 경비 성격의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 7억 3,900만원 중 74.5%에 해당하는 5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고, 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사회혁신추진단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회혁신추진단	739	739	0	0	739	551	99	90

자료: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은 국무총리 훈령인 「사회혁신 추진단 및 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적근거로 하여 2017년 9월 7일 발족한 기구이다. 시민 주도로 추진하는 사회혁신 확산 및 관련 정책·사업 등 추진이 주요 역할이며, 1단 5팀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에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사업[2] 진행, 민·관·공 협업을 통한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등이 사회혁신추진단의 주요 사업이었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933-309

2) 코드: 일반회계 1938-300

〈 사회혁신추진단 개요 〉

○ (근거) 「사회혁신 추진단 및 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
○ (역할) 시민 주도로 추진하는 사회혁신 확산 및 관련 정책·사업 등 추진
○ (구성) 1단 5팀 / 26명
- 기구 : 5팀(기반조성·시민소통·정책협업·디지털사회혁신·시민해결팀)
- 정원 : 26명(중앙부처 14, 지자체 5, 전문임기제 7)
○ 주요기능
- 사회혁신의 확산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추진 계획의 수립
- 사회혁신 관련 정책사업의 발굴·기획·지원
- 사회혁신 관련 법령 제정·개정 지원
-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사회혁신 가치 확산 교육 및 컨설팅
- 사회혁신 민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2018년 주요 진행 사업
-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진행, 민·관·공 협업을 통한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지역 내 민·관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사회혁신추진단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사회혁신추진단 사업에 핵심적인 사항인 민관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실적이 당초 예산편성 기준보다 저조하였으므로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집행실적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혁신추진단 사업은 행정비품·전산소모품 등 구입비, 공공요금 및 제세, 특근매식비 등 운영경비를 제외하면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이 동 사업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행정안전부는 2018년에 민관협의회를 12회, 분과위원회는 총 120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18년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관련 예산편성 내역]

내역사업 명	예산
사회혁신추진단 운영	-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운영 : 76백만원(6.3백만원×12회) - 사회혁신 분과위원회 운영 : 216백만원(1.8백만원×24회×5분과)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2018년 민관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민관협의회는 6회 분과위원회는 5회 개최되어 계획대비 개최실적이 저조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액 2억 9,200만원 대비 5.4%에 해당하는 1,569만원이 집행되었다.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일자	집행액	집행세부내역
민관협의회	1.31.	3,425	· 참석수당 1,800천원(150천원×12명) · 다과 및 인쇄비 등 1,625천원
	3.9.	1,116	· 참석수당 1,050천원(150천원×7명) · 다과 66천원
	4.26.	1,734	· 참석수당 900천원(150천원×6명) · 인쇄비 791천원 / 다과 43천원
	8.1.	2,939	· 참석수당 1,500천원(150천원×10명) · 인쇄비 1,386천원 · 다과 53천원
	10.18.	2,412	· 참석수당 1,500천원(150천원×10명) · 인쇄비 912천원
	12.26	939	· 참석수당 900천원(150천원×6명) · 다과 39천원
소계		12,565	
분과위원회(기반조성분과)	1.22.	387	· 참석수당 300천원(150천원×2명) · 교통비 87천원
분과위원회(시민소통분과)	1.22.	639	· 참석수당 300천원(100천원×3명) · 안건검토비 300천원(100천원×3명) · 다과 39천원
분과위원회(디지털분과)	1.25.	750	· 참석수당 750천원(150천원×5명)
분과위원회(재정분과)	1.29.	750	· 참석수당 750천원(150천원×5명)
분과위원회(시민소통분과)	8.7.	600	· 참석수당 600천원(150천원×4명)
소계		3,162	
합계		15,691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당초 2018년의 경우 민관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통해 사회혁신 추진단이 추진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등의 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조정 등을 수행할 계획이었지만, 사업 수행과정에서 회의 형태의 의견 청취 및 조정보다는 사업에 대한 자문, 현장 실사 등의 수요가 높아 민관협의회와 분과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였다는 설명이다.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요에 따른 사업내용의 일부 조정은 나타날 수 있지만 동 사업의 경우 민관협의회와 분과위원회 운영이 사업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라는 점에서 당초 예산 편성이 면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년의 경우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하여 편성하였지만 분과위원회 운영의 경우 40회 개최하는 것으로 편성하여, 2018년 5회만 개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

[2019년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관련 예산편성 내역]

내역사업 명	예산
사회혁신추진단 운영	-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운영 : 2018예산 76백 → 2019예산 20백(△ 56백, △ 74%) [산출근거] 5,000천원 × 4회 = 20,000천원 - 사회혁신 분과위원회 운영 : 2018예산 216백 → 2019예산 72백(△ 144백, △ 200%) [산출근거] 1,800천원×8회×5분과 = 72,000천원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에 민관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개최 추이를 면밀하게 고려한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집행 실적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사회혁신추진단은 당초 편성되지 않았던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을 2018년 예산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2019년에 개최하였는 바 향후에 면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행사 추진 및 단기 행사를 위한 예산 이월을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혁신추진단은 당초 예산편성 내역에는 없었지만 사회혁신과 관련해 지자체 사업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 필요성에 따라 일반수용비(210-01목) 9,870만원을 일반용역비(210-14목)로 조정하여 행사 전문업체와 9,860만원에 계약하였지만 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이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2019년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사회혁신추진단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추진 관련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조정	사회혁신추진단 (1933-309)	210-01 (일반 수용비)	98.7	사회혁신추진단 (1933-309)	210-14 (일반 용역비)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 추진을 위한 일반용역비 확보 필요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혁신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은 2박 3일(1. 16.~ 1. 18) 일정으로 전라남도 목포에서 개최되었다. 해당 행사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역혁신정책관 부서원 34명, 지자체 담당자 146명, 민간전문가 39명이 참석하였고,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지역혁신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및 사례공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지역혁신 사업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

○ 행사명 : “우리 지역에 반가운 변화” 지역혁신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 일 시 : 2019. 1. 16.(수) ~ 1. 18.(금), 2박3일
○ 장 소 : 전라남도 목포 (호텔현대 목포)
○ 참 석 : 총 219명* (1일 참가자 포함)
* 지역혁신정책관 부서원 34명, 지자체 담당자 146명, 민간 전문가 등 39명
○ 집행액 : 총 9,860만원(일반용역비)
○ 행사 내용 : 2018년 사업 사례공유, 2019년 사업설명, 주민참여에 대한 전문가 강연, 목포 ‘괜찮아 마을’ 등 사업현장 방문 등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행정안전부는 당초 2018년 연내에 동 워크숍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달청을 통한 사업자 선정 및 계약(지출원인행위)을 완료하였으나 사회혁신추진단이 2019년에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정규조직이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예산을 2019년으로 이월하여 2019년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는 설명이다.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관련 민간전문가가 참가하는 워크숍 개최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워크숍의 개최 취지는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해당 워크숍의 경우 2018년 예산안에는 없던 내역사업이라는 점, 건설공사 및 연구용역과 같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닌 일회성 행사인 워크숍 개최를 위하여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절한 집행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면밀한 예산편성을 통하여 예산 내역에 없는 워크숍 등 행사예산 집행 및 단기 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 이월을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5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 예비비를 통해 시급성이 적은 신규 내역사업 추진

가. 현 황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은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대응,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기반 구축 및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활성화[1]의 내역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 25억 5,200만원 중 99.8%에 해당하는 25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지역발전활성화	1,060	1,060	0	1,883	0	2,943	2,893	0	50
자전거인프라 구축	669	669	0	1,883	0	2,552	2,546	0	6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인프라 구축 내역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을 예비비를 배정받아 수행하였는데 동 사업의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여 추진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의 2018년 예산액 6억 6,900만원의 당초 편성 내역을 보면 자전거안전문화 정착 및 이용활성화(3억 6,900만원) 및 'Tour de DMZ 2018' 국제자전거 대회 개최(3억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는 일반예비비 18억 8,300만원을 배정 받아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이라는 신규 내역 사업을 추진하였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231-303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은 2018년 단년도 사업으로 14개 시·도, 48개 시 · 군 · 구, 193개소의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772명을 투입하여 자전거 교통사고다발지역 조사·안전 지킴 활동 등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정비(노면표지, 간이정비 등)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일반예비비 18억 8,300만원이며 국비보조율은 100%이고, 인건비 명목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330-01목) 11억 1,100만원, 긴급정비를 위한 시설비용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금(330-03목) 7억 7,200만원이 사업대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되었다.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개요]

- ❍ (사업대상) 14개 시도, 48개 시군구 772명(사고위험지역 193개소×4명 투입)
- ❍ (총사업비) 일반예비비 1,883백만원* / 시·군·구 직접집행
  * 국비 100%지원 : 경상보조(인건비) 11.1억, 자본보조 (시설비) 7.7억
- ❍ (사업기간) ’18년 11월~12월 ※ 기간 중 20일 근로
- ❍ (사업내용) 자전거 교통사고다발지역 조사·안전 지킴 활동 및 긴급정비 (노면표지, 간이정비) 등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예비비로 추진한 사유에 범정부과제인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내용 중 하나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피해 반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자전거 사고 피해자 비중이 2008년 5.3%(313명)에서 2017년 6.3%(265명)로 증가하여 자전거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사고 다발지역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정부 맞춤형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시급히 예비비로 추진하였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이 9년 간 1%p 증가하였다는 것이 급격한 증가로 보기 어렵고 2017년 자전거 사고 피해자는 2008년 대비 감소하였다는 점, 2018년에 자전거 관련 사망자의 증가가 나타날 특수한 상황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이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예비비 요구 고려사항인 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요건[2]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139.

또한,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인건비 명목인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에도 1억 6,300만원(14.7%)이 이월되었고, 상대적으로 집행기간이 필요한 긴급정비를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의 경우에는 3억 1,500만원(40.8%)이 이월되었으며, 그 사유가 조사사업 및 긴급정비 사업의 경우 동절기에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고 사업완료 예정일이 2019년 6월 30일인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사업이 예비비로 긴급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더욱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목	세목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330	01	1,111	0	1,111	948	163	0	85.3
	03	772	0	772	457	315	0	59.2
합계		1,883	0	1,883	1,405	478	0	74.6

자료: 행정안전부

[2018회계연도 이월액 기준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의 이월현황]

(단위: 천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사업 종료일
충주시	97,565	427	97,138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통행량조사 인건비와 위험요소 개선사업비로 동절기 이후 사업추진	2019.6.30
청주시	234,155	113,499	96,000		
부천시	97,565	56,666	40,000		
중랑구	68,295	40,295	28,000		
오산시	29,269	4,990	24,279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예비비의 경우 국회의 세부내역 심사를 받지 않는 경비임을 고려하여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고려할 수 없던 요인으로 인하여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예비비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예비비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6 보조사업 이월이 확정적인 시점에 예비비를 통한 희망근로 지원 사업 확대 추진 부적정 등

가. 현 황

희망근로 지원[1] 사업은 고용위기지역[2]·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3]인 9개 지방자치단체[4]에 대하여 실직자 및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기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국회증액을 통해 121억 4,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추진된 단년도 사업이고, 사후에 목적예비비 245억 6,1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2018년 예산현액은 367억 1,000만원이고 행정안전부는 예산현액 전액을 집행하였다. 동 사업은 지자체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전액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330-01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고보조율은 추경사업의 경우에는 80%, 목적예비비로 추진한 사업의 경우에는 90%이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3131-302

2) 고용위기지역은「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 / 전라북도 군산시 /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8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정기간은 당초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였으나 2020년 4월(목포시와 영암군은 당초 2019년 5월에서 2020년 5월)까지로 1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3)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할 수 있으며 현재 울산광역시 동구 / 전라북도 군산시 /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9개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정기간은 당초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였으나 2021년 5월(군산시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로 2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4) 울산광역시 동구 / 전라북도 군산시 /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이며 이 중 다른 지역은 고용위기지역이고 해남군은 산업위기지역

[2018회계연도 희망근로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희망근로 지원	0	12,149	0	0	24,561	36,710	36,710	0	0

자료: 행정안전부

2018년 희망근로지원 사업의 참가 대상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5] 중 실업자 및 실업자의 배우자가 우선 대상자이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6]이 차순위 대상자이다. 제공되는 일자리의 임금기준은 1일(8시간 기준) 60,240원(시간당 7,530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기준[7]이며, 1일 8시간 이내이면서 주 4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018년 희망근로지원 사업의 참가 대상은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주민[8] 중 실업자[9] 및 실업자의 배우자가 우선 대상자,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10]이 차순위 대상자이다.

제공되는 일자리의 임금기준은 1일(8시간 기준) 66,800원(시간당 8,35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기준[11]이며, 1일 8시간 이내이면서 주 4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지원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

5) 해당 지역의 기업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 포함

6)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

7) 간식비 등 별도 지급 1일 5,000원 이내 가능

8) 해당 지역의 기업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 포함

9) 2015년 1월 1일부터 사업공고일 이전에 실직(폐업 포함)한 사람

10)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

11) 1일 5,000원 이내 간식비 등 별도 지급 가능

첫째,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의 이월이 확정적인 시점에 목적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집행방식이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

동 사업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으로 제1차 사업을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추진하여 2,781명의 실직자 및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해예방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 공공근로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도 사업대상 지역의 고용여건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목적예비비 245억 1,600만원을 편성 받아 2차 사업을 시행하여 10,770명의 실직자 및 취업취약계층의 공공근로를 지원하였다.

〈 희망근로 지원사업 추진현황 〉

○ (대상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9개 지방자치단체)
※ 1차때는 해남을 제외한 8곳
- 울산(동구), 전북(군산), 전남(목포, 영암, 해남*),
경남(창원 진해, 통영, 거제, 고성)
* 2차때 추가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 (사업액/보조율) (추경-제1차) 121억 4,900만원 / 국고보조율 80%
(예비비-제2차) 245억 1,600만원 / 국고보조율 90%
○ (기간/규모) (1차) ’18. 7 ~ 12월(6개월)/ 목표: 1910명, 실적: 2,781명
(2차) ’18. 12 ~ ’19. 1월(2개월) / 목표: 10,379명, 실적: 10,770명
○ (사업내용) 재해예방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 등 공공일자리 창출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해당 보조사업의 시행 시점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로 보조사업의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예산액의 45.7%에 해당하는 112억 3,2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였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의 예비비 사업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이월액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율(%)
계	24,561	11,232	45.7%
울산광역시 (동구)	1,464	927	63.3%
전라북도 (군산시)	3,156	1,890	59.8%
전라남도 (목포시, 영양군, 해남군)	9,177	4,618	50.3%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10,764	3,797	35.2%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행정안전부는 당초 11월에서 12월 2개월 간 예비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예비비 배정 절차가 지연되어 10월 31일에 예비비가 배정됨에 따라 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공고를 통한 지원자 모집 등 사업 준비 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에서 2개월 간 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12]에서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13]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14]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에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보조사업비를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보조사업비를 교부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1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하 생략)

13) 다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비 이월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15p.

둘째, 예비비 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비해 기준보조율을 10%p 상향하여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15]에 따라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의 경우 동 별표에 사업의 기준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별표의 122호[16]에 따라 예산으로 기준보조율을 정하여야 한다.[17]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의 기준보조율은 80%인데 반하여 예비비를 통한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90%로 기준보조율을 10%p 상향하여 집행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보조대상인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수여건 악화 등으로 지방비 대응을 위한 재정적 여력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비 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을 상향하였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의 설명대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를 고려한 것은 상황에 맞는 예산집행일 수는 있으나 기준보조율의 상향조정은 기준보조율을 예산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18]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방식으로 보인다.

---

1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17)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세부지침」에 기준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1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

행정안전부는 향후에 예비비를 통해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경우라도 당초 해당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7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1]은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해 도심지 내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을 홍수로부터 예방하는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예산현액 695억 4,600만원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다.

[2018회계연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우수저류시설 설치	69,546	69,546	0	0	69,546	69,546	0	0

자료: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은 첨두홍수량[2]을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시설로서 2018년에는 우수저류시설 22개소(계속 7, 마무리 9, 신규 6) 설치를 위해 동 예산이 편성되었다. 사업이 추진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완공된 우수저류시설은 총 91개소이며, 국비는 총 5,441억원이 투입되었고, 보조금 지원비율은 50%이다.

나. 분석의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18년 전년대비 실집행률이 일부 개선되었지만, 2개 지구의 경우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나타났으므로 보조사업 감독자인 행정안전부는 사업 개소 선정 시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진행여부에 대한 면밀한 확인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732-301

2) 첨두홍수량은(Peak Flood) 홍수기간에 발생하는 우수량의 최대치를 말한다.

최근 연도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실집행률 추이를 보면 2014~15년 90% 수준에서 2016년 75.7%, 2017년 62.5%로 하락하였다. 2018년의 경우 75.7%로 전년 대비 실집행률이 개선되었다.

[연도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국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14	65,500	65,500	65,500	65,500	6,269	71,769	64,643	7,009	117	**90.1**
2015	88,130	88,130	88,130	88,130	7,009	95,139	85,398	9,346	395	**89.8**
2016	71,839	71,839	71,839	71,839	9,346	81,185	61,491	14,101	5,593	**75.7**
2017	71,046	71,046	71,046	71,046	14,101	85,147	53,255	30,127	1,765	**62.5**
2018	69,546	69,546	69,546	69,546	30,127	99,673	75,421	17,384	6,868	**75.7**

자료: 행정안전부

하지만, 개소별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에 설치 예정이었던 사당 지구와 망원 지구의 경우 주민들의 민원 및 서울특별시의 별도 사업 추진을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을 취소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취소절차를 이행중이어서 2018년에는 실집행액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취소절차 이행 중인 개소 현황]

(단위: 백만원)

개소명	총사업비 (국비)	사업기간	국비 누적 교부액	2018년 예산액	2018년 실집행액	사업취소사유
사당	17,520 (8,560)	2017년~ 2020년	4,823.5	500	0	지역주민반대
망원	35,320 (17,660)	2017년~ 2020년	500	0[1)]	0	서울특별시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하수관로 개선 등 별도 자체사업 추진

주: 1) 망원 지구의 경우 취소절차가 예산편성 이전에 이행중이어서 2018년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았다.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취소된 두 지구 중 사당 지구의 경우 개소 선정시 우수저류시설 설치 예정지역 주민과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소 설치에 대한 사전 합의 여부, 망원 지구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우수저류시설 설치의 효율성 및 다른 수해피해 방지 방안의 검토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였다면 취소지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보조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을 선정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충분한 의사소통 및 사전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조사업 대상 개소를 선정하고,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예산편성 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추진 경과를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지연 및 사업취소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8 풍수해보험의 적정 가입률 확보 필요

가. 현 황

풍수해보험[1] 사업은 풍수해·지진재해 시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의 회복을 지원하는 국가 피해지원제도 중 하나인 풍수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2]으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 173억 5,700만원 중 71.5%에 해당하는 124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49억 4,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풍수해보험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풍수해보험	17,357	17,357	0	0	17,357	12,416	0	4,940
풍수해보험 보험료지원	16,898	16,898	0	0	16,898	11,958	0	4,940
풍수해보험 등 운영	459	459	0	0	454.5	454.4	0	0.1

자료: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대한 국가 피해지원제도가 국가재정 운영의 부담 가중, 지원 규모 및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요구 등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보완·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3]된 정책보험 제도이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734-302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풍수해보험 미가입시 주택의 피해수준에 따라 보상(2019년 기준 전파의 경우 1,300만원, 반파의 경우 650만원)받을 수 있으나 피해 주민 입장에서 충분한 보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3) 2005년 10월 18일 국회에서 의결된 「풍수해보험법안(의안번호 172963, 대표발의: 정부)」의 제안이유

풍수해보험은 목적물을 기준으로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의 상가·공장[4]으로 구분되고, 개별적으로 보험사에 가입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단체가입[5]이 가능하며, 손해 보상은 정액보상 또는 실손보상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가입이간은 기본 1년으로 하며 최장 3년까지 가입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상품의 종류]

구 분	가입대상	가입방법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주택·온실	개 별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Ⅱ)	주 택	단 체(지자체)
실손보상 주택 풍수해보험(Ⅲ)	주택(공동·단독)	개별·단체
실손보상 온실 풍수해보험(Ⅴ)	온 실	개 별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Ⅵ)	상가·공장	개 별

자료: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에서 운용하고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통해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를 계층에 따라 25%~67.13%까지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가용한 예산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전체 보험료 기준으로 34%~92%[6]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7]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

4) 2018년 5월부터 22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5) 지방자치단체가 대표 계약자가 되고 해당 단체가입 조건에 따라 지역 주민이 가입을 선택하는 방식

6) 계층별 지원율 : 일반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 소상공인 34~92%(신설)

7) 주택보험(80㎡, 보험가액 90%의 주택 온실 풍수해보험(Ⅰ) 기준)의 경우 총보험료는 약 37,900원이고 주민부담액은 18,050원(47.5% 수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이며 기준 보험가액은 8,000만원(단위 면적(80) × 100만원)으로 완파의 경우 최대 보험금은 7,200만원(8,000만원 × 90%)으로 산정된다.

첫째, 풍수해보험의 경우 최근 5년 간 2014년 및 2017년을 제외하면 풍수해보험은 목표 가입률 대비 실제 가입률이 낮은 경우가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향후에는 홍보 강화,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목표 가입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자 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풍수해보험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가입실적 대비 가입률을 보면 2015년 및 2016년에는 온실보험이 목표가입률 대비 가입실적이 낮았고, 2018년에는 주택부문이 목표가입률 대비 가입실적이 낮았으며 전년 대비 4%p 이상 하락하여 2017년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던 주택부문 가입률이 2018년에는 2016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풍수해보험 목표가입률 대비 실제 가입률 현황]

(단위: %)

연도	구분	목표 가입률	실제 가입률	목표 달성률
2014	주택	16.7	17.3	103.6
	온실	4.4	4.6	103.6
2015	주택	18.0	19.6	108.9
	온실	4.8	3.7	76.6
2016	주택	20.0	21.4	107.0
	온실	7.0	4.2	60.0
2017	주택	22.0	24.9	113.2
	온실	5.0	7.2	144.0
2018	주택	24.0	20.2	84.2
	온실	5.5	7.6	138.2

주: 주택은 주택 수 기준, 온실은 온실면적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연도별 실집행 결산내역을 보면 매년 그 실집행률의 격차가 크고 2015년과 2016년은 실집행률이 60%를 하회하였고, 2018년은 70%대의 실집행률을 나타내어 실집행이 부진하였다.

[연도별 풍수해보험 사업의 실집행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예산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본예산	추경(A)	교부액	예산현액	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율 (B/A)
2014	13,981	13,981	13,981	13,981	13,981	0	0	100.0
2015	19,245	19,245	11,494	11,494	11,494	0	0	59.7
2016	21,130	21,130	12,468	12,468	12,468	0	0	59.0
2017	19,027	19,027	18,494	18,494	18,494	0	0	97.2
2018	16,898	16,898	11,958	11,958	11,958	0	0	70.7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과 같은 대형재해가 2018년에는 없었다는 점, 풍수해 및 지진재해 시 정부의 무상 복구지원(재난지원금)으로 보험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는 점, 전년대비 국비지원율은 변동이 없으나 최근 자연재해 피해가 적어 각 보험사가 보험료를 일부 인하[8]하였다는 점 등을 사유로 집행부진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의 설명대로 대형재해가 없어 2018년 보험가입률이 적었을 수 있으나, 풍수해보험이 기존 재해에 대한 피해보상제도를 보완·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재해에 대한 예비적인 성격의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형재해 여부에 따라 사후에 매년 보험가입률이 변동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1년 단위가 아닌 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풍수해보험, 보상범위 확대 등 다양한 상품 개발 등을 통해 당초 예산편성 시 제시한 계획을 충족하는 적정한 보험가입률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풍수해보험 중 주택보험의 경우 일반가입자의 가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어 일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 등 가입율 확대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8) 주택-정액형: △13.6%, 주택-실손형: △25.0%, 온실-정액형: △1.5%

풍수해보험 중 주택보험[9]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보험료의 86.2~92%, 차상위계층은 75~92%까지 보험료를 지원[10]하고 있어 일반가입자가 최소지원율인 52.5%보다 많은 비율로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로 인하여 풍수해보험 중 주택보험의 경우 일반가입자의 비중이 2018년 기준으로 20%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2018년 풍수해보험(주택보험) 계층별 가입자 수]

(단위: 건수, %)

구분	합계	기초수급	차상위	일반
가입 건수	376,966	220,783	86,244	69,939
비율	100	58.6	22.9	18.6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주택보험 가입대상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계층으로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지 않아 각 계층별 가입대상 대비 가입율 통계는 없으나 일반가입자의 가입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보다는 매우 높은 비율[11]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 가입대상자의 가입대상 대비 가입비율은 전체 주택보험 가입률인 20.2%보다 매우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주택보험 가입자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일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일반가입자의 가입 비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9)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에 대한 보험의 경우 계층별로 차등지원하지 않는다.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금액을 합한 비율이다.

11) 2019년 4월 기준 총 인구수: 5183만명, 기초수급자 145만명, 차상위계층: 94만명

9 안전신문고 관련 정보화 예산의 집행 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안전신문고 및 안전신고관리단 운영 사업은 안전신문고 구축·운영으로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 신고 및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사업[1]의 내역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및 안전신고관리단 운영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 7억 6,500만원 중 99.9%에 해당하는 7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안전신문고 및 안전신고관리단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993	993	58	0	1,051	1,044	0	7
안전신문고 및 안전신고관리단 운영	765	765	0	0	765	760	0	5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을 통해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는 안전과 관련된 민원 및 개선사항을 수렴하여 처리하는 대국민 안전관련 민원창구이다. 안전신문고는 앱 또는 포털을 통해 안전과 관련된 민원의 신고·접수 및 답변결과를 조회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안전수칙(동영상) 등 생활안전 정보 및 신고처리 관련 통계분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는 2014년 7억 7,800만원의 구축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을 시작하였고, 2018년에는 정보 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하여 7억 6,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연간 민원접수 건수는 2018년 기준으로 23만 6,002건이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631-301

〈 안전신문고 운영현황 〉

○ (의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 및 개선사항을 수렴하여 처리하는 대국민 안전관련 민원창구
○ (신고창구) 앱/ 포털
○ 주요기능
- 신고·접수 및 답변결과·조회
- 주요 신고처리 사례, 안전수칙(동영상) 등 생활안전 정보 제공
- 신고처리 관련 통계·분석
○ (관련예산) 초기 구축 예산 778백만원(2014년) / 2018년 집행액 760백만원
○ 연간 민원접수 건수
- 2018년 236,002건
- 2017년 226,919건
- 2016년 152,768건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관련 정보화 예산을 두 개의 세부사업에 나누어 편성하고 해당 예산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어 이를 통합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안전신문고 관련 정보시스템의 기능 보강 및 운영 관련 경비는 국가안전 대진단 및 정부합동 점검단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안전신문고 및 안전신고관리단 운영 사업에 편성되어 있고, 안전신문고의 성능개선(분석기능 강화) 예산은 별도의 세부사업인 재난행정정보화 사업[2]의 내역사업인 안전신문고 분석 기능 강화 사업에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두 세부사업에 나누어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을 통합하여 4억 7,000만원에 대한 계약을 발주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계약금액으로 4억 6,600만원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안전신문고 관련 정보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과 기능강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2) 코드: 일반회계 3035-500

[2018년 안전신문고 운영 및 기능개선 관련 정보화 사업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비목	예산액	집행액 (계약액)	계약자	계약 방법
국가안전 대진단 및 정부 합동 점검단 운영	안전신문고 기능 보강 및 운영	일반연구비 (260-01목)	90	466	유라클	경쟁 입찰
		자산취득비 (430-01목)	80			
재난행정 정보화	안전신문고 분석기능 강화	일반연구비 (260-01목)	250			
		자산취득비 (430-01목)	50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민신문고 기능개선 사업은 2017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는 범정부 전자정부 지원 사업인 전자정부지원 사업[3]의 통합 재난안전정보체계 확대 구축 사업의 내역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통합 재난안전정보체계 확대 구축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화 사업의 성격인 국민신문고 기능개선 사업은 재난안전본부의 부내 정보화 사업인 재난행정정보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능보강 및 운영 사업과 기능개선 사업을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통합발주하여 집행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동일한 정보시스템의 정보화 관련 예산을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하여 이를 통합발주하여 집행하는 방식은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기능개선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 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개선 성과 등을 세부사업별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프로그램별로 사업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예산집행의 성과 평가를 용이하게 하려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예산에도 안전신문고 분석기능 강화 예산 1억 1,000만원은 재난행정정보화 사업에 편성하였는 바 향후에는 안전신문고 및 안전신고관리단 운영 사업에 안전신문고 분석기능 강화 예산을 통합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3) 코드: 일반회계 2031-500

1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과다결원 문제의 적극적 해결 필요 등

가. 현 황

인건비(국과수)[1] 사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수사 감정수행 인력 및 지원 인력에 대한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등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 295억 400만원 중 89.6%에 해당하는 264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6,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9억 9,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인건비(국과수)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인건비(국과수)	29,849	29,849	0	△345	29,504	26,445	67	2,992
보수	29,405	29,405	0	△345	29,060	26,214	67	2,779
연가보상비	444	444	0	0	444	231	0	213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인건비 사업과 관련하여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체계 고도화 방안에 따라 2015년부터 법의관 정원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법의관의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정원대비 현원이 낮은 수준인 바 법의관의 연봉 등 처우개선을 통한 채용 증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502-108

동 사업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90% 이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정원대비 예산집행 소요인 현원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8년 연말기준으로 정원 439명에 현원은 392명으로 47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건비 집행률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력(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명)

직종	정원	현원	결원
일반직	37	35	2
기술직	84	60	24
특정직	8	7	1
연구직	272	261	11
임기제	1	1	0
기술(연구)직	27	19	8
별정직	2	2	0
관리운영직	8	7	1
총 계	439	392	47

주: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직렬별 결원 현황을 보면 기술직 결원이 24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는 법의관[2]의 정원대비 결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결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체계 고도화 방안(2015. 5. 22)'에 따라 현장검안(檢案)의 단계적 확대, 부검건수 증가에 따른 인력 보강 등을 사유로 2015년부터 법의관 정원을 증원하고는 있지만 법의관 현원의 충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원대비 현원의 충원율이 2015년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에는 59.3%에 머물고 있어 법의관의 정원의 절반 가량이 결원인 상황이다.

2) 변시체 부검·검안 등 법의학적 감정 및 연구 등 범죄사건 및 의료사고에 수반되는 법의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의사자격증 및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가능한 직위이다.

[연도별 법의관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현원/정원	22/23	23/23	28/28	34/38	31/47	32/54
정원 대비 현원 충원율	95.7	100.0	100.0	89.5	66	59.3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2018년 채용 현황을 보면 3번의 경력채용에도 불구하고 채용인원은 2명에 불과하였고, 2019년의 경우에도 6월 기준으로 채용인원은 2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정원대비 현원의 충원률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및 2019년 법의관 채용 현황]

(단위: 명)

구 분	시 기	채용예정인원 (명)	채용인원 (명)
2018년도 제1회 경력경쟁채용	18.4.20.~7.23.	16	2
2018년도 제2회 경력경쟁채용	18.8.6.~11.28.	14	0
2018년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인사혁신처 실시)	18.4. ~ 12.	5	0
2019년도 제1회 경력경쟁채용	18.12.~19.4.	15	2
2019년도 제2회 경력경쟁채용 (진행중)	19.4.~	10	0 (응시인원 없음)
2019년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인사혁신처 실시)(진행중)	19.4.~	7	(공고중)

자료: 행정안전부

이와 같이 법의관 현원 충원이 지연됨에 따라 법의관 1인당 부검 건수 역시 2016년 227.6건에서 2018년 285.3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법의관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법의관 근무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법의관 1인당 부검 건수]

(단위: 건, 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부검건수		6,172	6,789	7,739	8,365	9,131
촉탁부검[1]건수		1,580	2,146	1,849	2,271	2,194
법의관 수(연말 기준)		23	28	34	31	32
법의관 1인당 부검 건수	부검건수	268.3	242.5	227.6	269.8	285.3
	촉탁부검제외	199.7	165.8	173.2	196.6	216.8

주: 1)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대해 외부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촉탁하여 수행하는 부검방식
자료: 행정안전부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은 기존 법의관의 경우 병리학 전문의가 의사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경력에 종사하여야 지원이 가능하여 지원 가능 인력 규모가 적었고, 의사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의사 연봉과 비교할 때 유사한 임금수준[3]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법의관의 신규 채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에는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현재 요구하고 있는 관련 경력 종사(2년) 조건을 완화하고, 병리학 전문의에서 일반의로 채용을 확대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법의관의 직급 체계 및 보수 체계 개편을 통해 실질적으로 연봉액을 상향하여 지급하는 방식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의관의 경우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고 법의관의 연봉과 의사 직종의 평균 연봉의 차이는 감정체계고도화 방안 및 그에 따른 정원 증원 계획 수립시에도 고려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원 증원 계획과 병행하여 법의관 채용 조건 및 처우 등을 개선하였다면 법의관의 정원 대비 낮은 현원 충원률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범죄로 인한 국민의 사망사고에 대한 사인을 보다 면밀히 추적하여 범인 검거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의관 정원을 확대한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사혁신처와 보다 적극적인 협상을

3)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8)에 따르면 2017년 의사의 평균 연봉 추정액은 약 1억 5,600만원이며,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일반임기제 5호의 연봉 범위는 약 4,500~7,900만원이다. 다만, 동 연봉에는 가족수당, 의료업무수당, 직급보조비 등 수당이 추가 지급될 수 있다.

통하여 신규 법의관 채용 및 기존 법의관의 처우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법의관의 충원률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면밀하지 못한 집행으로 불필요하게 이월하였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69조 및 제77조[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5]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월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납부 방식은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일괄하여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소속 공무원의 12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담당 부서의 착오로 계좌이체를 하지 않아 해당 비용 6,700만원을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납부하였다.

불가피한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이월은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담당 부서의 면밀하지 못한 집행관리로 인한 이월은 지양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이월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집행관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

4)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후단 생략)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후단 생략)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11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 신축 사업의 조달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지연

가. 현 황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 신축[1] 사업은 개별기관에서 운영되는 정보자원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정보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된 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 신축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 250억 6,200만원 중 33.1%에 해당하는 82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1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8,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 신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 신축	25,920	25,920	0	△858	25,062	8,283	16,192	58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신축	23,283	23,283	0	△858	22,425	6,697	15,567	161
범정부 통합전산 환경 구축	2,410	2,410	0	0	2,410	1,460	625	325
대구센터추진단 운영비	227	227	0	0	227	126	0	101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신축 사업은 감사원 특정감사(2010. 9.)의 후속조치로 각 부처에서 자체 운영 또는 소속 산하기관에서 위탁·관리하는 중요 전산장비 총 9,855대의 서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4,336억원이며, 연면적 34,910㎡ 규모의 건축물로서 전산동(지하 3층, 지상 2층)과 행정동(지상 3층, 지하 1층)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2042-500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 신축 공사 개요]

구 분	내 용
위 치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일원
대지면적	81,367㎡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용 도	공공업무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RC)
건축면적	34,910㎡ 행정동(지하1, 지상3), 전산동(지하3, 지상2), 방문자센터(지상2층)
주차대수	534대(지상) ※법정 348대
입주대상	86개 기관(서버 4,502대, 장비 7,852대, 2018. 12.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 신축 사업은 실시설계 기술제안방식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기존 공고를 철회하고 신규공고와 기존 입찰업체의 가처분 소송 대응을 병행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 신축 계획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7년에 실시설계 중 공사착공을 병행하여 시작해 2018년 말에 공사를 완공한다는 것이었다. 행정안전부는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계사와 시공사를 한 번에 선정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건설사 입찰공고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자 공모가 3회 유찰되었고, 3회 유찰이후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어 2017회계연도의 예산 대부분이 불용되었고, 예상 공사기한도 1년 9개월 연장(2018년 12월 → 2020년 08월)되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이 유찰된 사유는 통합전산센터라는 특수한 건축물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본설계 이전에는 파악하기가 어려워 총 공사비 변동의 위험을 설계·시공사가 부담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에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 신축 일정별 계획]

기추진 계획					지연되고 있는 계획	
설계시공일괄방식 입찰공고(3회)	입찰방법 변경	실시설계 공고	당선작발표 및 계약체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공사 입찰공고 및 낙찰자 선정	공사기간 및 준공
2016.10.~ 2017.1	2017.2~3.	2017.4~6.	2017.7.	2017.7.~ 2018.6.	2018.8.~12.	2018.12.~ 2020.8.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서 설계·시공분리입찰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여 2017년 7월 ~ 2018년 6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였고, 통합전산센터라는 건축 특성상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장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2] 방식으로 조달청에 시공사 공모를 의뢰하여, 2018년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한편 조달청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경우 입찰금액(시공사의 도급액)의 예정가격[3]과 관급자재도급액으로 이루어진 총 공사비 내에서 새로운 기술 등의 제안에 의하여 관급자재도급액이 인하될 경우 총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찰금액의 예정가격을 초과한 낙찰자를 선정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낙찰자를 선정해 왔다.

그런데 감사원이 그동안 조달청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에서 인정하던 예정가격 초과의 인정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 등을 포함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진행 중인 입찰[4]이 중지되었고, 감사원은 2019년 4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낙찰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동법 시행령[5] 위반이며 국가계약 관련 법령의 취지, 예

2)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기존 실시설계에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등을 제시하는 기술평가 위주의 입찰방식

3)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을 의미하여 예정가격은 입찰자들이 과도하게 입찰금액을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제 개념으로 도입된 제도

4)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국고에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산 낭비 여부, 계약 당사자의 책임정도, 입찰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18회계연도 사업 예산의 62.5%에 해당하는 공사비 예산 161억 9,200만원이 차년도인 2019년으로 이월되었음에도 2019년 6월 현재 이월된 사업예산 및 2019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 공사 입찰 신규공고와 기존 입찰업체의 가처분소송 대응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관리원으로 통합되지 않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개별 전산자원(서버, 스토리지 등) 전체를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에 통합할 계획이었지만 동 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전산자원 통합도 지연되고 있다는 점, 2017년에도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서 설계·시공분리입찰 방식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고, 이번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공고와 가처분 소속 대응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다른 추가적인 사업 지연요소 없이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가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있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초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최저가격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가격 초과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달청은 판단하여 왔으나,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예정가격 초과 금지 원칙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도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12 정책기획위원회 및 소관 특별위원회 사업의 문제점

정부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정책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2조제3항[1]에 따라 2018년의 경우 4개의 특별위원회(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이 중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2018년 7월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019년 2월에 그 활동이 종료되어 현재는 2개의 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기획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예산은 행정부의 총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2018년 당초에는 정책기획위원회의 운영 세부사업만 편성되었으나 4개의 특별위원회의 경우 예비비로 별도의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③ 위원회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8년 정책기획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위원회명	주요 기능	위원구성	2018년 집행액	위원회 운영기간
정책기획위원회	· 국정과제 조정과 추진 및 국정과제 관련 보고회의 지원 ·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정책방향 수립, 분야별 정책·현안 과제 연구	· 대통령위촉 ·100명이내 (현원 98명)	3,079	2017.9. ~ (운영중)
-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	· 여론조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 대통령 개헌 자문안 마련	· 정책기획 위원장위촉 ·35명이내 (현원 33명)	2,028	2018.2. ~ 2018.7.
- 재정개혁특별 위원회	·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관한 개혁과제 발굴 및 개혁방안 마련 · 예산 및 재정관리에 관한 개혁과제 발굴 및 개혁방안 마련	· 정책기획 위원회 위원장 위촉 · 30명이내 (현원 28명)	1,440	2018.4. ~ 2019.2.
-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 신남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 신남방정책 중점추진과제 선정·부처별 추진범위 조율	· 정책기획 위원장위촉 ·20명이내 (현원 8명)	857	2018.8. ~ (운영중)
-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 소득주도성장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평가 · 일자리 창출, 임금 근로자 소득 개선 및 임금격차 해소	· 정책기획 위원장 위촉 ·30명이내 (현원 28명)	1,322	2018.8. ~ (운영중)

주: 현원은 2019년 4월 기준이며, 활동이 종료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경우 활동종료 당시 현원이다.

자료: 행정안전부

12-1.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사업의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정책기획위원회 운영[1] 사업은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기획위원회 설치에 따른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운영 경비 성격의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 39억 5,600만원 중 77.8%에 해당하는 30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5,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1,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3,956	3,956	0	0	3,956	3,079	258	619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정책기획위원회가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중 절반가량은 이월되었고, 이월된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일이 대부분 12월 31일이라는 점에서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사업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2018년 정부의 핵심추진 아젠다·주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시의성 있고 중요도가 높은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연구비(260-01목) 5억 4,700만원을 편성받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정책기획위원회는 2018년 23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였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인 14건이 이월되어 예산액 5억 4,700만원 중 2억 4,200만원만이 집행되고 2억 5,800만원은 이월된 상황이고, 이월된 정책연구용역 14건 중 12건이 2018년 12월 31일에 계약이 완료되었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7035-300

[2018년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용역 추진 현황]

(단위: 건 수, 백만원)

구분	추진건수	이월건수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연구용역 현황	23	14	547	242	258	47

자료: 행정안전부

[이월된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용역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기간	계약방법
1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동북아 국제관계와 대응방안	20	10	10	'18.10.24~' 18.12.23	수의
2	지방일자리창출방안	36	18	18	'18.11.13~' 19.2.12	경쟁
3	포용농어촌 중장기비전과 전략	20	0	20	'18.12.31~' 19.2.28	수의
4	2040 한국의 안보국방	20	0	20	'18.12.31~' 19.3.30	수의
5	남북한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초환경 조사	10	0	10		수의
6	포용적성장을위한경제패러다임전환	20	0	20		수의
7	평화와번영의한반도, 중장기비전과전략	20	0	20		수의
8	포용적분권국가의구축과 미래비전	20	0	20		수의
9	2040 미래와 정부혁신-정부조직개편을 중심으로	20	0	20		수의
10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방안 연구용역	20	0	20		수의
11	중장기 국가전략으로서의 평화번영국가 구상과 실천방안	20	0	20		수의
12	포용국가로의 이론적프레임	20	0	20		수의
13	포용사회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 연구(1)-복지, 의료, 고용·노동, 성평등	20	0	20		수의
14	포용사회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 연구(2)-보육, 교육, 미래세대와 다양성증진	20	0	20		수의

자료: 행정안전부

이와 같이 정책연구용역의 다수가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정책기획위원회는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를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종합발전전략인 '국가미래비전2045'의 수립 필요성이 '포용국가전략회의(2018.9.6.)'에서 제기되어 정책기획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를 거쳐 연구용역 등의 추진방안이 검토되어 왔고,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기구 오찬간담회(2018.11.21.)'에서 국가미래비전2045 수립 추진방향이 최종 확정된 이후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이 추진되어 불가피하게 다수의 정책연구용역이 이월되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가미래비전2045는 수립에 시급성을 요하는 단기적 계획이 아니어서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 역시 반드시 연도 내에 추진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정책연구용역이 12월 31일을 계약일로 하여 이월된 것은 정책연구용역 관련 집행관리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정책기획위원회는 연구용역과제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이 지연되어 추진되지 않도록 연구용역 과제의 검토·선정, 연구용역 과제 관리 등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12-2. 예비비를 배정해 운영한 특별위원회 운영 사업들의 집행률 저조

가. 현 황

정책기획위원회에서 2018년 운영했던 특별위원회의 경비는 예비비를 각각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운영,[1]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운영,[2]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운영,[3]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운영[4](이하 "특별위원회"라고 한다) 세부사업에 배정받아 집행하였다. 전체 특별위원회의 집행 현황을 보면 예비비 95억 400만원(예산현액)을 배정받아 61.2%에 해당하는 58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6억 7,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정책기획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특별위원회 관련 예산 집행현황	0	0	0	0	9,504	9,504	5,820	9	3,674

자료: 행정안전부

나. 분석의견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들은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향후에 예비비 신청 및 배정 시 불요불급하지 않은 경비의 편성은 지양하고 배정받은 예비비의 경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7035-301

2) 코드: 일반회계 7035-302

3) 코드: 일반회계 7035-305

4) 코드: 일반회계 7035-306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각 특별위원회들은 조세 및 예산 개혁 과제 발굴 및 추진방안 마련(재정개혁특별위원회),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부 개헌안 발의 준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 관련 주요현안검토 및 중장기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및 신남방정책을 통한 외교정책 확대와 관련한 범부처 정책조정강화(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라는 국정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었다.

이와 같은 국정현안들은 예산편성 시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사항들이고, 국정현안에 대한 적시 지원 및 정책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 「국가재정법」 제22조[5]에 따른 예비비의 사용 요건에는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예비비를 배정받아 추진한 특별위원회들의 전체 집행률이 61.2%로 높지 않은 수준이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와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의 경우 60% 이하의 집행률을 기록하여 집행관리가 면밀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각 특별위원회들은 위원회 출범지연, 당초 계획한 오프라인 의견수렴 플랫폼 미구축, 국외출장 계획 취소, 컨퍼런스 미개최 및 예상보다 낮은 회의개최 빈도 등의 사유에 의하여 집행부진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

5)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2018년 특별위원회 예비비의 주요 불용 사유]

(단위: 백만원, %)

구분	예비비 배정액 (A)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불용사유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3,062	1,613	1,440	52.7	위원회 출범 지연(계획: 2월 → 실제 출범: 4월)으로 인해 회의체 운영비 등 집행 부진
국민헌법자문 특별위원회	2,805	2,028	777	72.3	당초 계획한 오프라인 의견수렴 플랫폼 미구축 등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1,686	857	829	50.8	국외출장 계획 취소에 따른 국외여비 및 전문임기제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1,951	1,322	628	67.8	컨퍼런스 미개최 및 예상보다 낮은 회의개최 빈도에 따른 불용, 대회의실 미임차 등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
합계	9,504	5,820	3,674	61.2	-

자료: 행정안전부

하지만 예비비의 경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비용을 연내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편성 및 집행하는 보충적인 성격의 경비라는 점, 편성과 집행의 시기적 격차가 크지 않아 편성 시 보다 면밀한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비의 집행률이 61.2%라는 것은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이 면밀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또한 오프라인 의견수렴 플랫폼 미구축, 국외출장 계획 취소, 컨퍼런스 미개최 등은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불용사유라고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향후에 예비비 신청 및 배정 시 불요불급하지 않은 경비의 편성은 지양하고 배정받은 예비비의 경우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인사혁신처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89억 3,400만원이며, 861억 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6.8%인 861억 1,800만원을 수납하고, 1,7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8,934	88,934	88,934	86,136	86,118	17	0	96.8

자료: 인사혁신처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6,503억 4,100만원이며, 이 중 99.8%인 3조 6,435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67억 9,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634,376	3,634,376	3,635,102	3,628,310	0	6,792	99.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1,689	11,689	15,240	15,235	0	4	100.0
합계	3,646,065	3,646,065	3,650,341	3,643,545	0	6,796	99.8

자료: 인사혁신처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나. 기금 결산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23조 1,476억 9,300만원이며, 21조 8,651억 8,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7%인 21조 8,044억 9,400만원을 수납하고 596억 6,4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0억 2,6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당초	수정						
공무원연금기금	23,147,693	23,147,693	23,147,693	21,865,183	21,804,494	59,664	1,026	99.7
합계	23,147,693	23,147,693	23,147,693	21,865,183	21,804,494	59,664	1,026	99.7

자료: 인사혁신처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의 계획현액 23조 1,487억 5,900만원 중 94.2%인 21조 8,044억 9,400만원을 지출하고 85억 3,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125억 8,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당초	수정					
공무원연금기금	23,147,693	23,147,693	23,148,759	21,804,494	8,535	912,585	94.2
합계	23,147,693	23,147,693	23,148,759	21,804,494	8,535	912,585	94.2

자료: 인사혁신처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3,319억 7,000만원(2.2%)이 감소한 14조 8,881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593억 800만원(0.4%)이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8,152	9,639	9,639	6,824	△2,815	△1,328
기금	14,820,736	15,210,527	15,210,527	14,881,372	△329,155	60,636
합계	14,828,888	15,220,166	15,220,166	14,888,196	△331,970	59,308

자료: 인사혁신처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9,225억 7,200만원(4.9%)이 감소한 18조 282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8,666억원 6,600만원(5.1%)이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86,971	204,733	204,733	202,213	△2,520	15,242
기금	16,974,566	18,746,042	18,746,042	17,825,990	△920,052	851,424
합계	17,161,537	18,950,775	18,950,775	18,028,203	△922,572	866,666

자료: 인사혁신처

라.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인사혁신처의 자산은 18조 4,515억, 부채는 805조 2,275억 5,300만원으로 순자산은 △786조 7,760억 5,3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3조 4,307억 5,200만원, 투자자산 10조 3,402억 8,300만원, 일반유형자산 4조 5,992억 3,300만원, 무형자산 145억 2,300만원 및 기타비유동자산 667억 9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971억 5,700만원(2.8%)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단기투자증권 감소에 따른 유동자산 3,585억 4,700만원 감소, 감가상각 등으로 일반유형자산 319억 1,200만원 감소 및 장기투자증권 등 증가에 따른 투자자산 8,739억 1,4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조 1,410억 6,700만원, 장기차입부채 2조 9,572억 1,600만원, 장기충당부채 799조 7,067억 5,5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1조 4,225억 1,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81조 8,471억 4,000만원(11.3%)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장기차입금 감소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1,661억 4,300만원 감소, 장기임대보증금 등 감소에 따른 기타비유동부채 3,281억 6,200만원 감소, 단기임대보증금 등의 증가에 따른 유동부채 7,856억 9,800만원 증가 및 공무원연금충당부채 등의 증가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81조 5,557억 4,7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8,451,500	17,954,343	497,157	2.8
Ⅰ. 유동자산	3,430,752	3,789,299	△358,547	△9.5
Ⅱ. 투자자산	10,340,283	9,466,369	873,914	9.2
Ⅲ. 일반유형자산	4,599,233	4,631,145	△31,912	△0.7
Ⅴ. 무형자산	14,523	14,066	457	3.2
Ⅴ. 기타비유동자산	66,709	53,464	13,245	24.8
부 채	805,227,553	723,380,413	81,847,140	11.3
Ⅰ. 유동부채	1,141,067	355,369	785,698	221.1
Ⅱ. 장기차입부채	2,957,216	3,123,359	△166,143	△5.3
Ⅲ. 장기충당부채	799,706,755	718,151,008	81,555,747	11.4
Ⅳ. 기타비유동부채	1,422,515	1,750,677	△328,162	△18.7
순 자 산	△786,776,053	△705,426,070	△81,349,983	11.5
Ⅰ. 기본순자산	4,688,907	4,688,907	0	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793,838,785	△712,882,163	△80,956,622	11.4
Ⅲ. 순자산 조정	2,373,825	2,767,186	△393,361	△14.2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9조 5,231억 7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45조 707억 8,800만원, 관리운영비 834억 4,000만원, 비배분비용 1,082억 5,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3조 8,755억 8,400만원, 비배분수익 3,121억 8,000만원, 비교환수익 등 1조 5,516억 1,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4조 1,518억 8,400만원(15.4%) 증가한 31조 747억 1,700만원이며, 이는 주로 사업비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순원가 4조 557억원 5,6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총 6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공무원연금급여지급 프로그램(44조 7,214억 3,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631억 8,200만원과 경비 202억 5,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자산처분손실 828억 9,800만원, 평가손실 151억 1,500만원 등으로, 배배분수익은 이자수익 1,719억 200만원, 자산처분이익 1,154억 7,300만원, 비교환수익은 정부외자산수증 1조 5,516억 1,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1,195,204	27,139,448	4,055,756	14.9
가. 프로그램 총원가	45,070,788	41,433,996	3,636,792	8.8
나. 프로그램 수익	13,875,584	14,294,548	△418,964	△2.9
Ⅱ. 관리운영비	83,440	80,709	2,731	3.4
Ⅲ. 비배분비용	108,253	57,586	50,667	88.0
Ⅳ. 비배분수익	312,180	354,910	△42,730	△12.0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31,074,717	26,922,833	4,151,884	15.4
Ⅵ. 비교환수익 등	1,551,610	1,536,676	14,934	1.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29,523,107	25,386,158	4,136,949	16.3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705조 4,260억 7,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786조 7,760억 5,300만원으로 기초 대비 81조 3,499억 8,300만원(11.5%)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29조 5,231억 700만원 증가하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대비 53조 1,201억 1,100만원 감소하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1조 2,932억 3,5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3조 6,450억 9,3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무상이전지출, 기타재원이전 등 재원의 이전 2조 3,518억 5,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3,747억 8,8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185억 7,300만원, 기타 순자산의 감소 52조 7,267억 4,9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705,426,070	△628,457,088	△76,968,982	△12.2 %
Ⅱ. 재정운영결과	29,523,107	25,386,158	4,136,949	16.3 %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293,235	1,349,701	△56,465	△4.2 %
Ⅳ. 조정항목	△53,120,111	△52,932,525	△187,586	△0.4 %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786,776,053	△705,426,070	△81,349,983	△11.5 %

자료: 인사혁신처

마. 재정 구조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의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3조 4,413억원 전출되었고,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반회계로 793억원 전입되었다.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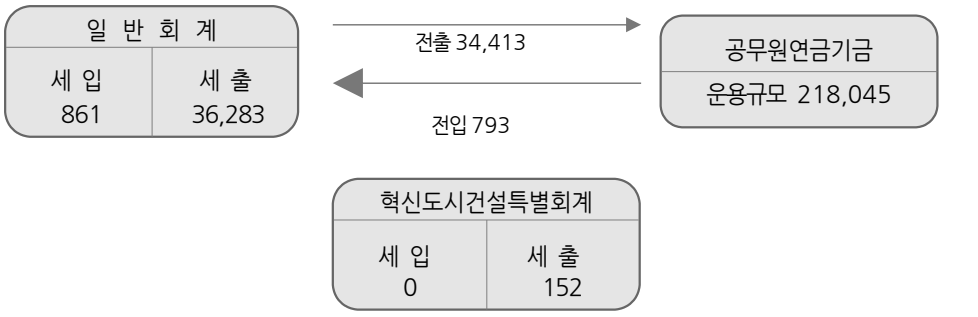

2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인사혁신처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 사업, ②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사업, ③ 국가시험 시행 사업** 등이 있다.

공직사회 인사혁신 확산 사업은 균형인사 정책과제 발굴 및 확산을 위한 균형인사 실천 보고회(균형인사 시행계획 우수 기관 시상) 예산이 미반영되어 1억원이 감액(7.8억원 → 6.8억원)되었고[7],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사업은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예산이 노조 사무실 이전(서울 → 세종)이 연기됨에 따라 0.2억원 감액(3.4억원 → 3.2억원)되었다.[8] 국가시험 시행 사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규모 감소를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시험 예산이 3억원 감액(132억원 → 129억원)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이 감액된 사업**으로 **공무원연금기금 연금교육사업**이 있다.

연금교육사업은 공무원연금공단의 G-시니어 시스템과 인사혁신처의 퇴직인력 뱅크 시스템 연계 사업 예산이 미반영되어 0.4억원이 감액(157.4억원 → 157.0억원)되었다.[9]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이 증액된 사업**으로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사업**이 있다.

---

7)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1.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8)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1.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9)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1.
국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사업은 공무원연금공단의 G-시니어 시스템과 인사혁신처의 퇴직인력뱅크 시스템 연계 사업 예산 0.4억원 감액됨에 따라 여유자금 0.4억원이 증액(1조 1,698.8억원 → 1조 1,699.2억원)되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인사혁신처는 **① 전략적 인사관리를 통한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 ② 공직 다양성 제고 및 개방 확대, ③ 인재개발 혁신을 통한 공무원의 정책역량 강화, ④ 반듯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2018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인사혁신처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인사혁신처의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과는 별도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18개 중앙부처는 자체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두 제도에 따른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적정 규모와 통합적인 사업운용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의 신규직위 임용 지연이 나타나고 있어 임용 지연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무원인재개발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교육 내역사업에서 예산액 대비 초과집행이 연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8회계연도의 경우 초과집행 금액이 예산액 대비 60% 이상으로 과다한 측면이 있어 적정예산 편성을 통해 초과집행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현 황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운영 사업[1]은 공무원의 국제기구 진출을 통해 국제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국익을 반영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활용을 통한 국제금융위기 등 국제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사혁신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운영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 237억 1,9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제기구고용 휴직제도운영	23,719	23,719	0	0	23,719	23,719	0	0

자료: 인사혁신처

국제기구고용휴직이란 공무원이 국제기구와 고용계약을 맺고 임시로 채용될 때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사혁신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인건비·부대경비를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 사업에 국제부담금(340-02목)으로 편성하고,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제3절(국제기구 고용휴직)제60조[2]에 따라 부처별 고용휴직자 공모, 고용휴직자 성과평가, 직위존치평가 등의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634-531

2)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제3절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60조(국제기구 근무로 인한 휴직) ① 제3절의 규정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될 때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는 경력직공무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105개 직위를 운영하고 있고 신규 및 교체 직위의 임용지연 등으로 현재 96명이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인사혁신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사혁신처와 각 부처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에 대해 운용 규모, 통합적 운용 필요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인사혁신처가 동 사업을 통해 운영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과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고용휴직(이하 "각 부처 국제기구 고용휴직"이라 한다)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각 부처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직위를 확보한 후 소속 공무원 중 국제기구에 근무할 자를 선발하거나 공무원이 해당 국제기구의 직위에 개인 자격으로 응모하여 선발될 경우 휴직을 하고 해당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제도가 이원화 되어 있는 연혁을 살펴보면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1963년 제도 도입 후 각 부처가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인건비를 부처 예산에 편성하거나, 국제기구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04년에 국회의 2003회계연도 외교부 결산 관련 검토보고서[3]에서 OECD 고용휴직 제도의 비효율적 운영을 지적하였고, 2005년도에 관계부처(중앙인사위원회,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2006년 2월부터 중앙인사위원회(現 인사혁신처)가 선발 및 관리를 주관하고 관련 예산은 2007년부터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 편성되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2007년 중앙인사위원회가 주관하기로 한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고용휴직자의 인건비가 개별 부처에 국제부담금으로 편성된 경우'만을 의미하며, 국제기구에서 인건비를 부담함에 따라 개별 부처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

(이하 "국제기구 휴직공무원"이라 한다)의 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의 국제부담금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해서는 제5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3)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외교통상부 소관 2013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2004. 8.

지 않던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경우 이전과 같이 각 부처에서 주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비교]

구분	인사혁신처 주관	각 부처 자체
의의	공무원이 국제기구와 고용계약을 맺고 임시로 채용될 때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국가공무원 임용규칙」 제10장제3절	「국가공무원 임용규칙」 제10장제5절
기간	총 3년 원칙, 예외적으로 5년까지 가능	총 3년 원칙, 예외적으로 5년까지 가능
공모 범위	전 부처 또는 유관 기관 공모	부처 내 공모
보수 기준	국제기구 자체 보수규정에 따름	
예산	인사혁신처 예산	국제기구가 부담

자료: 인사혁신처

이에 따라 2018년 12월 기준으로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으로 33개 부처에 105개 직위가 운영되고 있고, 각 부처 국제기구 고용휴직으로 18개 부처에서 65개 직위가 운영되고 있으며, 동일한 국제기구에 두 제도의 고용휴직 인원이 함께 근무하는 사례도 있다.

[2018년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 운영 현황]

(단위: 직위 수)

순위	부처명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	각 부처 국제기구 고용휴직	합계
1	기획재정부	18	25	43
2	외교부	2	8	10
3	산업통상자원부	6	3	9
4	해양수산부	7	2	9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0	8
6	국토교통부	7	1	8
7	환경부	6	2	8
8	농림축산식품부	4	3	7
9	특허청	3	4	7
10	고용노동부	6	0	6
11	관세청	1	4	5
12	보건복지부	5	0	5
13	산림청	1	4	5
14	교육부	3	1	4
15	문화체육관광부	4	0	4
16	식품의약품안전처	4	0	4
17	금융위원회	2	1	3
18	인사혁신처	3	0	3
19	경찰청	0	2	2
20	국민권익위원회	1	1	2
21	방송통신위원회	1	1	2
22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2
23	행정안전부	1	1	2
24	감사원	1	0	1
25	공정거래위원회	1	0	1
26	국무조정실	1	0	1
27	기상청	1	0	1
28	농촌진흥청	1	0	1
29	대검찰청	0	1	1
30	문화재청	1	0	1
31	법무부	1	0	1
32	여성가족부	1	0	1
33	조달청	1	0	1
34	통계청	1	0	1
35	통일부	1	0	1
합계		105	65	170

자료: 인사혁신처

[동일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 현황]

(단위: 직위 수)

부처명	국제기구명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	각 부처 국제기구 고용휴직
기획재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	2	6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1	1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1	1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4	3
	미주개발은행(IDB)	1	3
	국제통화기금(IMF)	3	5
교육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3	1
외교부	한아세안센터	1	1
농림축산식품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2	3
환경부	세계보건기구(WHO)	1	1
특허청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3	2
관세청	세계관세기구(WCO)	1	4
산림청	유엔사막방지화협약(UNCCD)	1	1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전체적인 국익제고 효과를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에서 관장하여 인건비성 경비인 국제부담금을 부담하면서 공무원을 국제기구에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고, 각 부처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경우 국제기구가 공모한 직위에 각 부처에서 지원자를 선발하거나 각 부처의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지원하여 선출된 경우 이에 대한 허용 여부를 인사혁신처가 판단[4]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제도 취지와 운영 방식이 상이하다는 설명이다.

4) 「공무운 임용규칙」
제82조(사전협의 등 휴직절차) ⑥ 소속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휴직대상 공무원을 선발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예정일 40일(외국에 소재한 기관인 경우에는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각 호 중략)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근거로 휴직의 적법성(자격기준 등) 및 적정성(휴직인원, 보수수준 및 각 부처별 균형적 인사운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휴직을 심사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각 부처 국제기구 고용휴직 중 일부는 우리나라가 해당 국제기구에 납부하는 회원 부담금, 사업 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국제기구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인건비성 경비인 국제부담금을 부담하는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와 실질적으로 차별성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동일 국제기구에 각기 다른 제도를 통해 국제기구 고용휴직자가 근무할 경우 업무중복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감축된 각 부처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 중 하나는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와 중복된다는 사유로 감축되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국제기구 고용휴직과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이 유사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고용휴직 제도의 적정 규모 및 각 국제기구별 고용휴직 직위의 적정 규모, 기존직위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제기구 고용휴직 신규직위의 임용 지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신규직위 결정 시 내실 있는 검토 및 사전적인 국제기구와의 면밀한 조율 등이 필요하다.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85개 직위, 2017년 100개 직위를 운영하였으며, 2018년에는 105개 직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신규직위의 국제기구고용휴직의 채용과정을 살펴보면, 국제기구와 직위에 대한 사전적인 협의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 및 면접방식 등을 결정하고, 직위에 추천할 후보자를 3개월 기간의 국내 선발과정을 통하여 1~3명 선발한 뒤 국제기구에 추천하면 국제기구가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해당 인원을 선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신규직위의 경우 7월부터 임용을 고려하여 6개월분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국제부담금[5]을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기구 고용휴직 신규직위 임용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신규직위 15개 중 4개 직위는 차년도인 2018년에 임용되었고, 2개 직위는 국제기구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어 다른 신규직위로의 전환을 고려 중이다. 2018년 신규직위 5개의

5) 2018년 기준 기존 직위 예산은 100개 직위에 직위 당 2억 3,100만원 총 231억 900만원, 신규 직위 예산은 5개 직위에 직위 당 1억 1,600만원 기준으로 총 5억 7,800만원이 편성

경우에도 1개 직위는 차년도인 2019년에 임용되었고 1개 직위는 국제기구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어 다른 신규직위로의 전환을 고려 중인 상황이다.

이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신규직위가 예산편성 기준으로 6개월분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신규직위가 지연되어 임용된 것이고, 해당 경비의 경우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 신규직위 임용 시기]

(단위: 직위 수)

연도	합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차년도 1월	2월	3월	이후 기간	진행중[2]
2017	15	1	2	3	1	1	1	1	0	1	2[1]	2
2018	5	0	0	1	1	0	1	0	0	1	0	1

주: 1) 2018년 9월 및 2019년 1월에 파견
2) 2017년 2개 2018년 1개 직위는 국제기구와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어 다른 신규직위로 전환예정
자료: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경우 국제기구의 사정변화 등을 이유로 임용지연, 신규직위 협상결렬 등이 나타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국제기구 고용휴직의 신규직위 결정시 사전에 국제기구와 신규직위 임용과 관련된 행정절차, 신규직위의 업무범위와 직급 등을 면밀하게 협상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국제기구와 면밀한 사전협상을 통하여 적시적소에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직위에 국제기구 고용휴직자가 파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Ⅲ 개별 사업 분석

1 공무원인재개발 사업의 연례적인 초과집행

가. 현 황

공무원인재개발 사업[1]은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대학의 위탁교육, 장·단기 국외훈련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사혁신처는 동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 468억 5,000만원 중 94.1%에 해당하는 440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7억 6,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공무원인재개발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무원인재개발	46,850	46,850	0	0	0	46,850	44,088	0	2,762
대학원 위탁교육	4,830	4,830	0	0	0	4,830	4,789	0	41
국내대학위탁교육	2,255	2,255	0	0	0	2,255	2,350	0	△95
외국어교육	465	465	0	0	0	465	530	0	△65
민간위탁교육	693	693	0	0	0	693	1,114	0	△421
장·단기국외훈련	38,057	38,057	0	0	0	38,057	34,778	0	3,279
기타운영경비등	374	374	0	0	0	374	352	0	22
교육훈련관리 시스템고도화	176	176	0	0	0	176	175	0	1

자료: 인사혁신처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632-300

나. 분석의견

공무원인재개발 사업 중 민간위탁교육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초과집행이 나타났고 2018년의 경우 예산액 대비 초과집행 금액이 60% 이상으로 과다한 측면이 있는 바,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초과집행액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2018년 공무원인재개발 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을 보면 국내대학위탁교육, 외국어교육, 민간위탁교육에서 예산편성액 대비 각각 9,500만원, 6,500만원, 4억 2,100만원의 초과집행이 나타났다.

특히 민간위탁교육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초과집행이 나타나고 있고, 2018년 초과집행액 규모가 4억 2,100만원으로 예산액(6억 9,300만원)의 60%이상이었다.

[공무원인재개발 사업의 일부 내역사업의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구분	2016	2017	2018
국내대학위탁교육	예산액	2,283	2,255	2,255
	집행액	2,193	2,209	2,350
	초과집행액	(△90)	(△46)	95
외국어교육	예산액	665	465	465
	집행액	683	604	530
	초과집행액	18	139	65
민간위탁교육	**예산액**	**891**	**693**	**693**
	집행액	**1,125**	**924**	**1,114**
	초과집행액	**234**	**231**	**421**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정부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대부분 완료되면서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민간위탁교육 중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최신 이슈에 대한 정책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집합교육과 세종청사 내 외국어 강의를 위한 청사외국어교실의 수강인원이 예산편성 기준 대비 크게 증가하여 초과집행이 나타났고, 해당 초과집행 금액은 장·단기국외훈련 사업의 기타보전금(310-04목) 집행잔액이며 동일 세부사업의 같은 비목 예산으로 집행하여 별도의 이·전용 없이 충당하였다는 설명이다.

[민간위탁교육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명)

과정명	과정 내용	과정운영 횟수	예산 편성 현황		집행 현황	
			예산액	수강 인원	집행액	수강 인원
집합교육	- 목적 : 민간분야 최신 지식·기술·경험 등 습득 및 직무역량 향상 - 운영기관 : 휴넷, 에듀맥스, 동아일보 등 - 운영과정 : 글로벌 리더십, 사회적 가치, 4차 산업혁명, 멘토링 등	69개 과정 (상·하반기 2회)	405	1,350	723	2,123
세종청사 아카데미	- 목적 : 공무원 정책역량 배향 및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간 교류 기회 마련 - 운영기관 : KDI(경제정책, 행정혁신, 글로벌 전략), KAIST(미래전략)	26개 과정 (상·하반기 2회)	174	232	141	149
청사 외국어 교실	- 목적 : 세종·대전 지역 공무원의 외국어 교육 지원 - 운영기관 : SLI 어학원	89개 과정 (상·하반기 2회)	114	492	251	843

자료: 인사혁신처

그런데, 장·단기 국외훈련 사업이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감소한다면 공무원의 교육수요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교육의 확대가 어렵다는 점, 연례적인 초과집행에도 불구하고 동 내역사업의 예산액은 2019년에도 2018년과 동일한 6억 9,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혁신처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연례적인 초과집행을 최소화하고, 동 내역사업이 교육수요에 부합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규모 최소화 필요

가. 현 황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1][2] 사업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고위정책과정, 전문교육과정, 정보화교육과정, 글로벌역량교육 등 유료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국가공무원의 수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018년 예산현액 22억 2,200만원 중 98.6%인 21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사업은 국가공무원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3]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교육생에 대한 교육편의 제공 및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운영 경비로 사용되었다.

[2018회계연도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1,682	1,682	0	0	2,220	2,190	0	30

자료: 인사혁신처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731-650

2)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는 유료과정의 교육비를 수입으로 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충당하는 구조이다.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훈련시설 및 교육훈련과정 등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5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나. 분석의견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경우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8년 초과지출이 발생하였고, 2019년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예산액이 감액 편성되어 초과지출 승인이 예상되는 바, 향후에는 초과지출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연도별 예산액 및 초과지출승인액 현황을 보면 2017년까지는 초과지출 승인이 발생하지 않았고, 2018년에 5억 3,800만원의 초과지출 승인[4]이 발생하였다. 초과지출 승인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동 사업의 집행액은 2016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2018년은 전년 대비 예산액이 4억 6,0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019년은 2018년 초과지출 승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예산액이 감액 편성되어 특별한 교육수요의 감소요소가 없다면 2019년에도 초과지출 승인이 예상된다.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1,348	1,347	2,142	1,682	1,611
예산현액	1,348	1,347	2,142	2,220	-
초과지출승인액	0	0	0	538	-
집행액	1,277	1,239	1,856	2,190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동 사업의 경우 예산액의 감액편성 사유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및 심의 과정에서 2018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예산의 집행부진이 나타났고, 교육계획인원 대비 실제교육인원 미달 등의 이유로 재정사업자율평가[5]에서

4) 초과지출승인의 주요 사유를 보면 한국국제협력재단이 수행하는 개발협력사업(DEEP, 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Program)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외국 공무원 교육기관 개발 컨설팅 과정'에서 3억 7,400만원, 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외국 정부 주문형 교육 과정'에서 1억 4,300만원 등 상대적으로 과정당 사업액이 큰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초과지출이 나타났다.

5) 각 부처가 자체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재정운용 과정에 환류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모든 재정사업이 평가대상이고, 해당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개편(예산감액 등) 및 성과관리개선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미흡을 받은 점이 고려되어 예산액이 감액되었으며 2019년 예산의 경우에는 2018년 집행현황은 개선되었으나 2018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되어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설명이다.

[연도별 교육계획인원 대비 실제교육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교육계획인원(A)	4,984	4,424	3,980	3,853	4,316
실제교육인원(B)	6,067	4,460	2,430	2,988	-
예측 차이(B-A)	1,083	36	△1,550	△865	-

자료: 인사혁신처

하지만 동 사업의 경우 수입대체경비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53조[6]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연도 중 별다른 절차 없이 부처에서 증액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면밀한 세출예산 추계를 통해 연도 중 초과지출 승인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2018년 및 2019년과 같이 성과부진 등을 사유로 예산액을 감액편성하게 되면 수입대체경비 사업에서 초과지출 승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초과지출 승인액은 지출목적이 제한[7]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부처의 예산집행 상의 자율성을 확대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인사혁신처는 면밀한 교육계획인원 계획 및 그에 따른 집행을 통해 동 사업의 일차적인 성과인 교육인원에 대한 사업성과를 개선하고, 향후에는 동 사업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초과지출 승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

6)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7) 초과수입 직접 관련 경비로 지출 목적이 제한

3 공무원연금대부 사업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 최소화 필요

가. 현 황

공무원연금대부(융자) 사업[1]은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수익확보 및 기금증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추진하는 기금 사업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 계획현액 8,000억원 중 99.4%인 7,954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5억 8,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공무원연금대부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공무원연금대부	600,000	800,000	0	0	800,000	795,412	0	4,588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나. 분석의견

공무원연금대부(융자) 사업 관련 계획금액은 2017년 및 2018년 대부액 조기소진에 따라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2,00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은 향후 기금 계획안에는 적정 계획액을 반영하여 연례적인 기금계획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대부 사업은 퇴직금에서 미상환 원리금 공제가 가능하여 채권 부실화 가능성이 낮고, 대출 신청과 입금이 신속히[2] 이루어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3142-322

2) 대출신청부터 입금까지 평균 대출 소요기간이 1일로, 일반적으로 당일 오전 10시까지 신청 시 당일 입금되며, 당일 오전 10시 이후 신청시에는 익일에 입금된다.

지는 장점으로 인한 대부 수요 증가로 해당 계획금액이 매년 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2016년까지는 해당연도 8월 5일에서 3월 16일까지 계획액의 집행완료 시기가 점차 빨라졌고, 2017년과 2018년에는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2,00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집행완료 시기가 10월로 늦춰졌다.

[연도별 공무원연금대부 사업 계획 금액 소진 시기]

(단위: 억원, 일)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1)]	2018년[2)]
대출규모	7,000	7,000	6,300	8,000	8,000
소진시기	8월 5일	5월 19일	3월 16일	7월 10일(1차) 10월 16일(2차)	7월 13일(1차) 10월 10일(2차)

주: 1)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000억원 증액(2017. 6월)하였으며, 증액예산은 8월, 10월에 각각 1,000억원씩 대부 추가 시행
2)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000억원 증액(2018. 7월)하였으며, 증액예산은 10월에 2,000억원 대부 추가 시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은 2019년의 경우에는 연금대출의 조기소진 방지를 위해 3/4분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대출재원을 2,000억원씩 배분하여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1분기 대부수요가 많아 2,688억원(연간 계획액 6,000억원 대비 44.8%)을 집행한 상황으로 2019년 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2,000억원 가량 공무원연금대부사업을 증액하여 운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9년 공무원연금대부사업 관련 분기별 기금계획액 및 집행액 현황]

(단위: 억원, 일)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대출재원	2,000	2,000	상반기 잔액	2,000
집행액 (3.31기준)	2,688	-	-	-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한편, 공무원연금대출의 수익률을 공무원연금기금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3]과 비교해 보면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2013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수익률 비교 시 공무원연금대출이 미세하게 높은(0.6%p)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연금대출의 수익률이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과 유사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공무원연금대출과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비교]

(단위: %, %p)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공무원연금대출 (a)	4.6	4.1	3.4	3.1	3.3	3.6	**3.7**
금융자산 운용 (b)	3.5	3.4	3.4	3.5	6.7	△1.7	**3.1**
차이 (a-b)	1.1	0.7	0.0	△0.4	△3.4	5.3	**0.6**

주: 평균은 연도별 수익률의 단순 평균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따라서, 공무원연금 대출이 연도 내에 조기소진 되고, 이로 인해 2017년, 2018년 연속으로 기금계획 변경이 이루어졌고, 2019년에도 기금계획 변경 예정이라는 점, 공무원연금 대출의 수익률 또한 기금운용수익률에 비해 낮지 않은 점, 공무원연금 대출은 공무원 연금 적립액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이어서 부실 대출 등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은 향후 예산편성 시 공무원연금 대부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여 연례적인 기금 계획액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3) 여유자금운용 규모는 2018년 기금 수정 계획액 기준 4조 2,851억원 7,500만원이다.

4 임대주택건립 사업의 사업지연 최소화 필요

가. 현 황

임대주택건립 사업[1]은 무주택공무원에게 시중 전세금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하여 공무원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 계획현액 336억 2,600만원 중 20.4%인 68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6,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53억 9,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임대주택건립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임대주택건립	38,205	33,626	0	0	33,626	6,871	1,364	25,391
설계비	1,303	1,303	0	0	1,303	703	600	0
공사비	34,705	30,126	0	0	30,126	6,144	764	23,218
감리비	1,882	1,882	0	0	1,882	0	0	1,882
시설부대비	315	315	0	0	315	24	0	291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나. 분석의견

임대주택건립 사업에서 추진하는 개포 9단지 재건축 사업은 2018년에 적용 법령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주변 학교와 협의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는바, 공무원연금공단은 향후 사업추진 시 추가적인 집행지연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3251-361

임대주택건립 사업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임대주택건립을 추진하는 방식과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민간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임대주택건립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2)]

공무원연금공단이 2018년 추진한 개포 9단지 재건축 사업은 공무원연금공단이 1983년 임대주택을 건립해 최초로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한 단지인 개포 9단지 공무원아파트를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재건축하려는 사업이다. 해당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5만 1,021㎡, 연면적 18만 3,677㎡,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 1,727세대(12동)를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실시설계와 공사비 일부 등 137억 8,600만원이 기금계획액으로 편성되었다.

그런데, 개포 9단지 재건축 사업일정을 보면 당초 2018년 4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1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관련 행정절차 등의 지연으로 2019년 1월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2022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인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실시설계비와 공사비(공사장 주변 펜스 설치비용) 일부인 11억 300만원만이 집행된 상황이다.

[개포 9단지 재건축 사업의 당초 및 변경된 사업일정]

구 분	사업계획승인	착 공	준 공	입 주
당 초	’18년 4월	’18년 12월	’21년 9월	’21년 10월
변 경	’19년 1월	’19년 8월	’22년 9월	’22년 10월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2) 민간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경우 민간 아파트의 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 지연, 재건축 조합장 해임, 일반분양가 조정 등 다양한 사유로 지연되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집행부진이 나타나고 있고 2018회계연도 기준 관련 사업 계획액(추가경정예산 기준) 198억 4,000만원 중 58억 7,100만원이 집행되고 113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8년 개포 9단지 재건축 사업 비목별 예산액 및 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액	집행액	비 고
건설비	실시설계비	1,303	703	설계비 6억원 이월
	공 사 비	10,286	376	철거비 7.6억원 이월
	감 리 비	1,882	0	
	시설부대비	315	24	
합 계		13,786	1,103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보면 개포 9단지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아파트 단지를 소유하고 있어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전반적인 적용이 어려워 공무원연금공단은 「주택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개포 9단지 재건축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건축 관련 각종 규제의 인·허가권자인 서울특별시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인 개포 9단지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사업 관련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택법」 관련 절차를 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특별시의 요구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함에 따라 행정적인 소요가 증가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지연되었다.

[개포 9단지 재건축 관련 법령 현황]

구 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비 고
사업주체	국가, 주택건설사업자, 지역(직장)주택조합	재건축(개발)조합 등	개포9단지 재건립 사업은 단독 소유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의 절차와 맞지 않음 (동일 사례 없음)
내 용	주택 사업계획 승인 절차, 공동주택 관리 등	구분 소요권자의 재건축 절차 규정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또한 2017년 2월 도입된 교육환경영향평가[3]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주변학교와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일원초등학교 교사증축 비용부담(교육청), 학교시설 및 체육시설 교체(중동중학교)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는 설명이다.

대규모 건축 사업은 동 사업과 같이 인·허가 및 지역 주민(학교) 등과의 협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와 관련 법령 및 사업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협의가 있었다면 사업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공무원 임대주택의 수요가 큰 지역임에도 운영되는 임대주택 수는 전체 임대주택의 15% 수준[4]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은 규모가 큰 재건축 단지(1,721세대)인 개포 9단지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향후 사업지연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층 이상 규모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시·도 교육청 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물 주변 학교와 협의가 필요하다.

4) 2019년 기준 전체 공무원 임대주택 수: 18,277세대, 서울특별시 공무원 임대주택 수: 2,802세대이고 서울특별시 임대주택 세부 내역은 고덕 8단지 700세대, 고덕 9단지 2세대, 상계 단지 2,100세대이다.

※ 인사혁신처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공무원연금기금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Ⅱ」 pp.299

경찰청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687억 1,600만원이며, 1조 9,583억 8,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6.5%인 9,105억 8,500만원을 수납하고 9,993억 7,4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484억 2,3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8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91,480	891,480	891,480	1,880,618	832,855	999,350	48,412	44.3
경찰병원특별회계	77,236	77,236	77,236	77,764	77,730	24	10	100.0
합계	968,716	968,716	968,716	1,958,382	910,585	999,374	48,423	46.5

자료: 경찰청

2018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0조 6,081억 4,500만원이며, 이 중 97.2%인 10조 3,097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170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13억 6,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2018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0,500,638	10,500,638	10,526,882	10,232,804	17,047	277,031	97.2
경찰병원특별회계	77,236	77,236	77,236	72,900	0	4,336	94.4
지역발전특별회계	4,027	4,027	4,027	4,027	0	0	100.0
합계	10,581,900	10,581,900	10,608,145	10,309,731	17,047	281,367	97.2

자료: 경찰청

나.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8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11억 2,600만원(6.6%)이 감소한 8,648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541억 9,000만원(5.9%)이 감소하였다.

[2018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수입	919,016	925,952	925,952	864,826	△61,126	△54,190

자료: 경찰청

2018회계연도 경찰청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716억 3,400만원(2.6%)이 감소한 10조 2,645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053억 6,400만원(3.1%)이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지출	9,959,180	10,536,177	10,536,177	10,264,544	271,634	305,364

자료: 경찰청

다.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경찰청의 자산은 13조 3,733억 2,500만원, 부채는 1,718억 6,900만원으로 순자산은 13조 2,014억 5,6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9,910억 9,400만원, 일반유형자산 12조 2,997억 4,900만원, 무형자산 468억 6,5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356억 1,7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601억 800만원(3.6%) 증가하였다. 경찰관서 신축 등에 따른 토지 3,217억 9,800만원 증가, 건물 709억 100만원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334억 6,400만원, 장기차입부채 502억 9,500만원, 장기충당부채 518억 1,6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362억 94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56억 5,900만원(17.2%) 감소하였다. 이는 금융리스부채 210억 800만원, 장기충당부채 70억 1,200만원의 감소 등에 주로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3,373,325	12,913,217	460,108	3.6
Ⅰ. 유동자산	991,094	1,020,456	△29,362	△2.9
Ⅱ. 일반유형자산	12,299,749	11,813,496	486,253	4.1
Ⅲ. 무형자산	46,865	49,399	△2,534	△5.1
Ⅳ. 기타비유동자산	35,617	29,866	5,751	19.3
부 채	171,869	207,528	△35,659	△17.2
Ⅰ. 유동부채	33,464	44,173	△10,709	△24.2
Ⅱ. 장기차입부채	50,295	66,943	△16,648	△24.9
Ⅲ. 장기충당부채	51,816	58,828	△7,012	△11.9
Ⅳ. 기타비유동부채	36,294	37,583	△1,289	△3.4
순 자 산	13,201,456	12,705,689	495,767	3.9
Ⅰ. 기본순자산	6,898,650	6,898,650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2,097,521	1,852,872	244,649	13.2
Ⅲ. 순자산 조정	4,205,284	3,954,168	251,116	6.5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1조 3,672억 2,6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조 3,075억 7,900만원, 관리운영비 10조 1,022억 900만원, 비배분비용 730억 6,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29억 5,400만원, 비배분수익 825억 2,700만원, 비교환수익 등 1억 5,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3,654억 8,300만원(3.3%) 증가한 11조 3,673억 7,6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3,173억 5,300만원(3.2%)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8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치안인프라구축프로그램(3,727억 5,300만원)과 교통안전·소통확보 프로그램(2,768억 4,300만원), 사회절서유지 프로그램(2,218억 9,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7조 9,504억 3,300만원과 경비 2조 1,517억 7,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471억 4,000만원과 기타비용 162억 5,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274,624	1,244,702	29,922	2.4
가. 프로그램 총원가	1,307,579	1,277,244	30,335	2.4
나. 프로그램 수익	32,954	32,541	413	1.3
Ⅱ. 관리운영비	10,102,209	9,784,856	317,353	3.2
Ⅲ. 비배분비용	73,069	63,571	9,498	14.9
Ⅳ. 비배분수익	82,527	91,237	△8,710	△9.5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1,367,376	11,001,892	365,484	3.3
Ⅵ. 비교환수익 등	150	3,705	△3,555	△96.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1,367,226	10,998,187	369,039	3.4

자료: 경찰청

경찰청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12조 7,056억 8,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3조 2,014억 5,600만원으로 기초 대비 4,957억 6,700만원(3.9%)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1조 3,672억 2,600만원인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 규모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1조 6,118억 7,500만원, 조정항목 2,511억 1,700만원 등 총 11조 8,629억 9,200만원이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12조 4,739억 3,4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8,620억 5,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1,936억 4,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경찰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12,705,689	12,307,672	398,017	3.2
Ⅱ. 재정운영결과	11,367,226	10,998,187	369,039	3.4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1,611,875	11,338,727	273,148	2.4
Ⅳ. 조정항목	251,117	57,477	193,640	336.9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3,201,456	12,705,689	495,767	3.9

자료: 경찰청

라. 재정 구조

2018회계연도 경찰청의 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414억 5,300만원이 전출되었다.

[2018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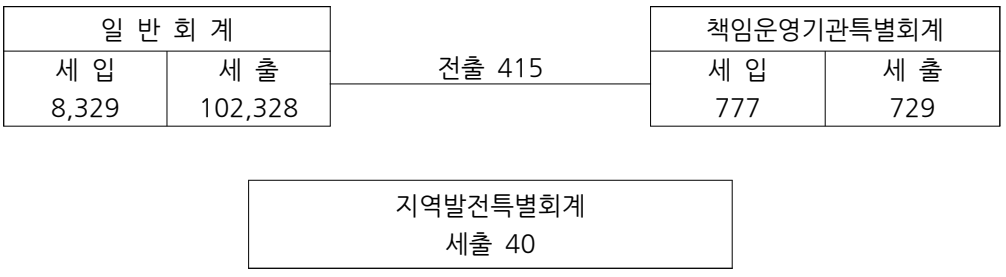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경찰청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경찰청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공무원(경찰) 인력증원 관련 사업, ② 전직대통령 경호부대 운영 사업** 등이 있다.

공무원(경찰)인력증원 관련 사업은 정부공통 감액기조에 따라 179억원이 감액(761억원 → 582억원)되었고, 전직 대통령 경호부대 운영 사업은 전직 대통령 경호예산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8백만원이 감액(86백만원→78백만원)되었다.[1)]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유치장 환경개선 사업, ② 사이버수사시스템 사업** 등이 있다.

유치장 환경 개선 사업은 대법원이 최근 개방형 화장실 사용이 유치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며 국가배상하도록 하였는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친화형 유치장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비 12억원이 증액(24억원 → 36억원)되었고,[2)] 사이버 치안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사이버 인력이 증원되어 장비 및 시설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1억원이 증액(11억원 → 32억원)되었다.[3)]

---

1)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1.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2)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1.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3)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1.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경찰청은 ①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치안역량 강화**, ② 사회의 정의를 실현을 위한 **법집행 활동 적극 지원**, ③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지속 확충**을 2018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교육인원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여 신임순경 교육 예산의 집행이 부진하였다. 중앙경찰학교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측한 교육 대상인원인 6,000명과 차이를 보이는 총 4,6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2018년 신임순경교육 사업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80.9%에 그쳤다.

둘째, 경찰청 본청은 2018년말 기준으로 89명을 직제 외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방청 등에서 충원한 인력이 포함된다. 특히 본청 소속의 임시조직 중 '수사구조개혁단'(23명)과 '자치경찰추진단'(22명)은 각 조직의 목표 달성 시 까지 지속할 예정으로, 현 시점에서 종료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경찰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문제점

1-1. 경찰인재교육 개발원의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경찰인재교육 개발원에서는 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경찰보수교육 사업[1]을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8년 예산액 69억 9,100만원 중 62억 7,100만원(89.7%)을 집행하고, 7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신임순경교육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찰보수교육	6,991	6,991	0	6,991	6,271	0	720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집행 소요가 없는 신임순경 위탁교육 예산을 동 사업에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경찰청은 2019년에도 동 사업에 신임순경 위탁교육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019년 4월 말부터 신임순경 위탁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서 관련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경찰보수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찰교육원'에서 경찰공무원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하였으나, 2018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교육훈련 기능을 경찰대학으로 이관하고 명칭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직제개정 전에 편성된 경찰보수교육 사업 예산에는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교육비가 포함되었다.

그런데 경찰청은 최근 4년간 경찰보수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신임순경 교육 관련 예산을 동 사업에 편성하였다. 특히 2017년과 2018년에는 예산에 편성된 신임순경 교육 관련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다.

[2015~2018년 신임순경 교육생 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별	교육인원	예산액		집행액	
2015	2,914	급식비	288	급식비	280
		위탁용역비	72	위탁용역비	70
2016	3,173	급식비	288	급식비	305
		위탁용역비	72	위탁용역비	76
2017	-	급식비	288	급식비	-
		위탁용역비	72	위탁용역비	-
2018	-	급식비	288	급식비	-
		위탁용역비	72	위탁용역비	-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2014년에 수립한 11월 '2015년 신임교육 개선 계획'에 따라 2015 ~ 2016년 중앙경찰학교 신임교육 중 일부를 경찰인재개발원(당시 경찰교육원)에 위탁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

경찰청은 중앙경찰학교의 연간 최대 교육 인원을 약 6,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채용인원이 연간 6,000명에 근접하여 효율적인 교육 실시가 곤란할 경우, 일부 과정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2)]

2) 중앙경찰학교 교육대상인 신임순경 등의 2015년 채용규모는 7,626명, 2016년은 3,566명으로 2년간 총 11,192명이다.

다만, 신임순경에 대한 위탁교육이 계획되지 않았던 2017년과 2018년에도 관행적으로 전년 수준의 신임순경 교육 예산을 동 사업에 편성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청이 향후 동 사업에 신임순경 위탁교육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신임순경의 채용규모 및 위탁 교육 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 부정확한 신임순경 교육인원 산정에 따른 집행부진 개선 필요

가. 현 황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신임순경교육 사업[1]을 통해 신임순경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에게 숙소, 피복 및 급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8년 당초 예산액 230억 3,400만원 중 186억 2,600만원(80.9%)을 집행하고, 31억 1,900만원을 불용하였다. 경찰청은 집행과정에서 11억 8,0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이는 경찰관 추가 채용에 다른 필기시험 운영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2018회계연도 신임순경교육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신임순경교육 사업	23,034	23,034	△1,180	21,854	18,626	109	3,119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인력 증원 규모와 채용 시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임순경 교육인원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중앙경찰학교는 입교한 신임순경 등에 대하여 각 기수별로 약 34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임교육은 교내교육과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2018년에는 신임순경 293기 및 294기 및 신임 101경비단을 대상으로 각각 26주간의 교내교육과 8주간의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중앙경찰학교의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은 약 3,000명 수준이므로, 교내 교육기간이 26주(약 6개월)임을 고려하면 연간 최대 6,000명에 대한 신임교육이 가능하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4132-311

경찰청은 2018년에 6,000명에 대한 신임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중앙경찰학교는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측한 교육 대상인원인 6,000명과 과 큰 차이를 보이는 총 4,680명(2018년 12월 31일 입교자 제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2018년 신임순경교육 사업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80.9%에 그쳤다.

2018년 중앙경찰학교가 실시한 신임순경교육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8년 중앙경찰학교 교육 실시 내역]

<table>
<tr><th>회차</th><th>교육대상
(교육인원)</th><th>응시일자
(합격일자)</th><th>교육기간
(실습교육기간)</th></tr>
<tr><td rowspan="2">1차</td><td>신임순경 293기
(2,603명)</td><td rowspan="2">’17. 9. 2.
(’17. 12. 1)</td><td>’17.12.11~’18.8.3
(’18.6.4~’18.7.27)</td></tr>
<tr><td>101 경비단
(120명)</td><td>’18.1.15~’18.9.7
(’18.7.9~’18.8.31)</td></tr>
<tr><td rowspan="2">2차</td><td>신임순경 294기
(1,837명)</td><td rowspan="2">’18. 3. 24.
(’18. 6. 8.)</td><td>’18.7.9~’19.2.28
(’18.12.31~’19.2.22)</td></tr>
<tr><td>101경비단
(120명)</td><td>’18.8.13~’19.4.5
(’19.2.4~’19.3.29)</td></tr>
<tr><td>합계</td><td>(4,680명)</td><td colspan="2">-</td></tr>
</table>

주: 1. 2018. 12.31 입교한 교육인원은 제외(2,782명, 2019. 8.23 수료예정)
2. 101경비단은 청와대 내부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기관
자료: 경찰청

이에 대해 경찰청은 2018년 예산안 편성시 2018년 경찰청 전체 추가 정원을 5,764명으로 예상하였으나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경찰청의 2018년 추가 정원이 4,575명으로 확정되었고, 신임순경의 실제 채용규모 역시 당초 예상보다 축소되어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8년 경찰청 증원 인력 및 신임순경 교육 대상 인원 규모]

구분	경찰청 증원 인력	신임순경 교육인원
예산안 기준	5,764명	6,000 명
확정 예산 기준	4,575명	6,000 명

자료: 경찰청

그러나 통상 상반기에 실시하는 신임순경 교육의 경우에는 전년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해 연도 경찰청 증원 인력 규모가 예산심사과정에서 축소된 것만을 신임순경 교육 사업 집행부진의 주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2018년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한 신임순경 293기의 경우, 2017년 9월에 채용시험이 실시되어 12월에 합격자가 결정되었다.[2] 그러므로 2018년도 신임순경 교육인원 산정 과정에서 직전연도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하였다면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향후 신임순경 교육인원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연도 경찰청 증원인력 규모는 물론, 직전연도를 포함한 연간 채용 시기와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가령 2018년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하반기 교육에서 최대 교육 인원인 3,0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간 총 교육인원은 5,603명으로 당초 계획 인원인 6,000명에 미치지 못한다.

2 경찰청 본청 내 직제 외 인력 운용 최소화 필요

가. 현 황

경찰청 본청의 2018년말 기준 정원은 1,128명, 현원은 1,253명으로 현원이 125명 초과하였다. 본청의 초과현원 직제 외 임시조직 운영으로 발생한 초과인원은 48명이다.

[경찰청 본청 초과현원 현황(2018.12. 31. 기준)]

(단위: 명)

정원	현원	초과현원	
		인원수	세부내역
1,128	1,253	125	- 직제 외 임시조직 48 별도정원 등 77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본청의 초과현원으로 인한 현장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청 내 비직제 조직 운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경찰청의 조직과 정원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신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직제 외로 팀·단 등 임시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나, 사실상 상시조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직제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찰청은 2019년 현재까지 본청에 소속 된 조직 중 '수사구조개혁단' 등 6개 조직, 48명을 직제 외로 운영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경찰청(본청) 소속 비직제 임시조직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경찰청(본청) 직제 외 운영 조직 현황]

(단위: 명)

연번	기구명	운영기간	직제 외 인력(2018년말 기준)	
1	피해자보호담당관	2015.1 ~	1	총경 1
2	경찰위원회담당관	2015.9 ~	1	총경 1
3	대테러과	2016.11 ~	1	총경 1
4	수사구조개혁단	2017.9 ~ 2020.8	18	경무관 1, 총경 4, 경정 6, 경감이하 7
5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 위원회 실무지원팀	2017.8 ~ 2019.7	5	총경 1, 경정 1, 경감이하 3
6	자치경찰추진단	2017.12 ~ 2020.11	22	경무관 1, 총경 3, 경정 4, 경감이하 14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경찰청 본청에 소속된 임시조직 중 '피해자보호담당관', '경찰위원회담당관', '대테러과' 등 3개 조직은 기존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상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경찰청은 2017년 이전부터 직제에 반영하지 않은 채로 이들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1] 경찰청도 직제반영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2019년 현재까지도 직제 반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본청 소속의 임시조직 중 '수사구조개혁단'(23명)과 '자치경찰추진단'(22명)은 2020년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본청 소속의 직제 외 조직 운영을 위해 지방청 등에서 인력을 충원해야하는 상황에서 임시조직 운영이 지속되면, 현장 인력의 공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본청에서 운영하는 임시조직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제 외 조직의 축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피해자보호담당관'은 감사관 소속, 경찰위원회담당관은 기획조정관 소속, 대테러과는 경비국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당 실무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 중이다.

3 경찰청 세입 사업의 문제점

3-1. 벌금 및 과료 사업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가. 현 황

「도로교통법」 제163조 및 「경범죄 처벌법」 제1조에서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벌금 및 과료 사업[1]은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이며, 2018년 예산액 1,510억 4,900만원 중 969억 7,600만원(64.2%)을 수납하였다.

[2018회계연도 벌금 및 과료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벌금 및 과료	151,049	151,049	0	151,049	96,976	96,976	0	0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벌금 및 과료 사업의 2018년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므로, 경찰청은 연간 수납액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통해 향후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과거 3년간 예산액 대비 수납률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97.5%,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23.3%, 117.7%로 수납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그런데 2018년에는 동 사업의 예산액이 전년 대비 35억 4,000만원 (2.4%) 상승하였음에도, 수납액은 오히려 전년대비 765억 9,400만원 감소하였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56-561

[2015~2019년 벌금 및 과료 사업의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15	147,509	156,380	143,748	97.5	91.9	654	11,978
2016	147,509	228,558	228,558	154.9	100.0	0	0
2017	147,509	173,570	173,570	117.7	100.0	0	0
2018	151,049	96,976	96,976	64.2	100.0	0	0
2019	151,049	-	-	-	-	-	-

자료: 경찰청

이에 대해 경찰청은 2017년 9월부터 교통사고 예방 중심의 단속활동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위험지역 중심의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교통단속 건수 및 수납액이 감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6~2018년 교통단속 건수 및 범칙금 납부금액]

(단위: 건, 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단속건수	5,774,893	4,313,882	2,416,409
납부금액	220,148	171,288	96,313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 단속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 2018년 3,781명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국정감사 등에서 교통범칙금 부과액수가 과도함에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등이 미미함이 지적된 바 있으므로,[2] 경찰청이 예방 중심의 단속으로 방식을 전환한 것 자체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7년부터 적용된 단속 방식의 전환에 따라 2018년 이후에 수납액이 감소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경찰청은 이런 상황에 부합하는 수납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동 사업의 수납목표를 관행적으로 전년 수준으로 정함으로써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국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3]

2)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안전행정위원회, 2016.1

따라서 경찰청은 과거 수납 추이,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고려는 물론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산식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3) 2019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2018.11

3-2. 가산금의 연례적 수납실적 저조 개선 필요

가. 현 황

가산금 사업[1]은 납부기한을 초과한 과태료 등에 대한 가산금 수입으로, 2018년 예산액 389억 5,000만원 중 293억 7,300만원(75.4%)을 수납하였다.

[2018회계연도 가산금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가산금	38,950	38,950	0	38,950	154,148	29,373	121,205	3,571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최근 3년간 가산금 수납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은 가산금의 수납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이후 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 징수하며, 중가산금은 최대 75%까지 부과된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과태료 수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산금의 수납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누적 미수납액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58-581

[최근 4년간 과태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15	665,853	1,609,734	584,412	87.8	36.3	987,280	38,042
2016	620,000	1,499,747	554,710	89.5	37.0	909,326	35,711
2017	623,300	1,583,256	651,223	104.5	41.1	908,288	23,746
2018	675,048	1,597,056	678,740	100.5	42.5	873,599	44,717

주: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은 누적금액임
자료: 경찰청

[최근 4년간 가산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15	11,258	123,993	43,130	383.1	34.8	80,319	554
2016	37,437	143,293	39,410	105.3	27.5	101,975	1,907
2017	38,186	143,789	31,202	76.9	21.7	110,633	1,955
2018	38,950	154,148	29,373	75.4	19.1	121,205	3,571

주: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은 누적금액임
자료: 경찰청

가산금은 독립적으로 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체납과태료 징수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경찰청은 과태료 수납실적이 양호함에도 가산금 수납액이 감소하는 이유는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장기 체납과태료에 대한 수납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체납기간별 가산금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부과 이후 5년 이내의 체납과태료는 미수납액은 280억원이나, 5년 이상 장기체납 과태료에 따른 가산금 미수납액은 984억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기간별 가산금 미수납액 현황(2019. 2월 기준)]

(단위 :만건, 억원)

부과기간	5년이상 (2013년 이전 부과)		5년 이내 (2014~2018년 부과)	
구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과태료	956	6,232	687	3,731
(가산금)	(373)	(984)	(490)	(280)

이에 대해 경찰청은 고액·상습 체납 과태료 대부분은 체납자의 소재불명, 사망, 재산 없음 등에 기인하거나 불법차량(일명 대포차) 등에 부과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징수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2018년에 국토교통부·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사망자·폐업법인·중고차매매상사 상품용 차량 등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산금 수납액 감소 추세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가산금 수납을 제고하기 위한 불법차량 단속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예금압류·번호판 영치 등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확대함으로써 고액·상습 체납자의 과태료를 최대한 징수할 필요가 있다.

Ⅲ 개별 사업 분석

1 경찰인력 구조 및 수요를 고려한 장비구매 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장비관리 유지 사업[1]은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구매·관리하는 사업으로, 경찰청은 동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 149억 9,200만원 중 147억 3,100만원(98.3%)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장비관리 유지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비관리 유지	12,873	12,873	2,119	0	14,992	14,731	209	51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인력구조 및 현장의 수요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비구매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2018년 동 사업을 통해 전투비축 장구 등 9개 종류의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59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장비 구매 내역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집행 내용은 당초 계획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경찰청은 총기보조장비 구매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7억 3,300만원 보다 2억 400만원(27.8%) 초과한 9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무기 구매에는 계획 금액인 5억 2,400만원의 52.4%에 해당하는 2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4231-314

[2018년 장비관리유지 사업의 종류별 구매 내역]

(단위: 백만원)

종류	예산액(A)	집행액(B)	차액(A-B)
전투비축장구	506	489	17
해안장비	155	160	-5
총기보조장비	733	937	△204
무기	524	275	249
안전장비	1,471	1,356	115
방독면	1,820	1,818	2
휴대용탐색등	447	371	76
호신용경봉	484	417	67
실종자 수색용 드론	120	106	14
합계	6,260	5,929	331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세부내역을 검토한 결과, 총기보조장비에 포함되는 전자충격기는 당초 375개 구입을 계획하였다가 558개를 구매하였으며, 무기에 포함되는 k3공용화기의 경우에는 110개 구매를 계획하고 33개를 구매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K3공용화기는 주로 의경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현재 진행 중인 의무경찰관 감축에 따라 필요한 총기 대수가 감소하여 집행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였다. 또한, 전자충격기의 경우에는 강력범죄 대응 시 실용성과 안전성의 동시 확보가 용이하여, 현장 경찰의 구매 소요를 반영하여 집행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2018년 k3공용화기 및 전자충격기 구매 내역]

(단위: 천원, 개)

종류	품명	예산액	수량	단가	집행액	수량	단가
무기	k3공용화기	359,700	110	3,270	105,932	33	3,210
총기보조장비	전자충격기	656,250	375	1,750	937,045	558	1,679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의무경찰 감축에 따른 경찰관의 해당 업무 대체는 2018년 이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므로, 경찰청은 당초 장비구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력구조 변화에 따른 장비수요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2)]

기존에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업무(집회시위관리, 중요시설 경비, 해안경계, 112 타격대 등)의 수행 방식 및 인력 규모는 의무경찰이 완전히 폐지되는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향후 장비구매 계획을 수립과정에서 의경 축소와 대체 경찰관 채용에 따른 인력구조 변화 및 현장의 장비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의경 감축의 규모, 시기 및 방법이 최종 확정된 것은 2017년 11월이나, 이전부터 의경감축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에 따른 인건비 전용 부적절

가. 현 황

경찰청은 현장 경찰의 치안역량 확보를 위해 경찰복지증진 사업[1]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일환으로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 내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내역사업은 2018 회계연도 예산액 135억 6,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경찰복지증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경찰복지증진	26,885	26,885	0	210	27,095	26,964	0	131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13,362	13,362	0	200	13,562	13,562	0	0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법령에 설치가 의무화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 경북지방경찰청 이전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9월에 대구광역시에서 경상북도 안동시로 이전을 완료하였다.[2] 그런데 경찰청은 당초 동 사업에 직장보육시설 운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인건비에서 2억원을 전용 집행하였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7135-311

2) 경북지방청 신축 사업은 당초 2016년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2014년 공사 착공 후 시공업체 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2018년 9월에야 완공하였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내역사업의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전용 감	전용 증	금액	전용 사유
세부사업 (비목)	경찰청인건비 (110-01)	경찰복지증진 (320-01)	200	경북청 어린이집 조기 개원으로 인건비 필요

2017년에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속 직원의 직장보육시설 이용 수요조사 결과 희망자 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경찰청은 2018년에 관련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8년 들어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직원들이 경북청으로 다수 전입하고, 지연되었던 청사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어린이집 수요 대폭 증가하자, 경찰청은 당초 예산 편성 시 계획하지 않았던 직장보육시설을 개원하였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3] 경북지방경찰청의 정원은 2018년 9월 신청사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619명이므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자체 수요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직장보육시설은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취학 자녀를 둔 경찰관이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청은 향후 예산 편성 시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3 낙찰차액을 활용한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구매 부적절

가. 현 황

대테러상황관리 사업[1]은 테러 차단 및 테러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 전국에 8개의 경찰특공대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2018년 예산현액 157억 8,700만원 중 146억 3,300만원(92.7%)을 집행하고, 7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6,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대테러상황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테러상황관리	14,596	14,596	1,191	0	15,787	14,633	788	365
자산취득비	5,784	5,784	1,155	0	6,939	6,399	538	2
피복비	2,112	2,112	0	0	2,112	1,779	250	83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작전부대 방탄방검복 구매 과정에서 낙찰차액을 활용해 예산 편성 시 계획했던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관리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향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대테러상황관리 사업을 통해 경찰특공대에 필요한 장비 및 피복을 구매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은 2018년 예산편성 시 방탄방검복 1,823착 구매를 위해 16억 6,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실제로는 낙찰차액을 이용한 추가 구매를 통하여 총 2,303착을 구매하였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3134-311

[작전부대 방탄방검복 계약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물량(착)	단가(원)	계약일	납품일	지출액	이월액
1차	1,823	676,672	’18.5.30.	’18.10.19.	1,234	0
2차	480	691,190	’18.9.21.	’19. 5.20.	166	166
합계	2,303	-	-	-	1,400	166

자료: 경찰청

경찰청에 따르면, 당초 동 사업은 방탄방검복 구매단가를 91만원을 기준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조달구매 과정에서 구매단가가 67만 6,672원으로 결정되었다. 경찰청은 대테러 업무수행에 필요한 방탄방검복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480착을 추가구매 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테러 부대에 필요한 방탄방검복 구매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앞당긴 2020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낙찰차액을 활용해 예산 편성 시 계획에 없던 추가구매 실시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하반기에 추가 구매를 실시한 작전부대 방탄방검복의 경우에는 납품지연으로 사고 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계약 규모가 소량이라는 이유로 원자재를 원활하게 수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추가구매한 480착은 계약일(’18.9.21.)로부터 8개월이나 지난 시점(’19. 5.20.)에야 납품이 완료되었다.

[2018년 대테러 상황관리 사업의 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품목	예산액	이월액	계약의뢰일	계약일
피복	작전부대 방탄방검복	1,669	166	1차 ’18. 4. 3 2차 ’18.7.25	1차 ’18.5.30. 2차 ’18.9.21.
피복	도심테러 대응 작전복	123	84	’18. 7.10.	’18. 12. 12
장비	장갑차	450	139	’18. 5. 2.	’18. 9. 6.
장비	다목적 작전차	700	215	’18. 5.10.	’18. 9. 20.
장비	EOD(폭발물처리) 특장차 및 탐지견 수송차	190	184	’18. 4.27.	’18. 9. 20.

자료: 경찰청

한편, 앞서 언급한 작전부대 방탄방검복을 포함하여, 2018년 경찰특공대 피복 및 장비 구매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월 금액은 총 7억 8,800만원(5건)이다. 사고이월이 발생한 품목 5건은 모두 3/4분기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특히 ‘도심테러대응작전복’ 구매 계약은 12월에 체결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EOD특장차 및 탐지견 수송차’와 ‘도심테러 대응 작전복’의 경우에는 유찰 등으로 적격업체 선정에 시일이 소요되었고, ‘장갑차’와 ‘다목적 작전차’의 경우에는 대테러 작전상황에 적합한 규격 검토에 시일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테러 대응 작전복’은 계약의뢰 시점이 하반기(7월)임을 감안할 때, 유찰 등으로 인한 적격업체 선정 곤란을 연도말 계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장갑차의 경우에는 2017년 구매한 실적이 있어 규격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청은 향후 예산 편성시 장비 및 피복의 단가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4 ‘디지털 증거분석실 시설개선’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경찰청은 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 사업[1]의 일환으로 ‘디지털 증거분석실 시설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분석실 시설개선’은 디지털증거의 확보 및 증거분석·복구능력 역량 강화 등 디지털포렌식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18년 디지털증거분석실 표준화 및 시설개선을 위해 편성된 예산 11억 3,000만원 중 6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 사업	8,261	8,261	0	0	8,261	7,524	201	536
디지털증거분석실 시설개선	1,130	1,130	0	0	1,130	619	145	366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첫째, 경찰청은 디지털증거분석실 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력 규모와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매년 디지털증거분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부터 담당 인력과 시설을 확충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주완 예산분석관(jjw1026@assembly.go.kr, 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233-511

[연도별 디지털증거분석 수요(의뢰) 건수]

(단위: 건)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건 수	14,899	24,295	32,281	36,060	45,013

자료: 경찰청

[연도별 디지털 증거분석 인력 증원 현황]

구 분	정 원	증 원
2014년	41명	-
2016년	67명	26명
2018년	105명	38명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부산지방경찰청과 대구지방경찰청은 2016년에 이미 디지털 증거분석실 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2018년에 디지털 증거분석실 개선으로 부산청 1억 6,000만원과 대구청 1억 1,400만원을 편성·집행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디지털 증거분석 인력 증원으로 인하여 공간이 협소하여 부득이 확장공사를 재실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청의 경우에는 기존 6인에서 13인으로, 대구청의 경우에는 기존 3인에서 6인으로 정원이 증가하였다.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증거분석 수요의 증가에 따라 경찰청은 지속적으로 디지털 증거분석 인력을 증원하고 있다. 공간 협소를 이유로 확장공사 실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공사를 반복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청은 확장공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향후 인력 증원 규모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청은 디지털증거분석실 개선 사업의 실제 집행 내역은 당초 계획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2016년에는 7개 지방청(부산·대구·인천·광주·경기 남부·충북·전남), 2017년에는 4개 지방청(대전·울산·강원·경남)의 디지털 증거분석실에 대한 시설개선을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총 13개 지방청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분석실 시설 개선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경기남부·부산·대구·충남 등 4개 지방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시설개선을, 인천 등 9개 지방청에 대해서는 소규모 확장 공사를 각각 실시하였다. 2018년의 디지털 증거분석실 시설개선 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예정되었던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예산은 전액 불용되었고,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당초 예산 1억 6,000만원 중 1억 4,500만원이 이월되었다.

[2018년 디지털증거분석실 시설개선 사업의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지방청	편성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서울청	366	0	0	366
경기남부청	160	15	145	0
부산청	160	160	0	0
대구청	114	114	0	0
충남청	114	114	0	0
인천청	30	30	0	0
광주청	30	30	0	0
전남청	30	30	0	0
제주청	30	30	0	0
울산청	20	20	0	0
경기북부청	20	20	0	0
충북청	20	20	0	0
전북청	20	20	0	0
강원청	16	16	0	0
합계	1,130	619	145	366

자료: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디지털 증거분석실은 당초 시설개선이 계획되었으나, 경찰청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2020년 완공 예정인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청사(옥인동 소재)로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계획이 취소되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분석실 입주가 예정된 건물(민원동)의 공사지연으로 인해 이월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청사 신축이 2016년에 이미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2018년 사업 추진과정에서 뒤늦게 서울지방청 디지털 증거분석실의 입주가 결정된 것은 사전계획이 미흡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경기남부청 디지털 증거분석실 시설개선은 입주 예정 건물인 민원동의 완공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2018년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로 경기남부청의 디지털 증거분석실 시설개선 공사는 2018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경기남부청의 민원동이 완공된 2019년 4월에야 공사를 시작하는 등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경찰청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예산 편성 시 시급성 및 연내집행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0억 9,300만원이며, 16억 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2018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093	4,093	4,093	1,603	1,603	0	0	100.0
합계	4,093	4,093	4,093	1,603	1,603	0	0	100.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136억 1,200만원이며, 이 중 93.1%인 3,850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5억 5,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06,723	406,723	413,612	385,046	14	28,552	93.1
합계	406,723	406,723	413,612	385,046	14	28,552	93.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나.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산은 5,495억 400만원, 부채는 25억 4,100만원으로 순자산은 5,469억 6,3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41억 4,800만원, 일반유형자산 5,333억 7,600만원, 무형자산 77억 2,7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42억 5,4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57억 7,500만원(4.9%) 증가하였다. 이는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의 증가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245억 7,900만원 증가, 외부소프트웨어의 구입과 시스템 구축 등 내부개발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 증가에 따른 무형자산 12억 7,5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6억 9,100만원, 장기차입부채 16억 6,400만원, 장기충당부채 1억 8,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억 5,800만원(5.9%) 감소하였다. 이는 기타미지급금의 감소 등에 따른 유동부채 5억 4,400만원 감소, 1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리스부채의 증가 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4억 1,1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549,504	523,729	25,775	4.9
Ⅰ. 유동자산	4,148	3,967	181	4.6
Ⅱ. 투자자산	0	0	0	0
Ⅲ. 일반유형자산	533,376	508,797	24,579	4.8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7,727	6,452	1,275	19.8
Ⅵ. 기타비유동자산	4,254	4,513	△259	△5.7
부 채	2,541	2,699	△158	△5.9
Ⅰ. 유동부채	691	1,235	△544	△44.0
Ⅱ. 장기차입부채	1,664	1,253	411	32.8
Ⅲ. 장기충당부채	186	211	△25	△11.8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546,963	521,029	25,934	5.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381억 5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647억 3,200만원, 관리운영비 2,749억 6,000만원, 비배분비용 1억 8,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17억 6,9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870억 9,900만원(△39.6 %) 감소한 4,381억 500만원이며, 이는 주로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2,923억 1,5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프로그램순원가는 1,647억 3,200만원으로 선거의공정한관리 1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979억 9,400만원과 경비 769억 6,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비용 1억 8,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억 100만원, 기타수익 16억 6,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	164,732	457,047	△292,315	△64.0
Ⅱ. 관리운영비	274,960	272,398	2,562	0.9
Ⅲ. 비배분비용	182	1,570	△1,388	△88.4
Ⅳ. 비배분수익	1,769	5,810	△4,041	△69.6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438,105	725,204	△287,099	△39.6
Ⅵ. 비교환수익 등	0	0	0	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438,105	725,204	△287,099	△39.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5,210억 2,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5,469억 6,3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59억 3,400만원(5.0%)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순자산이 전기 대비 127억 6,900만원 증가하였고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

영결과는 전기 대비 2,870억 9,900만원 감소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전기 대비 4억 4,1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기 대비 2,734억 9,200만원 감소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4,653억 6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6억 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3억 3,6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521,029	508,260	12,769	2.5
Ⅱ. 재정운영결과	438,105	725,204	△287,099	△39.6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63,704	737,196	△273,492	△37.1
Ⅳ. 조정항목	336	777	△441	△56.8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546,963	521,029	25,934	5.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이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은 재해보상준비금의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5,400만원이 감액(210억 5,100만원 → 209억 9,700만원) 되었다.[1)]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지원 사업, ② 교육 및 연구기반조성 사업** 등이 있다.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지원 사업은 유권자 교육과정 확대 및 정치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2억원이 증액(36억 2,800만원→38억 2,800만원)되었고, 교육 및 연구기반조성 사업은 법규운용실무 등 각종 실무실습교육 강화를 위하여 1억원이 증액(11억 3,900만원→12억 3,900만원)되었다.[2)]

1)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7.11.

2)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① 유권자 중심의 **완벽한 선거사무 구현**, ② 국민소통 강화로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조성**, ③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④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 양성**, ⑤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선거지원 강화**, ⑥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정치문화 확산**, ⑦ 위원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조직역량 강화**, ⑧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정치환경 조성**, ⑨ 세계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등을 2018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선거장비 관련 ODA사업 추진 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 등의 사유로 2018년에 자체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선거장비 관련 ODA 사업 추진 지양 및 보조사업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의 실집행률이 63.4%로 낮았다. 또한 보조사업자이면서 국제기구를 지향하여 설립된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선거기관 파견 인력이 없고, 전제 106개 회원국 중 13개국 밖에 회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국제기구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해당 비용의 집행은 별도의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입과정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고 있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동 사업에서 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해 집행하여 구매한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정보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기능으로 별도의 정보화 사업에 편성·집행될 필요성이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의 문제점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1]은 전환기 민주국가의 선거관리 역량 배양 및 세계 민주주의 확산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선거참관, 초청연수 및 선거관련 ICT 기술 이전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을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2]에 교부하여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ODA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 83억 1,800만원 중 83.9%에 해당하는 69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억 3,600만원을 불용하였다.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33-334

2)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민간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으나, 동 기관은 정부간 조약체결이나 국제기구 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며, 국제기구 성립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 국제법인격(International juridical or legal personality), 행위능력(Legal Capacity) 및 특권과 면제(privileges and immunities)에 대한 부분이 설립당시의 선거기관협의회 헌장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국제기구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의 방식으로 동 사업을 수행한다.

[2018회계연도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8,318	8,318	0	0	8,318	6,982	0	1,336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제선거참관 프로그램 운영	422	422	0	0	422	363	0	59
엘살바도르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지원	362	362	0	0	362	195	0	167
선거관계자 역량 강화	933	933	0	0	933	883	0	50
선진 선거제도 도입 지원을 위한 선거ICT 특화연수	1,725	1,725	0	0	1,725	1,220	0	505
파푸아뉴기니 선거 관리 선진화 사업	1,637	1,637	0	0	1,637	1,601	0	36
사모아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1,160	1,160	0	0	1,160	1,120	0	40
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179	179	0	0	179	-	0	179
엘살바도르공화국 선거 ICT 선진화사업	150	150	0	0	150	147	0	3
피지 투·개표 선진화를 통한 선거관리 역량 강화 지원사업	159	159	0	0	159	159	0	0
A-WEB ODA사업 운영지원	1,591	1,591	0	0	1,591	1,294	0	29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사업의 면밀한 보조사업 관리 필요

가. 현 황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민간경상보조금 실집행 내역을 보면 당초 경상보조금(320-01목)으로 78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출수요 발생시 교부금을 교부하도록 보조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예산현액 78억 9,600만원 중 69억 1,600만원을 교부받아 추경예산 대비 63.4%에 해당하는 50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9,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보조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주체(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1]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A-WEB	7,896	7,896	6,619	6,916	0	6,916	5,008	1,611	297	63.4

주: 1) 부처 집행액이 보조사업 교부액보다 작은 이유는 보조금 교부액 중 2억 9,700만원이 연도 내 반납처리 되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사업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추진한 ODA 사업에 대한 외부 문제제기에 따른 자체감사와 그에 대한 조치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 방향이 변경되어 2018년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이 낮았는 바 향후에는 수원국의 지원여건 파악 등 면밀한 보조사업 관리를 통해 실집행률을 향상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설립 취지와 국제개발협력(ODA)의 기본정신에 맞게 ODA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개발도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상국의 정치환경, 사회기반시설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선거ICT 장비위주의 사업을 자체 역량보다 과도하게 확장·추진하여 외교부 등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사업기반을 조성하여 특혜를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현지 정세와 국제관계를 고려하지 못해 서방권 외교단과의 갈등[1]을 야기하고, 엘살바도르 현지 언론에서도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이 보도 되는 등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추진하는 ODA 사업 전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감사가 2018년 수행되었다.

자체 감사 결과 특정업체의 사업 독점구조 조성 및 특혜제공, 사전승인 없이 ODA 사업 내용 변경, 회계집행 부적정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상원조사업에서 선거장비 ODA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ODA 사업을 심의·선정·관리하고 그동안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ODA사업의 집행기구로 그 역할을 축소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집행·점검·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2]

이에 따라 2018년에 추진되었던 선거장비 관련 ODA 사업들이 대폭 축소 변경되었다.

---

1)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018년 2월 유엔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올해 12월 치러지는) DR 콩고 대선에 익숙하지 않은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고 지적하였고, DR콩고 주재 벨기에·영국 대사 등도 전자투표기 입찰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과 문맹률이 높은 DR콩고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할 경우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2)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국내 투표기 제조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입찰 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협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을 수사의뢰 하였지만 검찰은 경쟁업체가 자진하여 입찰에 불참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협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감사 주요 결과]

구분	주요내용	조치사항
특정업체의 사업 독점구조 조성 및 특혜 제공	- 특정업체(미루시스템즈)의 장비개발, 입찰과정에서 특혜(사전정보)제공 등	- 선거장비 ODA 사업 추진 지양
사전승인 없이 ODA 사업 변경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의 규정(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의 사전승인)을 위반하여 개표결과 전송단말기(RTS, 당초 광학판독개표기 공급 사업)를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임의 변경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ODA 사업을 심의·선정·관리
회계집행 부적정	- '18. 1. 17.부터 2. 11.까지 실시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직원(3명)의 엘살바도르 총선 및 지역의회선거('18. 3. 4. 실시) 리허설 기술지원 출장의 소요비용 약 1,900만원을 2017회계연도 예산으로 집행 - A-WEB 특별 프로젝트 고문에게 ODA 사업과 무관한 고문료 명목으로 ODA 사업예산에서 약 2,800만원을 지급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집행·점검·검사실시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사업의 2018년 주요 집행 부진 사유를 보면 선거장비 지원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전문가 파견연수 및 교육기자재 사업 및 선거 ICT 환경조사 등이 축소시행 되어 선진 선거제도 도입지원을 위한 선거 ICT 특화연수 내역사업에서 5억 500만원, 현지 치안 우려 등에 따른 회원기관 참관단 참석 저조 및 재활용 가능한 기존 물품 활용 등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사유로 국별 ODA 중 하나인 엘살바도르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 지원 내역사업에서 1억 6,700만원, 임시총회 미개최 및 불필요한 국제회의 참석축소에 따라 ODA사업 운영지원 내역사업에서 2억 9,700만원, 국별 ODA인 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의 사업 지연과 최종적인 사업 취소 결정에 따라 1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18회계연도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사업의 주요 불용 사유]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구분	불용액	사업 취소 및 변경의 구체적 사유
선진 선거 제도 도입 지원을 위한 선거 ICT 특화연수	전문가 파견연수 및 교육 기자재 사업 취소	361	수원국 선거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ICT 선거장비 지원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ICT 선거장비 관련 연수 및 교육기자재 제작 사업 취소
	선거 ICT 환경조사 축소 시행	126	'19년도 국별 신규 ODA 사업안이 전부 심의 불채택됨에 따라 내실있는 소수 신규사업 발굴로 사업 방향 선회 및 '18년도 국별 ODA 사업 변경(장비 사업 배제)에 따른 협의 및 사업 재개에 집중하기 위하여 다수 국가 대상 환경조사 미실시
	선거ICT 특화연수 운영	18	매회(총8회) 연수마다 조달청 입찰을 통한 숙박업체 선정 경쟁유도로 초청 연수생 숙박비·식비 등 절감
	소계	505	-
엘살바도르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관리 지원	참관단 체재비	70	현지 치안 우려 및 비자발급 차질 등에 따른 회원기관 참관단 참석 저조
	선거 전문가 등 현지파견	54	
	운영물품 제작	15	재활용 가능한 기존 물품 활용 등에 따른 물품 구입 비용 등 절감
	현지통역 인건비	20	외국어 통역 등이 가능한 A-WEB 사무처 자체 직원 활용 등에 따른 통역 관련 인건비 등 절감
	업무협의회 등 개최	8	엘살바도르 선거최고재판소(TSE) 주최 업무협의회 및 비용 미집행
	소계	167	-
ODA사업 운영지원	임시총회 미개최 및 국제회의 참석축소	216	A-WEB 헌장 개정 필요성에 따른 임시총회가 예상되었으나 헌장 개정의 점진적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임시총회 미개최, 국제회의에 대한 외유성 단순 참석을 지양하고 주제 발표 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회의 선별·참석에 따라 국제회의 참석축소
	인건비	81	고위 간부급 퇴직자(사업본부장, 정책보좌관) 인건비성 경비 불용
	소계	297	-
기니 선거 관리 선진화 사업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 취소	179	'18. 2. 4. 실시 지방선거 불복시위, 유혈사태 등 정국불안정, 수원기관의 행정력 부재에 따른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취소를 결정

주: 지출수요 발생시 교부금을 교부하도록 함에 따라 집행 부진 사유는 부처의 민간경상보조금의 실집행불용액이 아닌 부처 불용액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와 같은 불용사유 중 선거장비 지원 지양에 따른 불용의 경우 보조사업자인 세계선거관협의회 ODA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로 인한 자체감사 결과에 의한 불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해서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엘살바도르 선거 참관의 회원기관 참관단 참석저조, 불필요한 국제회의 참석축소, 기니 선거관리 선진화 사업 취소 등은 당초에 사업 추진 시 회원기관 참관단의 참관 의사 확인, 면밀한 국제회의 참석 계획 수립, 수원국과의 철저한 사전 협의를 통한 국별 ODA 사업 추진 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사업자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ODA 사업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만큼 향후에는 ODA 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국별 ODA 사업의 경우 사전에 해당 국가가 ODA 사업의 지원을 받을 여건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대상 국가를 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회의참석 등 사업의 세부내용과 관련된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 반영 및 예산 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1-2.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국제기구로서 정체성 확립 필요

가. 현 황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세계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 보장 및 민주적 선거문화 조성 및 각국 선거기관의 역량강화 및 선거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설립되었다. 선거를 위한 민주적 문화 발전·증진 장려, 선거관리원칙에 부합하는 선거법 개선 장려 등 다양한 선거관련 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106개국 114개 기관[3]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참가하고 있다.

3) 2개 선거기관으로 구성된 일부 국가의 경우 2개 기관이 가입한 국가가 있다.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개요 〉

○ (설립배경) 세계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선거 보장 및 민주적 선거문화 조성
각국 선거기관의 역량강화 및 선거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증진

○ (근거법률)「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 (창설연혁) - 2013. 10. 14. : 인천 송도에서 120개국, 175개 기관, 400여명 참석하여, A-WEB 창립총회 개최 및 헌장 채택
- 2014. 1. 21.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 2014. 4. 2. : 사무처 출범식 및 집행이사회 개최(송도 G타워)

○ 주요기능
- 자유, 공정, 투명, 참여적 선거를 위한 민주적 문화 발전·증진을 장려
- 선거관리원칙에 부합하는 선거법으로의 개선 장려
- 선거관리기관과 이해당사자들간 협력관계 증진을 권장
- 선거관련 경험, 연구, 기술, 기술적 정보에의 접근·공유 촉진
- 선거관리기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장려
-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선거참관 프로그램 지원

○ 참가국 현황
- 106개국 114개 기관

대륙명	아프리카[1)]	아메리카[2)]	아시아[3)]	유럽	오세아니아	합계
국가수	34	26	23	17	6	106
기관수	36	30	25	17	6	114

주: 1) 말리, 탄자니아 각 2개 기관
2)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각 2개 기관
3)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각 2개 기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회원국들의 파견 직원 확보 및 국제분담금 납부실적 개선을 통하여 보조사업 의존도를 줄이고 인적·재정적 자원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여 국제기구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의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월 기준으로 선관위 파견 직원 5명, 자체 채용 직원 11명이고 외국 선거기관 파견 직원은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직원 현황]

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파견	자체 채용	외국 선거기관 파견	합계
인원 수	5명	11명	-	16명
세부 내역	2급 1명 3급 1명 4급 2명 6급 1명	정규직 8명 계약직 2명 임시직 1명	-	-

주: 2019년 3월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제2차 총회(도미니카공화국) 결정에 따라 2017년부터 연간 1만불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하였으나 2018년 회원국 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회원국 부담금 규모가 보조금 규모의 2.1%에 불과하고 전체 106개국 중 13개국 밖에 회원국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재원 조달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보조금	회원국 부담금	합계
2015	1,314	1,871	3,185
2016	3,309	81	3,390
2017	7,948	310	8,258
2018	7,896	190	8,08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케냐, 키르기즈 공화국 선거기관에서 파견직원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으나, 파견국이 대부분 저개발국가로서 자체 부담(파견직원 급여, 재외근무 수당, 주택임차료 등)해야 하는 예산 부족으로 파견에 소극적이며, 2018년까지는 체재비 일부를 세계선거기관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였지만 2019년의 경우 지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회원국 부담금의 경우에도 재정적 여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많은 동 협의회의 특성상 부담금 납부액 개선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한편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현재 외국 선거기관으로 구성된 비정부간 국제기구에 해당하고, 비정부간 국제기구 공식적인 지정 요건에 대해 국제법상 합의된 사항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일반적인 국제기구인 정부 간 국제기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 협약문 채택, 소관부처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국회 비준동의 등의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지만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현재 국제기구로서 위상이 높지 않고,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선거기관 간 협의체라는 점에서 국제기구 지정 절차를 거쳐 국제기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 협의회가 추진하는 ODA 사업의 비용이 국제부담금이 아닌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편성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각 회원국의 부담금을 통해 추진하는 ODA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여 다른 국가들이 회원국 부담금을 적극적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ODA 사업을 확대하여 이에 대한 관리 인력 등 외국 선거기관 파견 직원 역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적절한 보조사업 관리·감독을 통하여 ODA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Ⅲ 개별 사업 분석

1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의 법적근거가 미비한 세입세출 외 예산 운용 등

가. 현 황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1]은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관리를 위한 사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 209억 9,700만원 중 95.3%에 해당하는 200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9,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20,997	20,997	0	0	20,997	20,007	0	990
선거관리일반	7,675	7,675	0	3	7,678	7,544	0	134
사전투표관리	1,985	1,985	0	0	1,985	1,942	0	43
투개표관리	3,449	3,449	0	0	3,449	3,350	0	99
계도홍보	5,170	5,170	0	8	5,178	4,930	0	248
위법행위 예방단속	797	797	0	△47	750	598	0	152
정책선거 추진	1,165	1,165	0	△80	1,085	807	0	278
인터넷선거보도심의	195	195	0	18	213	212	0	1
선거방송토론관리	172	172	0	63	235	235	0	0
선거여론조사심의	354	354	0	34	388	388	0	0
선거소송	35	35	0	0	35	1	0	3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31-302

나. 분석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를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포함한 지방선거의 비용은「공직선거법」제277조제1항 및 제2항[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지방선거에 관한 사무 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 6,862억 1,400만원 중 선거장비 통합 유지보수, 투개표관리매뉴얼 제작과 같은 통일적인 수행을 위한 경비 200억 700만원을 국가의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그 외에 투·개표소 운영 및 공직선거 후보자의 활동에 대한 선거 보전비용 등 선거운영에 필요한 경비 6,662억 7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 경비와 유사하게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이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 뒤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정산·반환 후 회계처리 내용을 결산보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국가재정법」제17조[3]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예

---

2)「공직선거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하 생략)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하 생략)

3)「국가재정법」

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면서 동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국가재정법」제53조[4]의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동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경비가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될 경우 지방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기 이전(11월 중순)에 국회에 관련 예산안을 제출(9월 3일)해야 하는데 이는 지방의회 고유 권한인 지방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현행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과 같이 지방선거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주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현행과 같이「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된 경비가 중앙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 총괄적인 운용내역의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라도 그 운영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인 지방선거 경비를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4)「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업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세사업명	총 집행액	중앙정부 예산 집행액	지방정부 예산 집행액	중앙정부 예산 분담 내역	지방정부 예산 분담내역
선거관리일반	78,988	7,544	71,444	선거장비 통합 유지보수	간사·서기, 위원 등 수당
선거운동관리	54,900	0	54,900	-	선거공보(투표 안내문 동봉) 발송
사전투표관리	41,418	1,942	39,476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설치	사전투표소 설비 등 운영
투·개표관리	95,608	3,350	92,258	투·개표관리 매뉴얼 제작	투·개표소 운영
계도홍보	18,078	4,930	13,148	TV광고 및 방송기획 홍보	현수막, 포스터 등 제작
위법행위 예방단속	62,199	598	61,601	위반행위 예시집 발간	공정선거 지원단 수당
선거비용 조사	6,351	0	6,351	-	선거비용실사 운영
정책선거추진	1,397	807	590	매니페스토 운동 홍보	정책선거실천 협약식 경비
인터넷선거 보도심의	212	212	0	심의위원회 운영	-
선거방송토론관리	5,216	235	4,981	공직선거 정책토론회 개최	대담토론회 운영
선거여론조사심의	1,239	388	851	선거여론조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분석요원 운영
선거소송 일반	35	1	34	선거소청 등 필요경비	선거소청 등 필요경비
예비경비	20	0	20	-	예비경비
보전비용	320,553	0	320,553	-	각 후보자 선거 보전비용
합 계	686,214	20,007	666,207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예산 및 위원회 운영경비 성격의 예산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을 보면 일부 자산취득비는 선거관리위원회 메일시스템 재구축 사업, 정보시스템의 보안 사업 등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부내 정보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예산에 집행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선거를 동시에 관리하는 지방선거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선거 시기에는 선거사무관계자 등 내·외부 사용자 집중과 정보의 수·발신량 증가로 이에 상응하는 정보자원의 보강이 필요하며, 전국의 다양한 지점과 경로에서 정보자원 접속과 정보 접근·활용이 이루어지므로 평상시 보다 안정적인 정보 수·발신과 광범위하고 철저한 보안침해 대응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예산에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정보시스템 개선 및 보안관련 솔루션 등을 구매하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내 정보시스템 개선 또는 선거관련 정보시스템 개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내 정보화 사업인 전산운영경비 사업[5] 또는 선거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선거정보시스템구축 사업[6]에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이 정보화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그에 따른 성과 평가 등의 측면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 및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인다.

5) 코드: 일반회계 7132-350

6) 코드: 일반회계 7136-523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의 주요 자산취득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매 건명	집행액	소프트웨어 기능
선거관리위원회 메일시스템 재구축(웹메일솔루션)	126	이메일 서비스 운용을 위한 상용 SW
선거관리위원회 메일시스템 재구축(키보드 보안)	29	PC 브라우저 사용자의 키보드 해킹 방지를 위한 상용 SW
선거관리위원회 메일시스템 재구축(모바일키보드보안)	18	모바일 기기 브라우저 사용자의 비밀번호 입력의 해킹방지를 위한 상용 SW
선거관리위원회 메일시스템 재구축사업(공인인증서 로그인 소프트웨어)	21	다양한 브라우저에서의 공인인증서(GPKI) 로그인을 위한 상용 SW
선거통계 출력 솔루션 라이선스 (웹페이지작성및편집소프트웨어)	113	대국민용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선거자료 출력 및 다운로드 기능
선거업무용 문자인식솔루션 도입 (조달수수료 포함)	97	서식의 제목 또는 문자를 인식하여 자동 분류 기능 선거관리시스템의 (예비)후보자 정보공개 및 선거비용 공개 업무와의 연동
통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주전산기 성능보강) 구매대금 지급	121	IT인프라를 일괄적인 정책으로 통합 운영·관리하는 솔루션
출력물 실명제(워터마크) 시스템 구매대금 지급	100	인쇄물 모니터링 및 인쇄내역 추적, 정보 유출 방지, 워터마크 삽입 등의 기능을 제공
웹 해킹 탐지 시스템 (웹쉘탐지시스템) 구매대금 지급	98	서버 내에 악의적인 공격자가 설치한 악성 코드 탐지 및 정보 유출 방지 보안 솔루션
DB보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주전사기 성능보강 사업) 구매 (Petra V4 2코어, 4코어) 대금 지급	97	DB운영 서버 접근통제를 강화해주는 보안 솔루션
DB보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주전산기 성능보강 사업) 구매 (Petra Cipher V3.1)대금 지급	29	저장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중요한 정보를 보호해주는 솔루션
보안장비 관리시스템 구매 대금 지급	20	방화벽 관리·분석을 원활하게 해주는 솔루션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대금 지급	13	대용량·다종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 요구사항에 적합한 검색 기능을 제공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본경비 예산의 집행현황을 보면 법제국, 선거국, 조사국의 경우 각각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3.3%, 56.9%, 55.7%로 집행부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선거기간 유사한 성격의 집행건에 대한 지방선거경비 등 사업경비를 우선사용 하였기 때문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사업예산과 기본경비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 및 집행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 방식이라는 점, 동일하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었던 2014년의 경우 같은 기본경비 예산의 집행률이 2018년과 같이 낮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동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지출하고 각 기관의 기본경비 예산의 성격에 사업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014년 및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 부서의 기본경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집행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본예산	추경		
법제국	2014년	47	47	40	85.1
	2018년	99	99	63	63.3
선거국	2014년	160	160	160	100.0
	2018년	181	181	103	56.9
조사국	2014년	40	40	38	95.0
	2018년	40	40	22	55.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재보궐선거관리 사업의 예비비 집행관리 개선 등

가. 현 황

재보궐선거관리 사업[1]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06. 13.)와 동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동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 송파구 을 등 12개 지역구[2]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관리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 67억 9,000만원 중 78.9%에 해당하는 53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4억 3,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재보궐선거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보궐선거관리	100	100	0	0	6,690	6,790	5,360	0	1,430
선거관리일반	100	100	0	6	365	471	391	0	80
선거운동관리	0	0	0	0	445	445	303	0	142
사전투표관리	0	0	0	△10	374	363	213	0	150
투·개표관리	0	0	0	4	582	586	475	0	111
계도홍보	0	0	0	0	239	239	145	0	94
위법행위 예방단속	0	0		0	641	641	497	0	144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조사	0	0		0	78	78	75	0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	0	0	0	0	12	12	12	0	0
선거방송토론관리	0	0	0	0	318	318	178	0	140
정책선거	0	0	0	0	5	5	3	0	2
선거여론조사심의	0	0	0	0	19	19	12	0	7
보전비용	0	0	0	0	3,612	3,612	3,056	0	55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31-303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 서울특별시 송파구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 광주광역시 서구 갑, 울산광역시 북구,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갑, 충청남도 천안시 병, 천라남도 염암군·무안군·신안군,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을

나. 분석의견

재보궐선거관리 사업은 집행률이 78.9%로 높지 않았고, 그 사유가 예비비 배정 지연에 따라 공통경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우선 집행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예비비 배정 시기를 앞당겨 집행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국비와 지방비 간 집행액을 적정하게 분담할 필요성이 있다.

동 사업은 상대적으로 본예산보다 사업규모 예측이 용이하고, 국회의 세부내역 심의를 거치지 않는 예비비를 편성 받아 집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78.9%로 높지 않아 집행관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용액 중 선거비용보전비용, 포상금 등 보전금이 6억 3,200만원(44.2%)으로, 후보자 수, 유효투표율 등이 예측과 달라 불용이 발생하였고, 예비비의 배정절차가 「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3]에 따라 보궐선거 규모가 확정되는 선거일 전 30일 이후에 진행되어 예비비 배정은 선거일의 21일 전인 2018년 5월 23일에 배정되어 이를 집행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최초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됨에 따라 공통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규칙」에 따라 각 비용부담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간 1/4씩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하나, 예비비를 배정받은 시점에는 이미 상당부분 선거 준비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사전에 집행하였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공통경비 예산은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

3)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②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하나의 선거구에 동시 실시되는 선거의 공통경비 분담 기준]

▪ **경비부담기준(「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규칙」 제4조 및 제12조)** ▸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동시 실시 선거구)** 하나의 선거구에서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이 경우 각 경비부담주체인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중앙정부가 각각 1/4씩 선거경비를 부담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년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대로 예비비 배정 시점이 2018년 5월 23일이고 24일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비를 재배정하였기 때문에 선거일이 6월 13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기간이 21일에 불과하여 예비비의 집행률이 낮은 구조적 요인은 인정되나, 예비비 배정이 지연되어 공통경비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에서 우선 집행하였다는 것은 중앙과 지방간의 선거경비 분담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집행방식이라고 보인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 편성시 공통경비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규칙」에 따라 각 주체별로 1/4씩 편성하지만 예산 집행시에는 공통경비 예산을 규정에 따라 분담하여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에 동 사업의 예비비 집행률을 향상할 필요가 있고,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공통경비 집행시 중앙과 지방간 공통경비 부담 기준에 따른 균등한 선거경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각 예산편성 주체별 집행액 관리 등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3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법적근거가 미비한 세입세출 외 예산 운용

가. 현 황

위탁선거관리 사업[1]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경선 및 협동조합의 조합장, 국립대학 총장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 사업의 2018년 예산현액 9억 6,500만원 중 45.4%에 해당하는 4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2,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위탁선거관리	965	965	0	0	965	439	0	526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경선관리	705	705	0	0	705	213	0	492
위탁선거관리	260	260	0	0	260	226	0	3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분석의견

동 세부사업에서 편성 및 집행되는 일부 공통경비를 제외하면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경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세입·세출 예산외로 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위탁선거관리 사업에서 추진하는 위탁선거 경비의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제3항에 따라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

황수환 예산분석관(shhwang@assembly.go.kr, 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31-306

한 경비 및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동 사업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각 위탁선거별 준비·관리를 위한 경비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탁선거를 위탁하는 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공공기관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무위탁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② 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7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조합과 그 중앙회가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위탁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에 따라 매년 5억원에서 250억원 가량의 경비[2]가 위탁선거와 관련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되고 있다.

2) 경비의 편차가 큰 이유는 주기적으로 대규모로 실시되는 전국 규모의 위탁선거가 있기 때문이며, 2015년의 경우 가장 선거 소요가 많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시행되어 위탁선거 경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위탁선거관리 사업 중 예산 외로 운용되는 경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위탁 유형	선거종류	구분	연도별 집행액 및 집행건수				
			2014	2015	2016	2017	2018
의무	· 농 · 수 · 산림조합장 · 대학의장 · 농 · 수협중앙회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건수	20	1,354	56	67	21
		집행액	358	25,414	1,176	1,440	421
임의	· 산림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임원 · 신협임원 · 엽연초조합장	건수	14	13	11	5	6
		집행액	120	241	249	19	102
합 계		건수	34	1,367	67	72	27
		집행액	478	25,655	1,425	1,459	52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동 경비는 「국가재정법」 제17조[3]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면서 동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53조[4]의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임에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세입 · 세출 예산외로 운용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임기만료 동시조합장선거를 제외하고는 임의위탁은 물론 의무위탁선거라 하더라도 법령개정에 따

3)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4)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른 위탁대상의 증감, 사전예측이 어려운 사망, 당선무효 등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등으로 인해 선거의 규모 및 시기 등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사전에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예산으로 편성 시 선거기간이 연도말에서 연초에 걸쳐있는 선거의 경우 경비의 이월처리 문제가 있고, 선거비용의 부담주체별로 공통·고유경비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총계주의에 따른 현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상으로는 그와 같이 부담주체별 관리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대로 동 경비를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는 측면이 있지만, 세입·세출 외로 동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별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소방청

Ⅰ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7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6%인 7억 7,800만원을 수납하고 1,1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8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0	0	0	788	778	11		98.6

자료: 소방청

2018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015억 4,500만원이며, 이 중 89.8%인 1,810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138억 7,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6억 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68,809	168,809	201,545	181,066	13,878	6,602	89.8

자료: 소방청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나.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소방청의 자산은 3,256억 9,100만원, 부채는 9,000만원으로 순자산은 3,256억 1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8억 1,600만원, 일반유형자산 3,194억 9,000만원, 무형자산 30억 5,7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13억 2,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707억 7,500만원(27.8%) 증가하였다. 이는 선급금, 임차보증금 등의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11억 1,400만원 증가, 토지 취득 및 자산재평가 등으로 일반유형자산 684억 9,8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5,900만원, 장기충당부채 3,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억 5,700만원(63.6%) 감소하였다. 이는 미지급금 감소에 따른 유동부채 3,800만원 감소,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납입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1억 2,000만원 감소에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소방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325,691	254,916	70,775	27.8
Ⅰ. 유동자산	1,816	702	1,114	158.7
Ⅱ. 투자자산	-	-	-	-
Ⅲ. 일반유형자산	319,490	250,992	68,498	27.3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3,057	1,455	1,602	110.1
Ⅵ. 기타비유동자산	1,329	1,767	(438)	△24.8
부 채	90	247	(157)	△63.6
Ⅰ. 유동부채	59	97	(38)	△39.2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31	151	(120)	△79.5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325,601	254,668	70,933	27.9
Ⅰ. 기본순자산	102,344	102,344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200,040	132,786	62,254	50.6
Ⅲ. 순자산 조정	23,217	19,538	3,679	18.8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223억 5,500만원이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715억 4,500만원, 관리운영비 735억 9,800만원, 비배분비용 37억 3,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265억 2,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748억 4,000만원(157.5%) 증가한 1,223억 5,500만원이며, 이는 기타비용(정부외자산기부) 증가 등에 따라 비배분비용이 전년도 대비 29억 5,2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프로그램순원가는 소방정책지원 프로그램(715억 4,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77억 7,000만원과 경비 258억 2,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비용(정부외자산기부) 29억 7,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소방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71,545	18,706	52,839	282.5
가. 프로그램 총원가	71,545	18,706	52,839	282.5
나. 프로그램 수익	-	-	-	-
Ⅱ. 관리운영비	73,598	30,649	42,949	140.1
Ⅲ. 비배분비용	3,733	408	3,325	815.0
Ⅳ. 비배분수익	26,521	2,248	24,273	1,079.8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22,355	47,515	74,840	157.5
Ⅵ. 비교환수익 등	-	-	-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22,355	47,515	74,840	157.5

자료: 소방청

소방청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2,546억 6,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256억 100만원으로 기초 대비 709억 3,300만원(27.9%)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748억 4,000만원 증가,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43억 9,100만원 증가 및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1,120억 4,1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1,906억 9,1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0억 8,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36억 7,9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소방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Ⅰ. 기초순자산	254,668	225,327	29,341	13.0
Ⅱ. 재정운영결과	122,355	47,515	74,840	157.5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89,609	77,568	112,041	144.4
Ⅳ. 조정항목	3,679	(712)	4,391	616.7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325,601	254,668	70,933	27.9

자료: 소방청

2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소방청의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은 없으나, 긴급구조통제단 작전실** 공사 준공일을 감안하여 유지보수비 1,600만원을 감액하여 부족하게 편성된 **구급상황관리센터** 유지보수비 1,600만원으로 증액을 연계하였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소방공무원 건강정보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②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신설, ③ 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운영지원 사업**이 있다.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과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결과를 개인별 재난현장 출동이력과 연계하여 임용 시부터 건강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구축 예산 5억 5,000만원이 신규반영되었고,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신설에 따른 시설장비 예산 11억 8,600만원이 증액(17억 9,200만원→29억 7,800만원)되었으며, 범정부 차원의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기구 지원을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서 파견한 50명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2억 300만원을 증액하였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소방청은 ①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등 소방복지 증진 등 **재난현장 소방대응 역량 강화**, ② 대형화·고층화 되는 건축물에 합리적인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예방중심의 소방인프라 확충**, ③ 소방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 등 **소방산업 육성 및 실용적 연구개발 활성화**, ④ 권역별 중앙119특수구조대 및 화학재난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보강을 통한 **복합·대형 재난현장 구조능력 강화**를 2018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소방청은 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현장 적용 실용화를 선제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 시 연구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종료된 과제에 대한 추적 연구 등을 통해 응용 및 개발 단계의 연구사업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한시적(18개월)으로 수행되는 소방안전특별조사의 결과 활용방안 및 후속조치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동 조사와 관련된 정보화사업에 관한 일정관리를 통해 시스템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방청은 보조사업 수행 시, 보조금 집행이 교부계획 및 관련 절차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소방청 소관 R&D 사업 활용성 제고방안 필요 등

2018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R&D 사업은 1개 단위사업 소방안전기술개발 내 4개 세부사업[1]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액 127억 1,600만원 중 123억 1,3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18회계연도 소방안전기술개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방안전기술개발	12,716	12,716	0	0	12,716	12,313	96.8	0	0
현장중심형 소방활동 지원 기술개발(R&D)	7,008	7,008	0	0	7,008	7,008	100.0	0	0
소방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지원(R&D)	3,830	3,830	0	0	3,830	3,427	89.5	0	403
국민안전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R&D)	1,565	1,565	0	0	1,565	1,565	100.0	0	0
국민위해인자 대응 기체분자식별분석 기술개발(R&D)	313	313	0	0	313	313	100.0	0	0

자료: 소방청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 단위사업 소방안전기술개발 일반회계 1160
세부사업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 기술개발(R&D) 일반회계 1160-600
국민안전감시 및 대응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R&D) 일반회계 1160-601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식별분석기술개발(R&D) 일반회계 1160-602
소방대응능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지원(R&D) 일반회계 1160-603

상기 4개 세부사업 중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 기술개발’ 사업과 ‘소방대응능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사업은 소방청 고유 R&D 사업이며, ‘국민안전감시 및 대응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국민위해인자 대응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개발’ 사업은 다부처 공동연구개발사업이다.

이하에서는 소방청 고유 R&D 사업인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 기술개발’ 사업과 ‘소방대응능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1-1. 연구과제 활용성 제고방안 필요

가. 현 황

2018회계연도 소방청 고유 R&D 사업은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 기술개발 사업과 소방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사업 등 2개 세부사업이다. 2018회계연도 기준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 기술개발(R&D) 사업의 예산액은 70억 8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소방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지원(R&D) 사업은 예산액 38억 3,000만원 중 34억 2,7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18회계연도 소방청 고유 업무 연구개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방안전기술개발	12,716	12,716	0	0	12,716	12,313	96.8	0	0
현장중심형 소방활동 지원 기술개발(R&D)	7,008	7,008	0	0	7,008	7,008	100.0	0	0
소방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지원(R&D)	3,830	3,830	0	0	3,830	3,427	89.5	0	403

자료: 소방청

동 사업들은 소방청 고유 업무인 화재예방·진압,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소방시설·장비, 현장 대응기술 등을 연구하기 위해 편성된 과제형 R&D 사업이다[1].

한편,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 기술개발(R&D) 사업은 2016년 12월 일몰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소방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지원(R&D) 사업은 2018년 신규 편성되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다만, 2018년 기준 '소방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지원(R&D)' 사업 내 리빙랩 관련 예산 12억원은 일반 과제형 R&D 사업이 아닌 자체 수행 연구개발지원 사업을 위해 편성되었다.

나. 분석의견

소방청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시 현장활용성을 고려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현장자문단 적극운영, 종료과제의 추적연구 등을 통해 R&D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 기술개발(R&D) 사업의 2018년 종료과제는 총 10개 과제이며, 이들 10개 과제의 연구비는 총 197억원 수준이다.

[2018회계연도 종료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연구기간	사업비	활용
대심도 터널, 초고층 건물 화재진압을 위한 고압용 장거리 소방호스	2년	305	논문등재
구급현장 생체정보를 활용한 SEMS 시스템 개발	3년	1,376	정책활용
소방대원 진압작전 의사결정을 위한 붕괴예측시스템 개발	3년	2,335	기술이전
소방활동 개인보호장비의 성능한계분석 및 안전성 평가기법 연구	3년	1,200	정책활용
인명구조용 소방대원 근력지원장치 개발	3년	2,460	특허등록 등
터널 및 지하공간 사고대응을 위한 USN 탐색구조 장비 기술 개발	3년	2,010	기술이전
터널화재 및 지하공간 초기탐지 및 화재진압시스템 개발	3년	1,930	기술이전 등
극한환경 하 돌발고위험 상황 긴급대응 보호장구 소재활용기술 개발	3년	1,510	특허출원 등
소방관용 스마트 헬멧 개발	3년	2,793	기술이전 등
재난대응 능력향상을 위한 구조용 헬기시뮬레이터 개발	3년	3,800	현장설치
계		19,719	

자료: 소방청

그런데 각 연구과제의 활용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성과가 소방업무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다.

가령, ‘대심도 터널, 초고층 건물 화재진압을 위한 고압용 장거리 소방호스’ 과제의 경우, 시제품이 만들어졌으나 후속 개발에 따른 사업화가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구급현장 생체정보를 활용한 SEMS[2] 시스템 개발’ 과제를 통해 연구된 SEMS 시스템 역시 의료기관과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나, 시스템 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후속조치가 없어 실용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소방대원 진압작전 의사결정을 위한 붕괴예측시스템 개발’ 과제의 경우, 민간기업에 ‘동적변위계산장치 등’ 기술이전이 실시되었으나 동 기술은 일반적인 건축물 안전진단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서, 동 연구과제의 목표인 ‘화재현장에서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

이와 같이 연구개발 사업성과가 현장활용성이 괴리되는 사례는 과거 사업에서도 발견되는데, 2016년 종료된 지능형 소방진압복 개발 사업(35억원, 4개년)은 시제품 제작 이후 실용화되지 않아 활용성과가 단순 정책제안(특수방화복 인증규칙 제정)에 그친 바 있으며, 같은 연도에 종료된 신소재 경량화 소방복(6억원, 2개년)의 경우도 시제품의 불만족도가 커 활용되지 못한 바 있다.

2017년의 경우, 장대철도터널 화재진압용 Rail Road형 소방특수차량 개발 및 3D입체소나를 이용한 수난구조 탐색시스템 개발 등 주요과제는 일부 기술이 특허등록되었으나, 실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실제 소방장비 개선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2) SEMS(Smart Emergency Medical Service) 시스템은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하여 응급환자 정보를 자동 수집하고, 이를 소방서와 응급진료센터 등 관계 기관에서 실시간 공유와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구급활동 시스템이다.

3) ‘소방대원 진압작전 의사결정을 위한 붕괴예측시스템 개발’ 과제는 구조물의 붕괴 취약부위에 투척된 스마트볼 센서(외벽의 온도, 가속도, 속도)의 무선신호를 기반으로 구조물의 붕괴 가능성을 예측하는 연구과제로서, 동 연구과제의 현장활용을 위해서는 동적변위계산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볼 센서의 실용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2016~2017 회계연도 종료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종료연도	과제명	연구기간	사업비	활용
2016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발생기전규명을 통한 공상 등 관리대책 수립연구	2년	527	논문등재
	신소재 및 디자인개선을 통한 차세대경량화 소방복 개발	2년	600	특허출원 등
	(초)고층 재난현장용 초고압펌프 개발	2년	800	특허출원 등
	재래시장 최적화 방화구획 설계를 기반한 수막설비 개발	2년	400	특허출원 등
	가스계 소화설비 네트워크 기반의 감시장치 개발	2년	400	특허등록 등
	위험요인감지 네트워크 기반의 지능형 소방진압복 개발	4년	3,500	정책활용
	한국형 응급상황관제시스템의 모색 및 개발 연구	1년	500	정책활용
	한국형 소방관 및 소방장비 탑승형 다목적 전동 비히클 개발	2년	400	특허등록 등
	방염재료 평가기법 개발 및 적용평가 연구	2년	500	특허출원 등
	소화용수 개폐용 모듈 개발	2년	200	특허출원
계			7,827	
2017	장대철도터널 화재진압용 Rail Road형 소방특수차량 개발	3년	1,750	특허등록 등
	3D입체소나를 이용한 수난구조 탐색시스템 개발	3년	1,250	특허등록 등
	유리커튼월 건축물에서의 층간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성능설계 기반의 최적화 수막시스템 개발	3년	880	특허출원 등
	제연구역의 화재안전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3년	580	정책활용
	피난심리를 기반으로 한 피난시설 및 설계요소 최적화 개선 연구	3년	900	논문등재
	지하철 역사 승강장의 고효율 제·배연시스템 최적화 기술 개발	3년	490	특허출원 등
	지능형 방수 관창 개발	2년	175	과제중단
	재난현장 스마트 스쿼드 시스템 개발	2년	1,100	기술이전
	터널 등 특수재난지역 대량 소방용수공급을 위한 이동형 용수 저장장치 개발	2년	300	특허등록 등
계			7,425	

자료: 소방청

이에 대해 소방청은 소방 연구개발 과제의 실용화는 소방현장의 특성, 제품 인증과 같은 철저한 절차로 인해 현장 적용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방연구개발사업의 실용성 확보를 위해 '리빙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리빙랩 연구 사업은 소방청이 2016년부터 수행해 온 직접 연구사업이라는 점에서 연구성과의 실용성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2018년 리빙랩 연구 사업에서 수행한 현장자문단 운영은 전체 연구과

제 15개 중 3개 연구과제에만 수행되었다는 측면에서 현장자문단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소방청은 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현장 활용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연구개발 사업 시 연구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종료된 과제에 대한 추적연구 등을 통해 응용 및 개발 단계의 연구사업 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2. 리빙랩 연구 사업 별도 편성 필요 등

가. 현 황

리빙랩[1] 연구 사업은 현장 소방관들의 연구개발 과정 참여를 통해 R&D 사업의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방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지원(R&D) 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8년 예산 12억원 중 7억 9,7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18회계연도 리빙랩 연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방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지원(R&D)	3,830	3,830	0	0	3,830	3,427	89.5	0	403
리빙랩 연구	1,200	1,200	0	±251	1,200	797	66.4	0	403

자료: 소방청

리빙랩 연구 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17년까지 '현장중심형 소방활동지원 기술개발(R&D)' 사업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동 사업이 일몰지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 '소방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지원(R&D)' 사업에 편성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첫째, 직접 수행하는 리빙랩 연구 사업은 일반 과제형 R&D 사업과 사업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리빙랩 연구는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 과정 내 소방현장대원 자문단 참여, 현장문제점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및 자체 연구 수행, 연구성과물 활용을 위한 교육·지침 마련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리빙랩(Living Lab)은 연구결과물의 사용자(User)들이 연구개발 전체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실험실을 말한다.

[2018회계연도 리빙랩 연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 비목	예산	이·전용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불용액
리빙랩 연구	1,200	±251	1,200	797	66.4	403
상용임금	0	251	251	109	43.4	142
일용임금	620	△251	369	168	45.5	201
일반수용비	121	0	121	121	100.0	0
임차료	50	0	50	49	98.0	1
시설장비유지비	20	0	20	20	100.0	0
재료비	60	0	60	60	100.0	0
국내여비	19	0	19	17	89.5	2
일반연구비	200	0	200	179	89.5	21
고용부담금	110	0	110	74	67.3	36

자료: 소방청

그런데, 리빙랩 연구는 과제 단위로 연구되는 일반 R&D 사업과는 달리, 현장 자문단 운영, 정책 기초조사 및 연구용역 등 자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R&D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성과지표도 달리 구성될 필요가 있다.[2] 또한, 일반 R&D 사업 내에 편성되어 있어 사업 일몰 지정 등에 따라 리빙랩 관련 내역사업이 이관되는 등 예산편성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소방청은 리빙랩 연구 사업을 기존 R&D 사업의 내역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연구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관련 예산은 사업성과를 고려한 이후, 적절한 세부사업에 편성한 후 집행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은 '제1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3] 관련 경비 약 4,100만원을 집행한 바 있는데, 동 공모전은 특허청 등 관계부처 공동 주최로 2018년 연중에 추진됨에 따라 2018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다.

동 공모전은 현장 공무원의 연구개발 참여라는 점에서 리빙랩 연구와 취지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리빙랩 연구 사업계획 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도

2) 현재 리빙랩 연구 사업이 포함된 '소방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R&D)' 사업의 성과지표는 일반 R&D 과제의 성과지표와 유사하게 논문지수, 특허실적, 기술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동 행사는 특허청,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이 공동 주최한 행사이며, 현장중심형 기술 육성을 위해 경찰, 해경, 소방공무원들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는 공모전이다.

행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공모전 사업이 리빙랩 연구 사업 내에서 집행되는 것은 리빙랩 연구 사업의 범위를 불분명하게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1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집행 내역	집행액
제1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온라인 사업관리 대행 용역	15,000
제1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선행기술조사 용역	19,800
제1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발명품 제작비 지원	6,322
계	41,122

자료: 소방청

따라서 소방청은 동 공모전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리빙랩 연구 사업 내에 예산을 반영할 경우에는 공모전 시상작 지원 및 사후 관리 방안 등 관련 사항을 리빙랩 연구 개발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방청은 2019년에도 '제2회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2018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비 조정을 통해 관련 예산 약 5,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동 공모전을 위한 「경찰·소방·특허·해양경찰청 4개 기관 합동 MOU」가 2018년 2월에 체결된 것을 고려할 때, 2019년 예산에는 관련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 간 불일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사업의 문제점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사업[1]은 안전대책 수립, 중앙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등을 위해 편성된 사업이다. 소방청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126억 9,600만원 중 99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3억 1,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907	907	0	0	11,789	12,696	9,940	78.3	445	2,311
소방안전특별조사	0	0	0	0	11,567	11,567	8,837	76.4	445	2,285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0	0	0	0	222	222	222	0	0	0

자료: 소방청

2018년 동 사업에는 소방안전특별조사 예비비 115억 6,700만원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2억 2,200만원 등 2개 예비비 사업이 배정·집행되었다. 소방안전특별조사 사업의 일반예비비는 4월에 배정되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목적예비비는 11월에 배정되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

2-1. 소방안전특별조사 결과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 등

가. 현 황

소방안전특별조사 사업은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한시적인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특별조사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115억 6,700만원 중 88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 8,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조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907	907	0	0	11,789	12,696	9,940	78.3	445	2,311
소방안전 특별조사	0	0	0	0	11,567	11,567	8,837	76.4	445	2,285

자료: 소방청

소방안전특별조사 사업의 2018년 예산은 없으나, 제천·밀양 화재 등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안전특별대책'[1]의 일환으로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예비비 115억 6,700만원이 배정[2]되었으며, 2018년 7월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사업기간은 18개월(2018. 7. ~ 2019. 12.)로서 전국 다중이용시설 55만 4,000동(2018년 17만 2,000동, 2019년 38만 2,000동)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화재안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798개 조사반이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소방청은 2018년 1단계 사업을 통해 총 173,296개동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말까지 잔여 건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3]이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정부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은 2018년 4월 발표되었으며,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비롯하여 「건축물관리법」 제정 등 화재안전제도 개선, 국민참여 화재예방활동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2) 2018년도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예비비 외에도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232억원), 지자체 부담분(51억원) 등의 재원으로 수행되고 있다.

나. 분석의견

첫째, 한시적(18개월)으로 수행되는 소방안전특별조사의 결과 활용방안 및 후속 조치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소방안전특별조사는 총 173,296개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결과, 58,792개동(33.9%)은 지적사항이 없으나, 106,180개동(61.3%)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4] 개선필요사항 중 불법 수직증축, 차단기 용량과다, 가스누설경보장치 미설치, 비상구 폐쇄 등 중대위반사항은 총 11,588건이었으며, 방화문 제거, 비닐 전선사용, LPG 용기 방치, 옥내소화전 호스적재불량 등 경미사항은 496,414건이었다.

[2018년 소방안전특별조사 결과 개선필요사항]

	건축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소방분야	계
중대위반사항	5,092건	5,911건	195건	390건	11,588건
경미사항	81,043건	50,012건	18,004건	347,355건	496,414건

자료: 소방청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소방청은 2019년부터 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화재취약건물(8,560개동)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반기별 1회)하고, 화재안전정보 DB 구축 및 화재위험등급 대국민 공개(안전정보통합시스템 활용)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은 매년 신·개축되어 새로운 조사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기존 조사결과는 시설노후화, 관리주체 변경, 리모델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실제 관리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기적인 조사·점검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지적사항이 발생한 건물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방안전특별조사와 같이 전수조사를 수행한 결과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은 "소방안전정보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5]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동 정보화사업은 사업유찰, 행정절차 등

3) 2019년 동 사업의 예산은 330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다.

4) 기타 8,324개동은 휴·폐업등으로 건물이 사용되지 않은 건이다.

으로 지연되어 2018년 편성된 예비비 32억 7,000만원 중 14억 2,700만원이 이월된 상황이므로, 관련 시스템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화재안전특별조사 홍보 관련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이며, ②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아니라 예비비로 긴급히 추진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소방청은 동 조사에 관한 홍보를 위한 일반용역비(210-14목) 예산 5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부 예산 조정을 통해 6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18년 소방안전특별조사 홍보 집행내역]

(단위: 천원)

집행내역	예산비목	예산액	집행액
홍보물 기획·제작	일반수용비(210-01목)	215,000	215,000
홍보이벤트(런칭이벤트)	**일반용역비(210-14목)**	**50,000**	**47,300**
SNS이벤트 등 홍보	일반용역비(210-14목)	42,000	72,000
홍보영상제작	일반용역비(210-14목)	50,000	131,950
여론조사	일반용역비(210-14목)	30,000	30,000
마이크로페이지 제작	**일반용역비(210-14목)**	**100,000**	**19,500**
신문광고	일반용역비(210-14목)	110,000	106,171
총 계		**597,000**	**621,921**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동 일반용역비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집행하였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화재안전특별조사 런칭이벤트는 사업 초기 대국민 정책홍보 사업으로 소방청은 6~7월 손글씨 메시지 영상, 7월 중앙설명회 및 11월 대학연계 홍보행사를 계획하고 이를 위한 일반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동 행사대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소방청은 당초 행사계획을 정책설명회 및 전문가 좌담회(12월, 4회)로 변경하여 추진하였다.

---

5) 소방청 소관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코드: 일반회계 115-0500)의 내역사업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 점검자료 및 건축물 정보 등을 DB화하고, 현장대응 정보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정책설명회 및 전문가 좌담회는 전문 패널 간 논의가 진행되는 행사라는 점에서 당초 계획했던 런칭이벤트라는 초기 홍보사업과는 행사성격이 다르며, 각 행사당 200~300명이 참가하는 제한된 행사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당초 기획한 대국민 홍보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동 홍보사업 중 마이크로페이지(미니 홈페이지) 제작운영 사업의 경우, 예산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은 1,950만원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의 20% 수준만 집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홈페이지 관리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 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질의응답 게시판은 글쓰기 기능이 없어 게시물이 없고, 컨설팅 요청글에 대한 답변은 1달 이상 지체되고 있으며, 국민의견 제안 내 신고게시판에는 2018년 7월 이후 1건도 답변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동 페이지의 로그인 접속 수는 월 평균 300명 수준으로 저조하다.

따라서 소방청은 향후 정책사업에 관한 홍보사업 수행 시 사업효과를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관리할 필요가 있다.

2-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가. 현 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고용위기지역 내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소방청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2억 2,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907	907	0	0	11,789	12,696	9,940	78.3	445	2,31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0	0	0	0	222	222	222	100.0	0	0

자료: 소방청

주택용 소방시설은 관계 법령[1] 상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2]는 동 시설의 의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1037호, 2011. 8. 4.>

무설치를 명시하고 있어 관련 법률 시행일(2012. 2. 5.) 이후 건축된 주택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 시행일 이전에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택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2018년 말 기준 약 48만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취약계층 가구 108만 가구 중 44% 수준이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2018년 예산은 없으나, 2018년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대책[3]의 일환으로서 목적예비비가 2억 2,2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사업 대상지역은 울산, 경남, 전남 등 3개 시·도로서 지자체 경상보조사업(국비 80%, 지방비 20%)으로 수행되었다.

나. 분석의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재원, 목적, 수행방식 등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은 2018년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목적예비비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위기지역 취약계층[4] 안전분야 투자 성격을 고려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의 재원 및 사업목적, 사업성격, 수행방식 등을 고려할 때,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용위기지역[5]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라는 재원의 성격을 고려할 때, 동 사업목적 및 내용이 이에 부합한다 보기 어렵다.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의 목적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3) 정부는 2018년 9월 구조조정 지역·업종 추가 지원 및 폭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654억원을 국무회의 의결한 바 있다.

4) 동 사업 내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제1항을 근거로 하며 동 조항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사업주, 근로자, 실업자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및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도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은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인건비 지원 등인데, 동 사업은 소방시설 보급사업으로서 고용안정과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동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서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소방장비를 보급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비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지역적 혜택을 두기보다는 취약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 사업은 2018년 고용위기지역 8개 기초지자체[6] 중 4개 지자체에서만 추진되었으며, 사업이 추진된 4개 지자체 간 예산액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소방청은 동 사업에 관한 기획재정부 협의 및 자치단체별 지방비 부담 의지 등 종합적으로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의 목적이 취약계층 화재안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위기지역 내에서도 지자체 여건에 따른 지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2018회계연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주체	교부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울산광역시(동구)	17	17	17	0	0	100.0
경상남도(통영,고성)	34	34	30	0	4	88.2
전라남도(목포)	171	171	0	147	24	0.0

자료: 소방청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목포에 교부된 1억 7,100만원 중 불용액 2,400만원을 제외한 1억 4,700만원은 구매계약 체결 지연(2018. 12. 26.)에 따라 전액 이월되었으므로, 향후 예비비 사업 추진 시 사업의 긴급성 및 집행가능성에 관한 검토를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6) 2018년 고용위기지역은 4월에 지정된 6개 지역(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고성군)과 5월에 지정된 2개 지역(목포시, 영암군) 등 총 8개 지역이 지정되었다.

3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의 문제점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1]은 소방의 날 기념행사,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행사 관련 예산과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된 사업이다. 소방청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액 14억 7,000만원 중 14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기념행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기념행사 지원	1,470	1,470	0	±35	1,470	1,468	99.9	0	2
소방의날 기념행사	207	207	0	19	226	225	99.9	0	1
소방기술경연대회	52	52	0	16	68	67	99.9	0	1
의용소방대 활성화	274	274	0	△18	256	256	100.0	0	0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운영지원	937	937	0	△17	920	920	100.0	0	0

자료: 소방청

동 사업은 연례행사인 소방의 날 기념행사,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사업과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민간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 등으로 구성되는데, 2018년에는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추가 반영되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

3-1. 보조사업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2018년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 내 보조사업은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보조사업(보조율 90%)과 2018년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운영 지원을 위한 지자체 경상보조사업(보조율 16%) 등 2개 사업이다.

[2018회계연도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업 내 보조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구분	사업시행주체	예산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민간경상보조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90	90	0	0	0	90	100.0	0
지자체경상보조	충청북도	880	880	0	0	0	880	100.0	0

자료: 소방청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전국연합회로서 소방청은 매년 민간 경상보조사업을 통해 동 연합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8년에는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소방청은 8억 8,000만원의 지자체 경상보조 예산을 편성하여 동 사업을 지원하였다.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1990년 제1회 대회(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이후 2년마다 개최되고 있는 국제스포츠 교류행사로 2018년 제13회 대회는 충청북도 충주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 8.8억원을 포함한 52.7억원이다.

[2018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개요]

구 분	내 용
총사업비	52.7억원(국비 8.8억원)
대회기간 / 장소	2018. 9. 10.(월) ~ 9. 17.(월) 8일간 / 충북 충주시 일원
주최 / 주관	소방청·충청북도·충주시 / 대회조직위원회·충청북도체육회
참가규모	65개국 6,697명(국내 참가규모 5,395명)

자료: 소방청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나. 분석의견

첫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보조사업은 교부 당시 수립된 집행계획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전국연합회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집행계획에 없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초과집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2018회계연도 전국연합회 민간보조금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교부내역	계획액	집행액	증감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소 계**	**43,795**	**38,147**	**△5,648**
	회의비	7,000	0	△7,000
	인쇄비	4,500	7,970	3,470
	여비	2,400	0	△2,400
	방문기념품	4,900	8,628	3,728
	홍보비	24,995	21,549	△3,446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원 능력 배양을 위한 워크샵 실시	**소 계**	**20,000**	**26,557**	**6,557**
	회의장임차료	6,000	9,226	3,226
	국외출장비	0	6,001	6,001
	기념품	10,000	9,270	△730
	인쇄비	2,000	2,061	61
	다과류	2,000	0	△2,000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유공자 표창 수여	**소 계**	**6,000**	**9,856**	**3,856**
	표창패	5,000	9,856	4,856
	연합회원퇴임패	1,000	0	△1,000
의용소방대활성화추진비	**소 계**	**20,205**	**15,439**	**△4,766**
	소방활동물품구입	20,205	15,439	△4,766
계		**90,000**	**90,000**	**0**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우선, 회의비로 교부된 700만원은 전액 집행되지 않았고, 소방활동물품구입을 위해 교부된 예산 2,000만원 중 1,500만원만 집행되었다. 반면, 당초 계획에 없던 국외출장비가 600만원이 집행되었고, 방문기념품·표창수여 예산 등은 당초 계획보다 과다하게 집행되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각 사업비목 변경사항은 사업추진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소방청 승인 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여비 변경, 워크샵 및 기념품 관련 예산 과다집행 등은 2017년에도 반복된 바 있다는 점에서 동 연합회 민간경상보조금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1)]

둘째, 소방청은 보조사업 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2018년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된 예산 8억 8,000만원은 지자체 집행과정에서 세부사업별 예산조정이 발생하였는데, '대회운영 활성화' 및 '강인하고 화합된 경기진행' 세부사업에서는 국비집행액이 감액되었고, 동 예산은 '화합축제 문화행사' 세부사업으로 조정집행되었다.

[2018회계연도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지자체 보조금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	교부액	집행액	증감	예산 내역
대회운영활성화	375,224	148,130	△227,094	홍보물, 기념품 등
화합축제 문화행사	129,950	450,000	320,050	개막식등 문화행사
강인하고 화합된 경기진행	109,076	0	△109,076	경기운용 물품 지원
경기운영지원	265,750	281,844	16,094	유니폼, 수송차량 지원
계	880,000	879,974	△26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상기 사업변경은 소방청의 승인 없이 집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침)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동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감독 강화는 2019년 예산안 심사 당시 「2019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소방청은 향후 지자체 보조사업을 실시할 경우, 집행점검 등을 통해 보조금이 관련 절차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3-2. 적정 비목 예산편성을 통한 행사 추진 필요

가. 현 황

소방의 날 기념행사는 전국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유가족 등이 참여하는 소방 관련 기념행사로서 소방청은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2억 2,600만원 중 2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소방의 날 기념행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의용소방대 및 소방의 날 기념행사 지원	1,470	1,470	0	±35	1,470	1,468	99.9	0	2
소방의날 기념행사	207	207	0	19	226	225	99.9	0	1

자료: 소방청

나. 분석의견

소방청은 소방의 날 행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적정 비목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소방청이 편성한 소방의 날 행사 예산은 2억 700만원이며, 일부 내역사업 조정 등을 통해 총 2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소방청이 동 행사를 위해 조정한 예산 비목을 살펴보면, 임차료는 감액된 반면, 일반용역비는 당초 편성 내역에 없었으나 증액되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2018회계연도 소방의 날 기념행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소방의날 기념행사	207	19	226	225
일반수용비(210-01목)	96	△30	66	65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1	△1	0	0
특근매식비(210-05목)	7	△3	4	4
임차료(210-07목)	**95**	**△88**	**7**	**7**
일반용역비(210-14목)	**0**	**140**	**140**	**139**
사업추진비(240-01목)	8	0	8	8

주: 반올림으로 인해 구성항목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소방청

임차료의 경우, 행사가 외부장소에서 치러질 것을 고려하여 편성되었으나, 2018년 행사는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수행됨에 따라 집행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일반용역비로 대폭 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임차료 변경은 2017년에도 발생한 바 있는데, 동 행사가 기관 내 장소(중앙소방학교)에서 추진됨에 따라 행사장 임차료 9,100만원이 조정집행된 바 있다.

[연도별 '소방의 날' 행사 추진 현황]

연도	행사일	행사장소	참석자
2011	11. 9.	세종문화회관	3,498명
2012	11. 9.	올림픽홀	3,100명
2013	11. 12.	킨텍스	3,100명
2014	11. 7.	올림픽홀	3,100명
2015	11. 9.	올림픽홀	3,100명
2016	11. 9.	올림픽홀	3,046명
2017	11. 3.	중앙소방학교	2,000명
2018	11. 9.	수도권119특수구조대	2,754명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소방청은 매년 외부용역을 통해 행사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일반용역비를 편성하지 않고, 반복적인 비목변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집행[1]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방청은 향후 소방의 날 행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경우, 행사계획을 바탕으로 경비 성격에 적합한 비목을 편성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2017년의 경우, 임차료 9,1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나, 비목 성격상 일반수용비는 외부용역비 집행에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2017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서 지적된 바 있다. 한편, 2019년 예산에도 일반용역비는 편성되지 않아 예산조정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Ⅲ 개별 사업 분석

1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사업 긴급공고 지양 필요 등

가. 현 황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사업[1]은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치료 등을 위해 편성된 사업이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41억 5,800만원 중 35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4,158	4,158	±60	4,158	3,524	84.7	531	103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2,100	2,100	△60	2,040	1,972	96.7	0	68
건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550	550	0	550	57	10.4	493	0

자료: 소방청

나. 분석의견

첫째,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사업의 연례적 긴급공고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사업은 일선 소방서에 심리상담사가 방문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5년 시범사업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오덕근 예산분석관(whale@assembly.go.kr, 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131-301

[연도별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대상		예산액	집행액	사업기간	공고방식	비고
	소방서	소방관					
2015	19개	4,702명	400	368	120일	긴급공고	시범사업
2016	30개	6,616명	600	562	120일	긴급공고	
2017	119개	21,696명	2,139	2,022	150일	긴급공고	
2018	105개	26,103명	2,100	1,972	약 160일	긴급공고	
2019	215개	46,000명	1,500		약 210일	지자체 별 상이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변경

자료: 소방청

그런데 동 사업은 매년 긴급공고를 통해 사업을 발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2018년의 경우, 사업 전 정신건강 실태를 전수조사·분석(2018년 2~5월)하고 2017년 국회 지적사항(상담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성과평가 지표개발 등) 반영을 위한 사업운영방식의 전부 개편 등의 사유로 공고일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기간에 맞추기 위해 긴급공고를 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① 소방청은 사업 시행 이후 매년 긴급공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② 동 사업의 계약형태인 협상에 의한 계약[2] 방식은 일반공고가 40일이나, 긴급공고는 10일에 불과해 업체가 제안요청서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하기 쉽지 않아 경쟁이 제한된다는 점, ③ 현재 동 사업은 시행 4년차에 접어들어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이 정립될 시기라는 측면에서 긴급공고를 통한 사업 추진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권역의 경우 지리적 여건 상 권역 내 전문상담기관이 적어 단일응찰 이후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공고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 사업은 2019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긴급공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

2)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한 계약방식으로,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평가 이후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계약형태이다.

라서 소방청은 지자체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가급적 일반공고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일정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구축 이후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건강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은 소방공무원의 건강상태 및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18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회 증액(내역사업 순증)으로 사업예산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18년 집행액은 5,700만원이며, 잔여 예산 4억 9,300만원은 이월되었다.

[건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및 안전 관련 기반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용·처리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성항목	출동 및 활동정보 관리시스템, 소방공무원 건강관리시스템 의료지원 정보 관리시스템, 안전 및 공사상 관리시스템 통계관리 및 분석시스템 등
사업비	5억 5,000만원(ISP: 5,700만원 / 본사업: 4억 9,300만원)
추진경과	2018. 2. ~ 3.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2018. 4. ISP 사업 공고 2018. 5. ~ 9. ISP 수행 2018. 1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등 자원할당 협의 2018. 11. 본사업 공고 2019. 1. 본사업 계약

자료: 소방청

이와 같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2018년 동 사업의 ISP[3]와 본사업 예산이 동시에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정보화 사업이 원칙적으로 ISP 수립 이후 예산을 요구

3)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은 조직 내 요구, 업무활동 등을 기반으로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정보화 사업 추진 전에 사전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계획이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지침)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원칙적으로 BPR 및 IS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예산이 단일회계연도에 모두 편성된 것은 소방공무원에 관한 건강정보 시스템 구축이 시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 사업의 계약이 2019년 1월에 체결됨에 따라 사업추진일정은 크게 앞당겨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관해 소방청은 연초 행정안전부와의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및 조달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의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면, 2018년에는 ISP 예산만 편성하고 ISP 결과에 따른 본사업의 적정 예산을 2019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사업은 신규 정보화사업으로서 지방소방본부의 시스템과 원활한 연계를 통해 데이터가 구축될 필요가 있는데, 동 시스템은 출동정보, 건강정보, 의료지원 정보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방청은 동 시스템의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소방본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시스템 운용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 필

총 괄 | 김일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정승환 예산분석총괄과장
공춘택 산업예산분석과장
이동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은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황수환 예산분석관
정주완 예산분석관
오덕근 예산분석관

지 원 | 이정아 행정실무원

결산분석시리즈 Ⅱ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9년 8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태영특수프린테크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186-8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9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0722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471-10